

GUIDEBOOK

for the American Life

—
2016
—

미국생활가이드북



미국생활 가이드북

2016



미국 생활 가이드북을 발간하면서

미국에 처음 정착하는 지상사 직원 및 가족들은 설렘 반 걱정 반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당장 살아야 할 주거지부터 운전 면허는 어디서 발급받는지, 은행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는지 등 모든 것이 막막할 것입니다.

그간 살아온 고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를 가진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다양한 생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확한 핵심 생활 정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 미한국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03미국 생활 가이드북’이 새로운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책자 내용은 기존 출판물이나 해당 전문 기관의 정보를 참고했으며, 책자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가이드북이 미국에 정착하는 회원사 직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편안한 미국 생활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미한국상공회의소 회장 하 기 룡



비매품으로 발간한 이 책자는
각종 생활정보 가이드북과 관련 기관들의 정보를
참조했으며 이와 관련 미한국상공회의소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1. 미국 출입국 및 공항 안내

미국 입국 절차 -----	10
미국 출국 절차 -----	11
뉴욕 인근 공항 -----	12

2. 주택 임대 정보

주거의 종류 -----	18
임대 아파트나 주택을 찾는 방법 -----	20
주거지 선택 시 유의사항 -----	22
임대 광고 해독법 -----	23
임차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24
주거 정보 -----	26
이사 정보 -----	28

3. 자동차 정보

Facility Locations/Hours(NJ) -----	29
운전면허 취득 절차 (NJ) -----	29
운전기록 (Driver History Records) 확인 -----	32
자동차 구입 -----	33
차량 등록 -----	33
자동차 보험 -----	34
AIG 주재원 자동차 보험 -----	35
AAA -----	35
자동차 렌트 -----	37
도로 교통 시스템 -----	38

4. 뉴욕 교통 정보

지하철·버스	40
PATH	41
페리(Ferry)	42
기차	43
앱(app) 이용 차량 서비스	44

5. 은행 정보

은행 선택	45
주요 은행 연락처정보	45
예금 종류	48
개인 수표(Personal Check)	49
크레딧(Credit) 카드	49
데빗(Debit) 카드	51

6. 교육 정보

학교 입학	52
Preschool 입학	53
미국의 교육 제도	54
초·중·고·대학 정보	62
* 2015년 US뉴스 선정 우수공립학교, 뉴욕·뉴저지(버겐아카데미)	
KOCHAM 부설 우리한국학교	74

7. 현지 생활 정보

주요신문 구독	75
지역신문 구독	76
잡지 구독	77

학교·학원 수강	77
TV 채널	78
케이بل	79
라디오 채널	79
한인정보 웹사이트	80

8. 식품 및 쇼핑 정보

백화점	81
침구 전문점	82
전자제품 전문점	82
가구 전문점	82
쇼핑몰	83
하드웨어점	85
상품 정보	86
식품관련 단어	86
미국 단위 체계	88
샘플세일	90
Green Market/Farmers' Market	90
영양성분표 (Nutrition Facts Panel)	91

9. 미국 의료 정보

미국 의료시스템	93
예방 접종	94
전문 치료과목 명칭	96
약 구입 방법	96
뉴욕·뉴저지 주요 병원	97

10. 전화 및 전기 정보

전기·가스 신청 -----	105
수도 신청 -----	105
전화 신청 -----	106
인터넷 서비스 -----	108

11. 우편 정보

우편 서비스 종류 -----	109
국내 우편의 종류 -----	110
국내 우편 추가 서비스 -----	112
국제 우편의 종류 -----	113
미국 주 약자 -----	115
기타 정보 -----	116
맨하탄 주소 해석 방법 -----	116

12. 뉴욕 인근 여행정보

뉴욕 관광 -----	120
투어 안내 -----	120
여행정보 센터 -----	121
관광명소 -----	121
워싱턴 관광 -----	126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	128
올랜드 관광 -----	129

13. 골프 코스 정보

뉴욕·뉴저지 한인 선호하는 골프 코스	130
에티켓과 기본 룰	132
뉴욕·뉴저지 골프용품점	136

14. 뉴욕 문화생활 정보

레스토랑 이용법	138
유명 맛집 소개	141
브로드웨이 뮤지컬	151
뉴욕 주요 공연 단체	151
프로 스포츠팀	153
뉴저지 문화센터	155
미국 생활에 유용한 앱(App)	156

15. 미국 법률

미국 비자법과 영주권 취득	157
미국 생활법률 상식	174
상법·민법·이민법 변호사 연락 정보	181

미국 입국 절차

■ 입국심사

입국심사대는 외국인 전용 심사대와 미국 시민 전용 심사대로 나뉜다. 심사대에 서는 여권과 기내에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 세관신고서를 이민국 심사관에게 제출한다. (3개월 미만 여행 시엔 입국허가증, 그 이상일 경우 관련 비자 서류 지참) 장소와 입국 목적 등을 묻는 심사관의 질문이 끝나면, 사진 촬영과 함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의 지문 채취가 이루어지고, 입국 스탬프를 찍은 여권, 출입국 신고서 반쪽, 날인한 세관신고서를 돌려 받는다.

■ 수하물 찾기, 세관검사 & 동식물 검역

입국심사대를 나와 Baggage Claim Area로 가서 수하물을 찾은 후, 통관수속을 받는다. 신고할 것이 있거나 큰 화물을 가지고 있으면 세관 카운터의 빨간 라인으로 가서 직원에게 여권과 세관 신고서를 제시해 화물 검사를 받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용 녹색 램프 검사대로 가면 된다.

만약 과세대상 물품이 있으면 세관신고서에 상세히 기입해야한다. 세관 직원이 신고서에 세액을 계산하여 적고 스탬프를 찍어서 돌려주면, 세관 뒤쪽에 있는 납세 카운터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면세 반입한도는 거주여부에 따라 다르다. 비거주자의 경우 신변용품 이외에, 담배 1보루, 술 1병, 그 외 선물로 총액 400달러 이내 물품을 면세하고, 거주자의 경우는 캐리비안 지역과 미국령 이외의 해외 국가에 48시간 이상 체류했을 시 800달러 이하 면세, 800달러 이상 1,800달러 이하 3% 관세 부과, 소지한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반입금지품목은 무기류, 마약, 허가 없이 반입되는 모든 고기류, 동물, 과일, 야채, 나무 등의 식물류의 지참을 금하고 있으며, 짚 같은 품목도 식물로 간주되므로 포장에 주의해야한다. 단, 어포류, 멸치, 오징어 등과 김, 미역, 인삼(말린 것), 고추장, 된장, 김치, 젓갈류는 신고만 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l 미국 세관 사이트 : <http://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

■ 도착 로비

입국장에서 나오면 공항 밖으로 나와, 적절한 교통수단을 선택해 이동한다. 시내까지 가는 교통수단을 모를 때는 공항 내 'Ground Transportation'에 교통수단에 대한 안내가 쓰여 있으므로 이를 참고 하면 된다.

미국 출국 절차

9.11 테러 이후 공항의 보안검색이 강화되어 출입국 검색 시 벨트와 신발까지 벗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공항에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 출국수속

출국 수속은 먼저 각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미 입국 시 작성했던 출입국 신고서의 나머지 부분을 제시해야한다. 카운터의 직원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고 출입국신고서를 회수한 후 탑승권을 주는 것으로 출국 수속은 완료된다.

■ 보안검사 & 탑승

탑승구로 들어가기 전에 별도의 출국심사 없이 간단한 보딩 체크와 보안 검사를 받는다. 면세 쇼핑은 비행기 출발 40분 전에 구입이 마감되며 탑승은 비행기 출발 20~30분 전에 시작되므로, 그 시간 전에 게이트 앞에 도착해야한다.

뉴욕 인근 공항

■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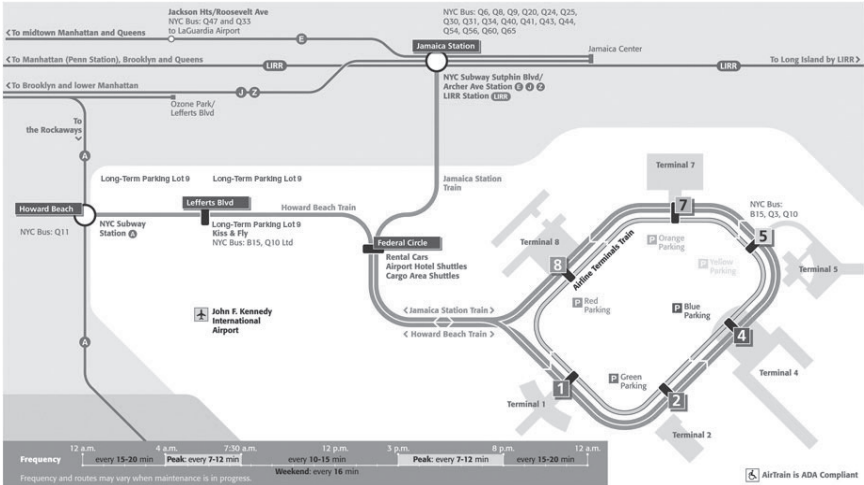
New York

Queens, NY 11430

(718)244-4444

<http://www.panynj.gov/airports/jfk.html>

1) 공항지도



2) 교통수단

- Air Train JFK (<http://www.panynj.gov/airtrain/>)

- 저렴한 이동방법: 지하철로 환승

도착지	이동 방법	추정 비용*	시간
Midtown Manhattan New York Penn Station W.34St.	Jamaica Station 에서 지하철 E 탑승	\$7.75	50 분
Lower Manhattan W.14St.	Howard Beach Station 에서 지하철 A 탑승	\$7.75	60 분
Upper Manhattan W.125St.	Jamaica Station 에서 지하철 E 탑승한 뒤, 도착지까지 지하철이나 버스로 환승하여 이동	\$7.75	75분
Southern Queens, Northern Brooklyn	Jamaica Station 에서 지하철 J나 Z 탑승	\$7.75	50분

* Air Train 요금 \$5 + MTA subway 요금 \$2.75 적용(단, 카드 발급 비용 \$1은 별도)

• 빠른 이동방법: LIRR (Long Island Rail Road) 기차로 환승

도착지	이동 방법	추정 비용*	시간
Manhattan West side (Penn Station) & Queens	Jamaica Station 에서 Long Island Rail Road 탑승	\$15.0	35분

* Air Train 요금 \$5 + LIRR peak 기간 요금 적용

- 택시

맨하탄에서는 승객의 원하는 목적지가 한곳이 아닐 경우 첫번째 목적지까지의 가격은 \$52불이며 그 이후로는 미터기로 이동 가격이 새롭게 측정되어 부과한다. (택시의 불만사항과 관련 안내는 311로 전화)

- 자동차나 벤 서비스

예약은 도착하는 각 터미널에 위치한 Port Authority Welcome Center에서 가능하며,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근처 셀프 서비스 기계를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라이드 공유 서비스 업체	연락처
Airlink New York	(212) 812-9000, (877) 599-8200
All Country Express	(800) 914-4223, (516) 285-1300
Connecticut Limousine	(800) 472- 5466, (203) 974-4700

미국 출입국 및 공항 안내

개인 전용 서비스	연락처
Carmel Super Saver	(866) 666-6666, (800) 924-9954
Dial 7 Car & Limousine	(212) 777-8888, (800) 222-9888

■ LaGuardia Air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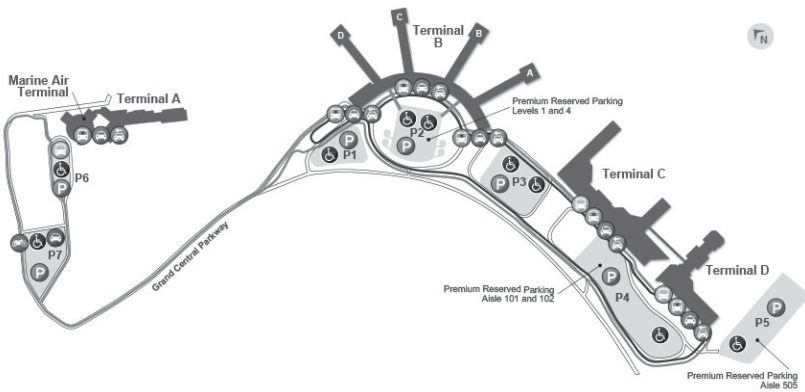
New York

Queens, NY 11371

(718)533-3400

<http://www.panynj.gov/airports/laguardia.html>

1) 공항지도



2) 교통수단

- NYC Airporter

약 30분마다 Port Authority Bus Terminal, Grand Central Station, Penn Station으로 출발하고 요금은 \$13이다. 티켓은 www.NYCAirport.com 에서 구매가능하며 추가 문의사항은 (718) 777-5111로 전화하면 된다.

- 대중교통

공항으로부터 맨하탄과 퀸즈까지는 지하철이나 버스 모두 이용 가능하다. 더 많은 정보는 MTA'S website(<http://www.mta.info>)를 방문하거나 511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

지하철 요금은 메트로 카드 이용시 회당 \$2.75, 싱글 라이드 티켓 이용 시 \$3.00이다. 메트로 카드 기계는 공항안의 터미널에서 이용 가능하며 메트로 카드 이용 시 지하철과 버스 무료로 환승 가능하다.

■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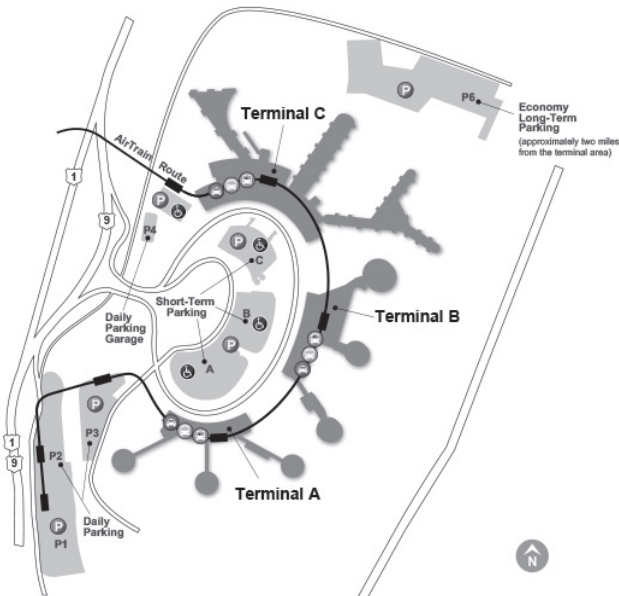
3 Brewster Rd

Newark, NJ 07114

(973) 961-6000

<http://www.panynj.gov/airports/newark-liberty.html>

1) 공항지도



2) 교통수단

- AirTrain Newark

Air Train은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에 가기 위한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수단이다. 24시간 365일 운행하며 NJ Transit과 Northeast Corridor과 North Jersey Coast Line을 달리는 기차로 쉽게 환승이 가능하다. 환승 티켓은 \$5.50이다.

* 운행 및 요금 관련 참고 웹사이트

www.airtrainnewark.com/ www.amtrak.com/ www.njtransit.com

- Newark Airport Express Bus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와 New York City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버스는 매일 운행하며 비용은 편도 \$16이고 왕복 \$28 이다. 오전 6:45분 전과 오후 11:15분 이후에는 매 30분 마다 출발하며 각 정류장에는 15분마다 정차한다.

■ Teterboro Air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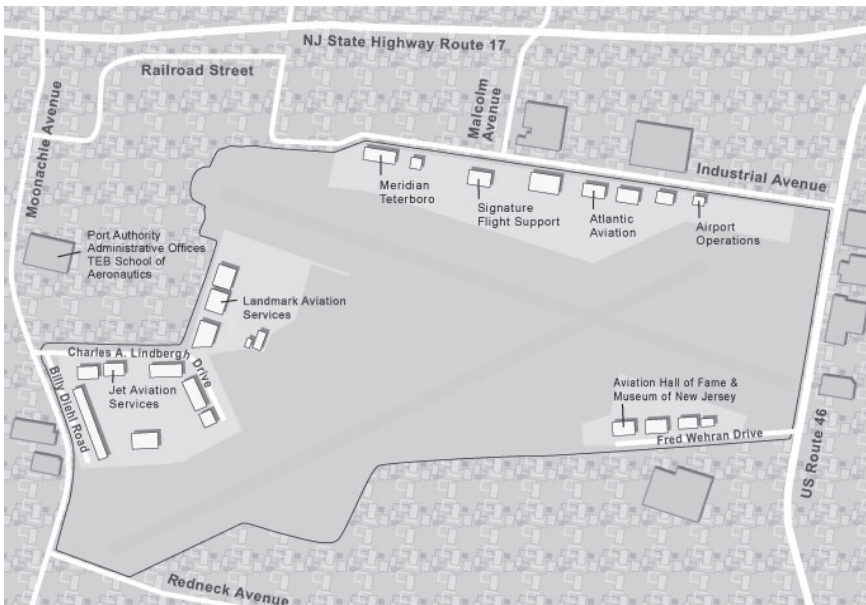
111 Industrial Ave

Teterboro, NJ 07608

(201)288-1775

<http://www.panynj.gov/airports/teterboro.html>

1) 공항지도



주거의 종류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설명을 위해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익혀 두는 것이 편리하다.

■ 임대용 아파트 (Rental Apartment)

1) Studio

1-Room Apt: 방 하나 안에 다 있다.

2-Room Apt: 방 두 개에 부엌, 침실, 거실이 나뉘어 있다.

2) One Bedroom

3-Room Apt: 부엌, 거실, 침실

4-Room Apt: 부엌, 거실, 침실, 식당

3) Two Bedroom

4-Room Apt: 부엌, 거실, 침실 두 개

5-Room Apt: 부엌, 거실, 침실 두 개, 식당

4) Three Bedroom

5-Room Apt: 부엌, 거실, 침실 세 개

6-Room Apt: 부엌, 거실, 침실 세 개, 식당

* Four Bedroom이상의 임대 아파트는 거의 없다.

■ 단독 주택 (Single Family House)

집의 형태에 따라서 단층 주택(Ranch), 2층 주택(Colonial 과 Cape Cod), 1.5층 주택(Split-level 과 Bi-level)으로 나뉜다. 지하실을 포함하여 층수가 많을수록 거주 공간이 넓어 편리하며, 겨울에 대비하여 차고는 있는 것이 편리하다.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을 경우엔 같은 건평이면, 층수가 적거나 계단이 가파르지 않은 집이 안전하다. 집의 위치는 한국과 달라 어디나 소방도로망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조용한 막다른 골목이 선호되고, 뒷마당이 좁거나 들여다보이는 코너 집이나, 집 앞의 도로가 교통량이 많은 (중앙 도로 선이 쳐

있는 길) 위치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마당 청소는 물론 정원을 가꾸는 일, 낙엽과 눈을 치우는 일 대부분이 임차인의 책임이므로, 어느 정도의 여가를 할애할 수 없으면, 추가로 매달 \$100 이상의 조정사 고용을 위한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 콘도 (Condominium)

우리의 분양 아파트에 해당한다. 공동 주택 중에서 개개의 거주 단위(Unit)는 단독 소유이나 공동시설과 대지는 공동 소유인 부동산 형태이다. 구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별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임대 가능하며 고급일수록 각종 공동 이용 시설이 많다.

■ 코옵 (Co-op)

외형은 콘도와 같으나, 소유권의 법적 내용이 다르다. 입주자는 소유주인 부동산 회사의 주식지분을 산 것과 같으며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하다.

■ 두 세대용 주택 (Two-Family House)

두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주택으로, 상하 2세대 (top & bottom)는 1층과 2층이 각각 다른 아파트로 되어 있으며 좌우 2세대 (side-by-side)는 2층 이상으로 된 집으로 좌우로 분리되어 있다.

■ 타운하우스 (Townhouse)

우리의 연립주택 형태로 1층 내지 3층 정도의 아파트 들이 옆으로 연결된 건축 형태로 법적인 소유권의 내용은 콘도와 동일하다.

비교적 자유롭게 정원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집 외부의 관리 는 공동관리사가 맡아주어 편리하다.

임대 아파트나 주택을 찾는 방법

■ 지역 답사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찾아 'For Rent', 'For Lease' 등의 사인이 붙어있는 집을 찾는다. 이 방법을 통해 이웃 상황이나 환경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는, 사인에 표시되어 있는 중개사의 전화번호로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임대부동산은 중개사간의 공동판촉 계약 하에 판촉되므로, 간판에 표시된 중개사가 아닌 다른 어떤 중개사를 통해서라도 상담이 가능하다.

■ 신문광고

1)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pages/realestate/index.html>)

일요일판의 부동산 섹션은 광범위한 지역의 매물 리스팅이 올라와 있어서 지역별, 종류별 시세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같이 이용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Newsday (<http://www.newsday.com/classifieds/real-estate>)

Garden City, Long Island 지역의 임대 광고가 많다. 특히 Queens 나 Long Island 지역의 집들을 찾는다면 이 신문이 유용할 것이다.

- 3) The New York Post (<http://nypost.com/real-estate>),
특히 Queens, Brooklyn, The Bronx 지역들의 임대 아파트 광고가 많다.
- 4) NorthJersey (<http://www.northjersey.com/real-estate>)
뉴저지 북부의 임대 및 매물 광고가 실려있다.
- 5) The Jersey Journal (<http://realestate.nj.com>)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쇄되는 신문으로 Hoboken, Jersey City의 임대 광고를 다루고 있다. 맨하탄의 PATH Station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중개인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중개수수료 (1개월 임차료 상당액)를 부담해야 한다. 신문광고를 통해 찾을 수 있고, 집을 구하려는 지역의 소규모 중개인들은 광고를 잘 하지 않지만, 그 지역에 관한 매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인터넷 & 앱(APP) 검색

Realtor.com, Realty.com, Lendingtree.com 등이 주요 사이트이다. Century21, RE/MAX, Coldwell Banker, Prudential, First Choice 등과 같은 주요 부동산 회사들도 각기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조하면 좋다.

주거지 선택시 유의 사항

- 1) **교통:** 대중교통(기차, 버스, 지하철, 페리 등) 이용이 편리한지 확인한다.
- 2) **학군:** 취학 자녀들에게 맞는 학교 수준, 통학 편의성, 입학 절차등을 미리 확인해둔다. 입학에 관한 정보는 각 타운의 교육부(Board of Education)나 해당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 3) **후생오락 시설:** 아파트라면 단지 내에, 개인 단독 주택이라면 동네에 본인이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수영장, 도서관, 공원 등)이 있는지, 이용은 편리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 4) **냉난방 시설:** 온수와 난방은 기본이다. 그러나 에어컨 시설에 대해선 임차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시설은 입주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이어야 하고, 그 보수유지도 건물주가 책임지는 것이 정상이다.
 - 수도료(Water): 찬물의 사용료이고, 더운물의 사용료는 온수 시설에 따라 가스나 중유 또는 전기료에 합산된다.
 - 전기료(Electricity): 조명시설이나 온수기나 세탁건조기를 포함한 전열기 사용료이나 냉난방용은 따로 정한다.
 - 난방비(Heat 또는 Heating): 난방시설만에 들어가는 가스, 중유 또는 전기료를 말한다.
 - 냉방비(Cooling 또는 Air-conditioning): 시설에 따라 전기이나 간혹 가스료일 수도 있다.
- 5) **기타 보안 시설:** 각 출입문과 유리창의 안전 여부와 열쇠 작동상태를 보고, 만일 전부터 사용하던 자물쇠라면 새것으로 교환 요청을 하거나 교환 동의를 받아 놓는다.

창문에 안전 창살(Window Guard)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요청하는게 좋다. 통상 10세 이하의 아동이 2층 이상에 입주하고, 그 아파트가 10세대 이상인 아파트라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 주어야 한다.

임대 광고 해독법

지역 표시는 시 (최말단 자치행정 단위인 town)의 명칭을 거의 모두 약자 (흔히 자음으로만 표시)로 표기한다. 광고에는 임대료와 동네 이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광고문안 중의 상용 용어들

- RAN: (ranch) 단층 단독 주택
- COI : (colonial) 2층 단독 주택
- C/C: (cape cod) 다락방 있는 단층 단독 주택
- BR: (bedroom) 침실
- BTH: (bathroom) 욕실
- PR (powder room) 욕조나 샤워가 없는 단순 화장실
- 0.5 BTH: 욕조나 샤워가 없는 단순 화장실
- LR: (living room) 거실
- EF: (entrance foyer) 현관
- FR: (family room) 가족실
- DR: (dining room) 식당
- F/DR: (formal dining room) 별도의 방으로 꾸며진 식당
- KIT: (kitchen) 부엌
- EIK: (eat-in kitchen) 간이 식탁이 있는 부엌
- MEIK (modern eat-in-kitchen) 시설이 현대적인 부엌으로 간이식탁까지 갖춘 것.
- HT: (heat) 난방 또는 난방비
- ELEC: (electricity) 전기 또는 전기료
- H/WTR: (hot water) 온수
- C/WTR: (cold water) 냉수
- AC: (air-conditioning) 냉방
- CA: (central air-conditioning system) 중앙식 냉방시설
- DW: (dishwasher) 식기 세척기
- W/D: (washer and dryer) 세탁기와 건조기
- LNDRY: (laundry) 세탁시설
- REFG: (refrigerator) 냉장고
- UNTIL INCI : (utilities included) 전기, 가스, 수도료 포함
- GAR: (garage) 차고
- PARKG: (parking) 주차
- O/S: (outside space) 옥외 주차 공간

- LL: (landlord) 임대인 또는 집주인
- TEN: (tenant) 임차인
- DRMN / CONCIERGE 현관 수위
- B/I: (built-in) 붙박이 시설
- PRINCIPAL ONI Y: 주인 직접 광고 또는 중개사 사절
- AGT, BKR: (agent 또는 broker) 부동산 중개사
- FEE: 중개 수수료

임차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1) 아파트의 경우엔 임대사무소에서 **임차 신청서(Application for Lease)**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 여기엔 주로 임차인이 원하는 임대료, 기간, 식구 수, 직장과 직위, 연간 소득, 거래 은행, 참고인 등을 기록하게 되어있다. 임대사무소는 이를 근거로 신용조사를 하게 된다. 신용기록이 충분치 못한 주재원의 경우에는 명함, 재무보고서, 안내책자(Brochure), 지점장의 고용 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한다.
- 2) **임대차 계약서(Lease Agreement 또는 Contract)**가 준비되면, 요구한 조건들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개 미리 인쇄되어 있는 조항들은 거의 표준화된 문언들과 조항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타자나 손으로 써 넣은 곳과 마지막의 추가 조항(Additional agreements)은 한 구절씩 따져 봐야 한다.
- 3) 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차료, 임차 기간, 임차 보증금액, 과태료, 냉난방비의 부담책임, 수리비의 책임한계, 임차주택에 포함될 추가 시설 (주차공간, 세탁시설, 냉방시설, 가구 등)의 명세, 타지로 전속될 때의 중도해지 유보 조항, 월중간에 입주주의 임차료 정산 방법 등이다. 예를 들어 누가 전기세, 수도세를 부담하며 눈은 누가 치우고 잔디는 누가 깎는지 등의 사항들이 임대 계약에 명시할 내용이다. 법률이 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로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 4) **계약기간(Lease Term)**은 대개 1년 또는 2년이며, 2차 년도에는 임차료를 인상시키는 예가 많으므로 2년 이상의 체제가 확실하면 처음부터 동일 임차료로 2년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의할 것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서면으로 재계약이나 기간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구두 계약이 된다.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는 매월 연장되는 임대계약 (month-to-month lease)이다.
- 5) **계약해지 사전통보 기간**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한다. 주재원들의 경우,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의 환급, 사전통보 기간, 후속 임차인의 물색 등에 대한 함의도 미리 해 두면 유리하다. 주재원들은 누구나 전임 또는 귀임 발령을 받으면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흔히 임대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게 되는데, 이는 곧 계약 위반이 된다. 임대 계약 위반이 있으면 법적 결과가 임대 기간 만료시까지의 임대료를 세입자는 다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물주는 이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의 손해 배상을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Duty to mitigate damage)가 있다. 가령 계약 만료기간 6개월 전에 집을 비웠는데, 건물주가 2개월 만에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서 세를 놓았다면 계약을 위반한 세입자의 손해 배상 책임액수는 2개월치 임대료, 건물주의 광고비나 복비, 그리고 새로운 입주자가 내는 임대료가 계약을 위반한 세입자의 임대료보다 적다면 4개월분의 차액도 계약 위반 세입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 계약 위반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령이 예상되는 해에는 30일 사전 통보를 하면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거나 아니면 최고 손해배상 액수를 명기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임자가 임대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면 리스에 양도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좋다.
- 6) 임차계약서에 **서명할 때**에는 임차보증금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보내야 된다. 월 임대료는 선불이므로 입주일자와 크게 떨어져 있지 않으면 첫 달치 임차료도 첨부한다. 첫 달치 임차료를 지불하는 즉시 열쇠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
- 7) 쌍방이 모두 서명 체결한 임차계약서를 받고 3일 (3 Business days) 이내에는 **변호사에게 검토**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취소하면 그 때까지 지불한 모든 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는 전액 환불되어야 한다.
- 8) 임대차 거래는 **문서화**해야만 법적 집행력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화기에애한

상당과 타협을 통해 계약에 들어가더라도, 그간에 약속하고 아직 지켜지지 않은 사항들은 모두 써넣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설사, 있는 상태대로 인수한다 할지라도, 이상이 있는 시설이나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임차계약서나 또는 따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 놓아 후일에 무고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책임 분담에서 전기료, 가스, 전화료는 세입자가 내지만, 기타 수도료, 제설 작업과 정원관리는 건물주가 하도록 협상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뉴저지에서는 One-Family House의 경우 눈을 치우지 않거나 잔디가 4~6인치 이상되면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 9) 뉴욕시에서는 6가구 이상의 주택이면 임대료 인상을 법률로 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뉴저지에도 임대료 규제법이 있으나 최소 지방자치단체인 타운별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 다만 2가주 주택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면 규제 대상 주택이면 역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임차계약이 보증금을 요구한다. 주택의 경우 1~2개월분 월세로 흔히 책정된다.

주거 정보

가구의 구입이나 전기, 가스, 수도의 명의 이전 신청이나 전화 가입 신청은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도 걸린다.

■ 가구 구입

새 가구의 구입 방법으로는 각종 신문의 광고지를 추천한다. 세일 광고를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실용적인 가구를 원할 시 B.J's, COSCO, IKEA 등의 warehouse를 이용하면 새 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운반해야 하고 또 직접 조립해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중고가구를 찾으려면, 전화번호부에서 중고가구 (Furniture-used) 전문점을 찾을 수 있고, 지역 신문의 Moving Sale 또는 Garage Sale 등을 이용하면 아주 괜찮은 가격에 중고가구를 구할 수 있다. 또 아파트나 교회 또는 식품점의 게시판에도 광고되나 본인이 운반해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침대 매트리스나 안락의자 같은 가구들은 위생상 중고를 구하지 않는 게 나으며, 새 것이라 해도 상표에 의심이 가거나 재생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 침구 선택

- 1) 부품: Frame (받침대), Head Board(머릿판), Box-spring, Mattress
- 2) 매트리스 : Medium Firm, Extra Firm, Super Firm 등으로 구분하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Super Firm이 딱딱해서 한국인이 선호한다.
- 3) 침대 크기: Twin(이름과는 달리 1인용), Full(작은 2인용), Queen size(일반 2인용), King (대형 2인용)
- 4) 침구: 시트에는 매트리스 위에 까는 것(Fitted sheet)과 그 아래 매트리스 사이에 까는 요 (Mattress cover)와 위로 덮는 이불(comforter)나 담요를 싸는 시트(Flat sheet)가 있다. Fitted sheet은 매트리스에 꼭 맞게 모서리가 신축되게 만들어져서 씌우기에 편리하다. 베개 시트인 Pillow cover 역시 종류가 다양하므로 사용할 베개에 맞는 크기로 구입한다.

■ 조명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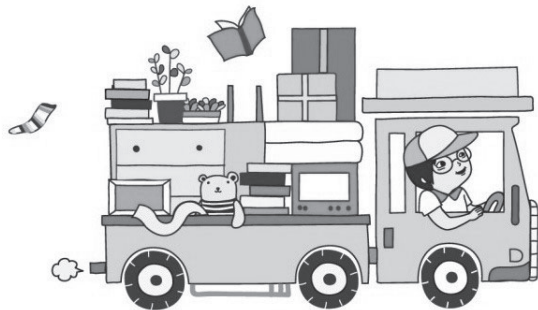
미국은 대개 집을 간접조명으로 꾸민다. 그래서 좀 어두운 느낌이 드나, 익숙해지면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부엌, 욕실, 현관, 복도나 식당과 같이 통행이 빈번하던가 작업 장소가 아닌 침실이나 서재, 응접실, 가족실 같은 방의 천장에는 등이 없는 게 통례이다. 꼭 추가 조명이 필요하다면, 할로겐 램프 스탠드를 구입하면 집안을 좀 밝게 할 수 있다.

이사 정보

이삿짐 용역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사를 하고자 할 경우, 트럭 렌트 회사들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5월에서 6월, 8월에서 9월은 이사철이므로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어야 한다.

- Budget 800-283-4382 www.budget.com
- Penske 888-996-5415 www.penske.com
- Ryder 888-997-9337 www.ryder.com
- Uhaul 800-789-3638 www.uhaul.com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American Moving and Storage Association 의 웹사이트 www.moving.org가 유용하다. 이밖에도 www.firstbooks.com, www.moving.com 등의 사이트를 참조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국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주거지라면 그 다음은 자동차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 자동차는 단순 교통수단이 아닌 일상 생활 그 자체이다. 미국에서 자동차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반경은 자동차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이라고 한다.

Facility Locations/Hours(NJ)

뉴저지 차량국 시설에는 4종류가 있다.

- 1) Regional Service Center: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차량 업무 외에 운전면허시험, 운전자 재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Newark, Paterson, Trenton, West Deptford, Hazlet에 있다.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한다.
- 2) Motor Vehicle Agency: 각 카운티마다 agency가 있다. 카운티별 차이가 있지만 보통 월~금 오전 8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 3) Driver Testing Center: 이곳에서 실제 실기시험이 이루어진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 화요일은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한다.
- 4) Inspection Station: 이곳에서 차량 검사를 해준다.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 (NJ)

DMV 웹사이트 (www.accessdmv.com; www.state.nj.us/mvc) 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필기 시험시 구비해야 할 서류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면허증, Social Security Card, 합법적인 체류비자, Social Security Number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전에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가서 이 번호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만약 Number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Social Denial Letter를 받아야한다.

■ 면허시험 응시

- 1)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고 MVC agency에서 Application for Driver Examination Permit (BA-412C)을 작성하고 \$10을 낸다.
- 2) Driver Manual은 웹사이트 (<http://www.state.nj.us/mvc/About/manuals.htm>) 에서도 구할 수 있다.
- 3) Driver Testing Center에 직접 찾아가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때 permit 을 먼저 받고 시력 검사와 필기시험을 본다.

■ 시력 검사

- 1) 안경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 시력이 20/50 는 유지되어야 한다.
- 2) 시험에 탈락할 경우 안과를 방문해 ST-14 Form을 작성해야 한다.
- 3) 뉴저지 차량국은 인사 사고시 또는 노인에게 운전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 시력 재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 필기시험 절차

- 1) DMV에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의 receptionist를 만나게 되는데 필기시험 을 보러 왔음을 알리면 신청서를 받게 된다. 이 신청서를 작성 후 줄을 서서 기다리면 서류 검사를 하게 된다.
- 2) 시력검사가 끝나면 곧바로 필기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한국어 시험 을 요구할 수 있다.
- 3) 필기시험은 컴퓨터로 치르게 되어 있고, 총 50문제가 출제되며 80% 이상 맞출 시 합격이다.
- 4)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뉴욕주에서는 5년간 유효한 Learner Permit을 발행 하고, 뉴저지주는 다른 창구에서 면허증을 준다.

* 시력검사 전 한국 면허, 국제면허증을 제출하면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 실기 시험

- 1) 실기 시험 일정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3주에서 10주까지 걸리는데, 대개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시험일정이 길어진다. 실기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시험일정을 잡을 수 있다.
- 2) 뉴저지 주의 실기시험 자체는 일부 Newark, Randolph를 제외하곤 실제 Road Test는 아니며 DMV내에 설치된 Test 설비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된다. 뉴욕 주에서는 실제로 Road Test를 하는 점에서 다르다. 시험관이 하는 말을 못 알아 들었어도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긴장하지 않고 보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하느냐 보다도 얼마나 정확하게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차를 안전하게 다루는가에 더 많은 채점 기준을 둔다.
- 3) 시험은 약 10 내지 15분 걸리며, 다음의 기준들에 의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 한 개만 틀려도 불합격일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연습해야 한다.
 - A. Driving in reverse
 - B. Stopping at signs
 - C. Nearing corners, intersections
 - D. Stopping smoothly
 - E. Sitting properly
 - F. Turning around
 - G. Steering properly
 - H. Yielding right-of-way
- 4)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Parallel Parking에서 제일 많이 실패하는데 Parking 간격은 25ft. (약 7.5미터 정도)로 넓은 편이며 앞바퀴 및 뒷바퀴가 도로에서 30cm 이내로 접해야 하고 Parking 도중 앞 뒤로 꽂아놓은 깃대를 건드리면 사고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실제 시험에

서는 정확하게 30cm를 확인하기보다는 Parking 능력을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면, 시험관에게 다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재시도하는 것이 좋다.

5) 실기 시험을 합격하면, 즉석에서 바로 면허증을 받게 된다.

운전기록 (Driver History Records) 확인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보험 가입 등을 위해 본인의 운전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화 [1-888-486-3339 (In State) or 1-609-292-6500 (From Out of State)] 혹은 온라인(<http://www.state.nj.us/mvc/pdf/licenses/DO-21.pdf>)에서 DHA(Driver History Abstract) form을 구할 수 있다.

DHA form을 작성한 후 15달러짜리 수표와 함께 다음의 주소로 보내면 된다.

Motor Vehicle Commission
Abstract Unit
225 East State Street
P.O. Box 142
Trenton, New Jersey 08666-0142

* 자동차 면허 취득관련 감수

이민옥 Simon Lee

TOP 제일운전학원

<http://topdrivingnj.com>

201-384-5000

자동차 구입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수입된 차 모두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지들 또한 다양하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Car Buyers Guide>, <Consumer Car Guide>, <Consumer Report>, <Auto> 와 같은 책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www.edmund.com, www.kbb.com 등이 있다.

차량 등록

차량을 새로 구입했거나 다른 주에서 뉴저지로 이사 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뉴저지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운행 중에는 Vehicle Registration Card를 지참해야 한다.

등록시 필요한 서류로는 Title, 보험증서, Social Security Card, 여권 등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을 하면 바로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차량 구입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참고로 뉴저지 세율은 7%이다. 새 차의 경우엔 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엔 Title 뒤에 판매금액을 쓰는 란을 비운 상태에서 Gift 라고 신고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거의 새 차에 가까운 차를 gift로 신고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을 등록하면 임시 Inspection Notice를 받게 되는데 14일 이내에 Inspection을 받고 2년짜리 정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검사기관과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 정비소가 주의 허가를 받아 검사를 대행하기도 한다.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에서 받는 것이 무난하다. 검사비용은 약 \$40 선이다.

새 차를 구입하면서 용자를 얻게 되면, 달러는 150~250달러를 부과하고 소비자 대신에 Vehicle Registration/Title Application (MV-82) 를 DMV 에 제출해 차량 등록을 대신해 주게 되어있다.

자동차 보험

미국에서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보험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뉴저지 법에 따라 뉴저지 등록차량은 최소한도 책임보험(대인 및 대물)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새 차를 사면 반드시 Full-Coverage Insurance를 구입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경우 Full-Coverage Insurance는 양측 모두의 사람과 차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Liability는 상대방의 사람과 차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 측의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되어있다. 가능하다면 Full-Coverage Insurance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를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Liability Insurance를 갖고 있어야 한다.

Insurance Policy를 살 때, PIP와 UM을 잘 살펴봐야 한다.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란 사고가 났을 경우, 'No Fault'라는 법에 의해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치료비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해 일정 한도액만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사고가 있으면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을 둘러싼 소송이 잦았다. 이런 재판은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면 승소하더라도 자기 수중에는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법률이 만들어짐으로써 소송에 이르는 경우는 훨씬 줄었다.

UM (Protection Against Uninsured Motorist)은 대무 보험차 보험이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었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불한다.

이 밖에도 Reimbursement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Full Coverage 를 드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정된 곳에서 검사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기도 한다. 통상 10일 이내에 검사를 지정된 곳에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대인/대물 보험만 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딜러에서 새 차를 구입한다면 딜러가 보험 Agency와 의사 소통한 후 Car Window Sticker로 대체하기도 한다.

Parking Ticket 을 제외하고 속도 및 신호 위반으로 Ticket 을 받으면 벌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 된다. 연간 4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DMV 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벌점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 사고 유발시에 Ticket을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올라갈 뿐 아니라

그 기록이 DMV에 남게 되어 모든 보험회사가 이 기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옮겨도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AIG 주재원 자동차 보험

미국에 처음 도착한 주재원, 유학생 및 그 가족들이 첫 면허증을 받게 되면 보험 가입시 한국에서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뉴저지 주의 경우는 3점의 Inexperience Point (초보운전자 벌점)를 적용 받아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AIG는 이러한 해외 주재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 할증을 부과하지 않고 미국 내 운전 기록이 매우 좋은 운전자와 동일시하여 보험료를 대폭 절감해주는 특별 보험을 갖고 있다.

AAA

미국 Highway 시스템이나 자동차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주로 여행하게 될 때가 있다. 이때 도로에서 자동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AAA)의 가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 AAA는 Triple A 라고 불리는 데, 미 전역에 900개가 넘는 지부를 두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AAA Membership

주가입자 (Primary Member)로 가입할 경우, \$45 정도의 연간 회비를 지불하게 되어있고 최초 가입시엔 \$10의 가입비 (Initiation Fee)를 추가로 내야 한다.

주가입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28을 내면 Associate Member로 가입할 수 있으며 주가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AAA Plus Membership이 있다. 여기에 가입하는 비용은 주가입

자의 경우 \$40를 추가로 내야 하며, Associate Member는 \$20을 추가로 내면 된다. 주가입자가 AAA Plus 에 가입한 경우에는 Associate Member 역시 AAA Plus 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회원 가입 혜택

- 1) Emergency Road Service: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 2) Member Savings: 호텔, 차 렌트, 영화 티켓, 쇼핑 등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
- 3) Travel with Someone You Trust: 여행 관련 정보 제공
- 4) AAA Financial Services: 크레딧 카드, 자동차 용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5) Driver Improvement Program: 벌점 및 보험 비용 절감을 위한 운전자 교육
- 6) 이밖에 운전면허증의 갱신, 차 등록, 교통위반 티켓 지불, 국제면허증의 발행도 대행해 준다. 또 차량 매매 정보, 차종별 베스트 컨디션 유지 요령 등의 정보도 가르쳐준다. 여행 상담, 호텔, 차량 렌트시 할인 혜택, 각종 지도, 여행정보 무료제공, 각종 여행 책자 및 지도 할인 판매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 Emergency Road Service

- 1) Emergency “First Aid”
원칙적으로 도로 상에서 먼저 비상 조치를 실시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다.
- 2) Emergency Towing Service
도로 상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료로 견인조치를 해준다. 그러나 반경 3 마일 내라면 본인이 견인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반경 3마일 이외의 지역으로 견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3마일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된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견인비용이 마일당 \$3.50 이라면, \$10.50을 공제받게 된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견인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AAA Plus 회원일 경우에는 100 마일까지는 무료로 견인해 준다.

3) Battery Service

차의 배터리가 문제일 경우에는 Jump Start 를 해준다.

4) Flat Tire Service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에는 무료로 이를 처리해 준다.

5) Fuel Delivery Service

연료가 떨어진 경우에는 가까운 서비스 스테이션까지 갈 수 있는 연료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연료는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6) Lockout Service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기타 다른 경우로 인해 차 문을 열 수 없을 경우에는 Locksmith 서비스가 제공된다. 필요하다면 견인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AAA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엔 50불까지 보상이 제공된다.

7) Extrication or Winching Service

이는 차량이 도로를 이탈한 경우에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차량을 다시 정상적인 운행 장소로 올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렌트

미국은 차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대륙이기에 차 렌트 시스템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대표적인 자동차 렌트업체로는 Budget, Enterprise, Avis, National 등이 있다. 예약시 Corpo rate Rate로 하면 약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약 번호를 알려주면 processing 을 하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 보험 가입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장 왔을 경우 등 개인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렌트카가 고장이나 사고 시에는 계약서 뒷면에 있는 800 번호로 전화하면 긴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차를 반납 시에는 Gas를 쓴 만큼 채워 넣어야 한다. 여행 일정이 차를 렌트한 지점에서 반납하지 않고 다른 지점에서 반납해야 할 경우에는 National Rent Car가 drop-off charge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유리하다.

※ 주요 렌터카 업체 연락처

- Avis 212-308-2727; www.avis.com
- Dollar 800-800-4000; www.dollar.com
- Enterprise 800-566-9249; www.enterprise.com
- Hertz 800-654-3131; www.hertz.com

도로 교통 시스템

미국의 고속도로는 철저하게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도로 표지판 하나도 위치, 크기, 빈도 등 운전자의 시각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다.

미국 내 도로는 크게 Interstate Highway, U.S. Route, State Highway, Local Road 등으로 나누어진다.

■ Interstate Highway

Interstate Highway의 총 연장은 46,300 마일에 이르고 있다. 이 도로의 사인은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위는 빨간색으로, 아래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파란색 바탕 안에 흰색으로 숫자가 표시된다.

이 주간 도로에 숫자를 붙이는 데는 규칙이 있다. 남북의 노선은 한 자리나 두 자리의 홀수번호가 붙는데, 대개 5가 끝자리에 붙어있다. 서부에서 동부로 가면 서 숫자가 커진다. 즉 I-5는 서부해안을 달리는 도로인 반면에 I-95는 동부해안을 달리게 된다. 동서로 달리는 도로는 짝수로 표시된다.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숫자가 커진다. I-4는 플로리다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되며 I-96는 미국의 가장 북쪽에서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다. 세 자리수의 짝수 번호는 도시 환상 노선 또는 도시 우회노선을 의미한다. 세 자리의 홀수 번호는 Interstate에서 다른 고속도로, 또는 도시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주요 노선

I-5 서해안을 따라 캐나다 국경, 시애틀,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I-35 중서부. 댈러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오클라호마시티, 멕시코 국경
 I-55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멤피스, 잭슨 루이지애나
 I-95 캐나다 국경,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마이애미
 I-10 플로리다, 뉴올리언스, 휴스턴, 엘파소,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I-40 노스캐롤라이나, 내슈빌, 리틀락, 오클라호마시티, 캘리포니아
 I-80 뉴욕, 클리블랜드, 시카고, 오마하, 솔트레이크 시티, 샌프란시스코
 I-90 보스턴, 버펄로, 시카고, 수벌, 빌링, 시애틀

미국 도로는 대개 1마일마다 출구가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출구가 1 마일 내에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Exit 23A, Exit 23B등과 같이 알파벳을 붙여 구별한다. 이 출구번호를 이용하면 거리 계산도 쉽다.

■ U.S. Route

Interstate Highway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국 내 자동차 붐과 함께 생성된 도로 시스템이다. 편도 2차선인 곳이 많으며 입체교차가 없고 신호가 있는 곳도 있다. 시가지에서는 최고속도 시속 25마일로 제한은 받기도 한다.

사인은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역시 남북으로 달리는 도로는 홀수, 동서로 달리는 도로는 짝수로 표시된다.

■ State Highway

이는 U.S. Highway 바로 아래 단계의 도로로서 주 정부에서 관리한다.

■ Local Road

미국 내 대부분의 지방도로를 일컫는 말이다. Boulevard, Avenue, Road, Street, Lane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뉴욕은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뉴욕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다.

지하철 ·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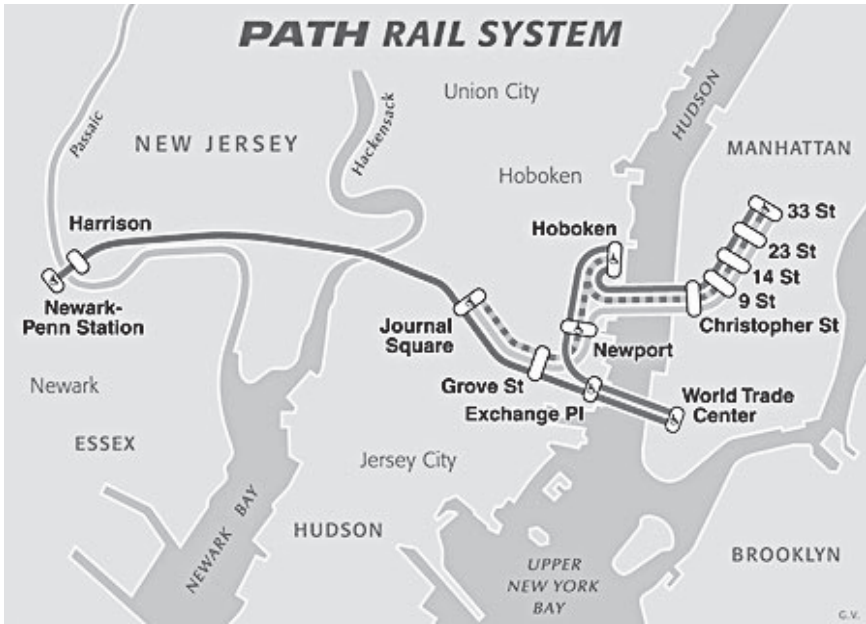
MetroCard 를 사용해 지하철과 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1회에 한해 버스 또는 지하철로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요금은 1회 사용시 \$2.75 이며 Express 버스는 \$6.5 이다. (2015년 8월 기준)

MetroCard의 종류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금액만큼 카드에 충전하여 탑승할 때마다 금액이 빠져나가는 Pay-Per-Ride Card, 편도로 한번 이용할수 있는 SingleRide Ticket과 일정 금액을 내고 일주일 또는 한달 동안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Unlimited Card가 있다. 뉴욕의 지하철은 24시간 운행되고 있으나 밤에는 운행 간격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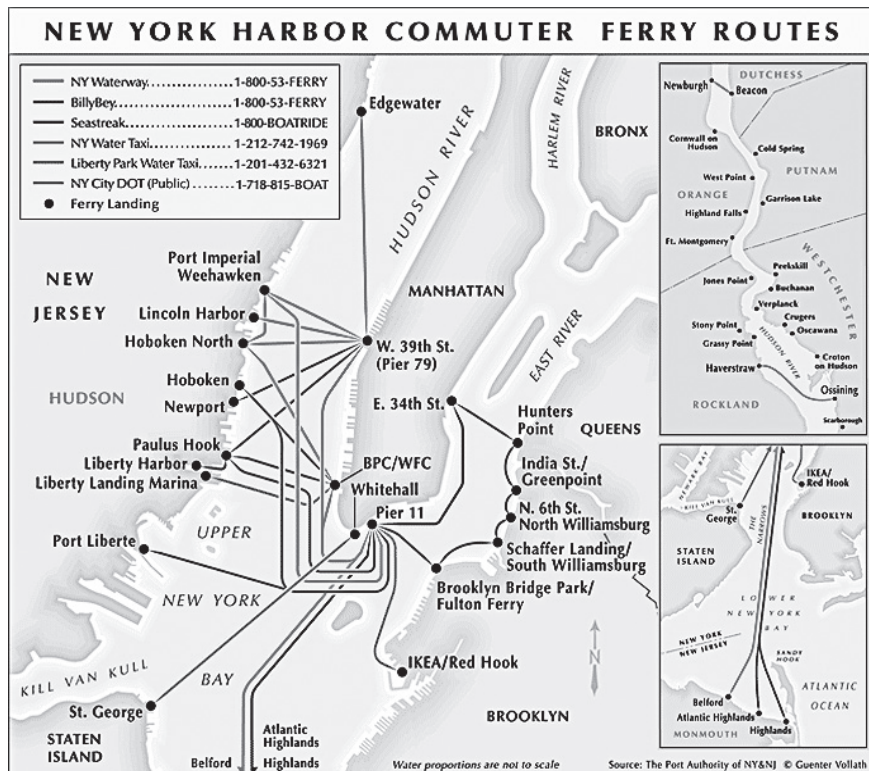
PATH

PATH는 Port Authority Trans-Hudson의 약자로 맨하탄과 뉴저지를 연결해주는 기차다. Smartlink Card, PATH Single Ride 나 Pay-Per-Ride MetroCard 를 사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나 이용 일수에 따라 서도 카드 구매가 가능하며 기본적인 1회 사용시의 요금은 \$2.75이다.



참조 웹사이트: www.panynj.gov/path

페리(Ferry)



참조 웹사이트 : www.nywaterway.com

기차

Penn Station, Grand Central Terminal은 뉴욕 시내의 주요 기차역이다. Penn Station은 31st St과 33rd St, 7th Avenue와 8th Avenue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Grand Central Terminal 역은 42nd Street선상에 Vanderbilt Ave와 Lexington Ave. 사이에 있다.

■ Amtrak

Penn Station 역을 출발해 주로 워싱턴과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미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

www.amtrak.com ; 212-630-7567

■ Metro-North Railroad (MNR)

Grand Central Terminal 과 Penn Station 역에서 출발하며, 뉴욕 북부 업스테이트 지역과 코네티컷 지역으로 운행하고 있다.

www.mta.info/mnr ; 511

■ Long Island Rail Road (LIRR)

Penn Station 역에서 출발하며, Long Island 지역으로 운행하고 있다.

www.mta.info/lirr ; 511

■ The New Jersey Transit

www.njtransit.com ; 973-275-5555

앱(APP) 이용 차량 서비스(무료)



■ UBER

모바일 차량 예약 이용 서비스로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준다.
www.uber.com; 855-823-7692



■ Lyft

승차 공유(Ridesharing) 이용 서비스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준다.
www.lyft.com



■ NYC Subway

뉴욕 지하철 각 역의 정보나 이동 정보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www.mta.info



■ Best Parking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주차할 수 있는 장소의 정보를 알려준다.
www.bestparking.com

은행 선택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은행을 찾는 것이 좋다. 이것은 만일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연방법에 의해 개인의 예금이 25만불까지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선택한 은행을 가능하면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은행 이용 기록은 계좌를 개설한 이후로 시작되기 때문에, 은행을 바꾸면 당연히 은행 이용 기록이 짧아진다.

Checking Account 를 열어서 급여나 기타 소득을 자동 이체해 놓으면,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 미국은 목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보다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소득이 은행 계좌에서 유지되느냐를 중시한다. 이는 성실성에서 신용이 나온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은행 연락처

■ 외국 은행

- Chase Bank www.chase.com
- Bank of America www.bankofamerica.com
- TD Bank www.tdbank.com
- Citi Bank www.citibank.com
- Capital One www.capitalone.com

■ 한국계 은행

- 1) 산업은행
320 Park Ave # 32
New York, NY 10022
www.kdb.co.kr
(212) 688-7686

2) 국민은행

565 5th Ave
New York, NY 10017
www.kbstar.com
(212) 697-6100

3) 수출입은행

460 Park Ave. 8th Floor
New York, NY 10022
www.koreaexim.go.kr
(212) 355-7280

4) 기업은행

1250 Broadway 37th Floor
New York, NY 10001
www.ibk.co.kr
(212) 268-6363

5) 신한은행

600 3rd Ave. 17th Floor
New York, NY 10016
www.shinhan.com
(212) 371-8000

6) 하나은행

650 5th Avenue
New York, NY 10019
www.hanabank.com
(212) 245-4346

7) 농협은행

650 5th Ave. 25th Floor
New York, NY 10019
banking.nonghyup.com
(212) 399-8100

8) 외환 뉴욕 파이낸셜

460 Park Ave. 14th Floor
New York, NY 10022
www.keb.co.kr
(212) 838-4949

9) 우리은행

245 Park Ave. 43rd Floor
New York, NY 10167
www.wooribank.com
(212) 949-1900

10) 한국은행

780 3rd Ave. 23rd Floor
New York, NY 10017
www.bok.or.kr
(212) 759-5121

11) BBCN은행

16 West 32nd Street
New York, NY 10001
www.bbcnbank.com
(212) 279-2790

예금 종류

■ 이자가 붙는 예금계좌

1) Certificate of Deposit (CD)

일정기간 금액을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이다. 기간은 각 은행의 플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은행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플랜이 있다. 현재 Citi Bank 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CD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Saving Account

일정기간 입금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입출금이 자유롭다. 입출금은 은행 내의 창구 또는 ATM에서 가능하다. 이자 지급은 분기 말에 하며 아무 때나 해약할 수 있다.

3) Insured Money Market Account (IMMA)

Saving Account 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한 달에 일정 회수만큼 자동 이체가 가능하다. 은행이나 ATM을 통해서 입출금할 경우에는 회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입금액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다.

4)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은퇴를 대비해 적립해두는 계좌로서, Traditional, Roth, Transfer 세 종류가 있다.

■ 이자가 붙지 않는 계좌

1) Personal Checking Account

이자가 없으며, 은행 플랜에 따라 수표 발행 숫자에 제한이 있다. 잔고의 한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해야 한다. 인출은 수표를 사용하거나 ATM Card를 이용하면 된다. 입금은 예금자의 고유 계좌번호가 인쇄된 Deposit Slip을 사용하거나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Deposit Slip 을 사용한다. 이 계좌는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공동계좌(Joint Account)로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수표책을 받게 되는데 크기, 디자인, 커버 등에 따라 다양한 수표들이 있다. 은행에서 소개시켜주는 곳에서 주문할 수 있지만 약간 비싼 점이 흠이다. 신문이나 광고 전단지들 잘 보면 수표에 대한 광고가 많이 있다. 이를 통해서 하면 싸게 구할 수 있다. Checking Account를 개설하면 즉시 10매 정도의 임시 check를 주므로 당분간 사용 가능하고 정식 check-book은 10일 정도 후에 집으로 우송된다. 자신이 발행한 개인 check는 자기 계좌에서 결제된 후 1개월 단위로 거래내역과 함께 집으로 송부된다.

개인 수표 (Personal Check)

일상 생활에서 모든 공과금이나 집세, 세금 등을 수표를 통해 지불할 수 있으며 쇼핑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한 장소에서 수취인의 이름, 지불액을 적어 서명해서 주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Check를 발행할 때는 항상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잔고 부족으로 check 가 돌아오더라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다시 check를 발행할 수 있으나 크레딧이 나빠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Check 하단에 보면 3종류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맨 앞의 숫자들은 은행번호 (Routing Number)이며, 중간의 숫자들은 자신의 계좌번호 (Account Number)다. 마지막의 숫자들은 check 번호다. 'Pay to the order of' 다음에 수취인의 이름을 기록하면 된다.

크레딧(Credit) 카드

미국은 철저한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크레딧카드가 없으면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서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

어 미국에선 온라인 구매시에 한국계 크레딧 카드를 받지 않는 사이트들이 대부분이다.

미국내 대표적인 크레딧 카드로는 American Express, VISA, Master Card, Discover 등이 있는데, 연회비 및 이자율은 각 개인의 크레딧 및 카드 회사의 정책 별로 각기 다르다.

미국내 크레딧이 없는 주재원의 경우, 은행 거래후 6개월이 지나면 크레딧이 생기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현재 많은 주재원들이 발급을 거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 회사를 통해 크레딧 카드를 신청 접수하는 편이 더 빠를 수 있다. 각 회사별로 미국 내 은행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므로 회사를 통해 카드를 신청할 때 유리하다. 신청할 때는 카드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직위, 연봉, 근무 경력, 미국 내 근무예정 기간 등을 나타내는 편지를 같이 보내면 어렵지 않게 카드를 받을 수 있다. 1명에 한해 카드를 무료로 추가 발급해주므로 신청시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신청 후 대개 1~2주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카드를 수령한 후엔 카드 회사에 본인이 카드를 수령했음을 통보해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만들 때 정한 결제일에 카드회사에서 statement를 통보하는데 사용금액을 개인 check 로 결제하면 된다. 그러나 통보된 금액 중에서 minimum amount만 보내도 된다. 물론 이에 대해선 이자가 발생한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본인의 미국내 크레딧을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크레딧 보고서를 신청하면 더빨리 받아볼 수 있다.

※주요 크레딧 조사기관

- Equifax Information Services, Inc.

P.O. Box 740241

Atlanta, GA 30374

888 -202-4025

www.equifax.com

- Experian

475 Anton Blvd.

Costa Mesa, CA 92626

714-830-7000

www.experian.com

- Trans Union Credit Information Corp.
P.O. Box 1000
Chester, PA 19022
800-888-4213
www.transunion.com

※주요 크레딧카드

- American Express www.americanexpress.com
- Discover Cards www.discovercard.com
- Visa and Master Card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

데빗(Debit) 카드

한국의 체크카드와 동일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통장에 돈이 예금되어 있는 만큼 사용이 가능하지만 종류에 따라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단, 사용 시 비밀번호(PIN Number)를 입력해야한다.



학교 입학

■ 입학 절차

미국 학교는 9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난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1) 각 Town 교육청 편입학 담당자 면담

사전에 학교에 연락해 면담 일정을 잡는다.

면담 구비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또는 여권), 주거 증명 서류 (임대 계약서), 한국 학교 기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건강기록부), 예방 접종 증명서 (Immunization Form) 등이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입학에 필요한 신체검사 서류를 교부해준다.

Town에 따라서는 교육청 대신에 학교에서 바로 입학 수속을 밟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서류들을 구비해서 제출해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를 동일하게 내야 한다.

2) 신체검사

각 Town에 소재하는 가까운 소아과에서 신체검사를 한다. 한인 소아과는 한인 기록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3) 각 Town 교육청 재방문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학교/학년을 배정받는다. 학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배정된다.

4) 해당 학교 방문

다음과 같은 관련서류를 작성한다.

- ① 입학신청서
- ② 긴급연락 조사서
- ③ 건강 확인서
- ④ 학생 인성 확인서

- ⑤ 가족 상황 조사서
- ⑥ 예방 접종 증명서
- ⑦ 건강 진단서

■ 각 Town 교육청 (뉴저지 중심으로)

1) Fort Lee	2175 Lemoine Ave	(201) 585-4612
2) Leonia	570 Grand Ave	(201) 947-4782
3) Paramus	145 Spring Valley Road	(201) 261-7800
4) Tenafly	500 Tenafly Road	(201) 816-4500
5) Englewood Cliffs	143 Charlotte Pl.	(201) 567-7292
6) Englewood	274 Knickerbocker Road	(201) 862-6245
7) Dumont	25 Depew Street	(201) 387-1600
8) Closter	340 Homans Ave	(201) 768-3001
9) Demonest	568 Piermont Rd	(201) 768-6060
10) Haworth	205 Valley Rd	(201) 384-5458
11) Norwood	177 Summit St	(201) 768-6366
12) Harrington Park	191 Harriot Ave.	(201) 768-5700
13) Old Tappan	277 Old Tappan Rd	(201) 664-1421
14) Cresskill	1 Lincoln Dr	(201) 227-7791
15) Ridgewood	49 Cottage Pl	(201) 670-2700

Preschool 입학

미국에서는 정규 의무교육이 만 5세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유치원(Kinder garden)의 입학 연령이 만 5세가 되는 것이다. 5세 미만의 자녀들의 미국 생활에 대한 적응 및 교육을 위해서는 Preschool 입학이 필요하다. Preschool 대부분이 사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의 교회나 성당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Preschool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수업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학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한다.

미국의 교육 제도

의무교육의 연한은 각 주의 법률에 맡기고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 현재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13년 동안으로 정하고 있는 주가 많다. 학제는 역사적으로 보아 8-4제가 많았으나 지금은 6-3-4 (K-5, 6-8, 9-12) 제가 많아지고 있음을 최근 자료에서 엿볼 수 있다.

※연령별 취학 현황

- | | |
|-------------|---|
| 1) 6개월 ~ 3세 | Prenursery school |
| 2) 3~4세 | Nursery school |
| 3) 5세 | Kindergarten |
| 4) 6세 이상 |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로 이어진다. |

■ 유치원 (Kindergarten)

미국은 자녀 교육은 어릴 적부터 자립시키는 교육을 중요시 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돌봐 주는 일은 미국 유아교육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한국 유치원 중에는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자기의 몸치장, 손씻기, 양치질, 코푸는 일, 용변처리 등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미국의 유치원에서는 세 살까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놀며 심신의 발달을 촉진하지만 아이들의 뒷바라지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자발성, 독립심을 기르는 것을 중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치원은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으며 학군 내의 주민은 절차만 밟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또 유치원 교육에 대한 사고방식은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교육 내용이 대부분인데, 표현력, 언어력, 숫자 등 한국과는 그 내용이 차이가 난다.

■ 공립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연강 예정표는 중, 고교 모두 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기 학구의 교육위원회가 설정한다.

토요일 수업이 없으며 여름방학도 통상 6월 하순에서 9월 초순까지이므로 연간 등교일은 한국의 240일에 비해 180일 정도로 수업일수가 적다.

수업은 1~5학년까지는 (학교에 따라 6학년까지는)담임이 특별 수업(체육, 음악, ESL, 도서지도, 컴퓨터)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담당한다. 5,6학년에서는 수학, 과학 등이 전문교사에 의해 지도되는 곳도 있다. 필수 과목은 수학, 사회, 과학, 국어, 음악, 체육, 미술이다.

1) 한국에 없는 특별교과 및 지도법

-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외국인인을 위한 특별 영어지도
- 카운셀링(가이던스): 심리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학교 상담교사가 담임이나 부모와 협력하여 문제의 해결에 임한다. 친구 사귀는 법 등에 관한 그룹 토론 지도도 한다.
- 리소우스 룸: 보충교육의 필요가 없는 아이들에게 전문교사가 알기 쉽게 지도한다.
- 리딩: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특별 지도이다.
- 발표: 이야기하는 법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위한 교정 지도이다.
- Show and tell: 저학년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장난감 등을 집에서 갖고 오게 하여 그것에 대해 모두의 앞에서 설명하게 하고 질문에 응하게 한다. 2학년 이상이 되면 그 날의 뉴스를 발표케 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화제를 정리하는 능력, 사람들 앞에서의 발표력, 사회로 눈을 돌리게 하는 능력 등을 신장시킨다.

2) 국기에 대한 맹세 (Pledge of Allegiance)

미국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는 교사에 의해 매일 일과에 짜여져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강당 이외는 하지 않는 학급도 있다. 외국인 학생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교사도 있다. 단 여러 가지 기회에 맹세를 할 경우가 많으므로 말을 외워두는 것이 좋다.

Pledge of Allegiance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3) 수업시간

한 시간 수업은 약 45분으로 학교 전체가 같은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도 벨은 울리지 않으며 한국에서 수업 전후에 행하는 '차렷', '경례' 등의 인사도 없다. 시간표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결석 (Absence from School) 및 조퇴 (Early Dismissal)

학교를 설 경우는 오전 9시에서 9시 15 사이에 학교 사무실에다 결석 사유를 전화로 알린다. 전염병의 경우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긴급시의 조퇴에는 부모가 서명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하든가 부모가 직접 양호실에서 아이를 데려간다. 어떤 경우에도 아이가 혼자서 학교를 떠날 수 없다.

5) 건강진단(Health Examination)

미국의 대부분의 주 교육국은 모든 학생에게 입학 시와 3,7,10학년이 진급할 때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10월 1일까지 주치의의 서명이 든 진단서의 제출이 없을 경우 학교 지정의가 검진을 실시한다.

■ 공립 중학교 (Middle School)

미국의 중학교는 6학년부터 시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7학년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다. 모두 중학 1학년이라 하지 않고 6,7,8 학년이라 한다.

ESI 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ESI 이외에 음악, 체육, 도공, 수학, 자연과학의 수업을 받지만 ESI 교사, 카운셀러, 각 교과 담임교사가 형평을 봐가면서 서서히 그 밖의 사용 과목에도 참여시킨다.

1) 학교 시간(School Hours)

오전 8시 15분에서 오후 2시 35분까지이다. 귀가버스는 통상 2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방과후의 과외활동이 있는 학생들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3시 30분에 있는 두번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용하는 학생이 반복된 주의에도 불구하고 매너가 나쁠 경우 정기권을 박탈당하고 버스이용의 자격을 잃을 경우도 있다.

2) 결석(Absence from School)

결석할 경우 보호자는 10시까지 상담교사에게 그 이유를 보고한다. 결석이 3일 이상일 경우 보호자는 미리 연락한 뒤 사무실에서 숙제를 받아간다.

3) 점심(Lunch)

점심시간은 30분으로 점심은 각자 준비하거나 카페테리아에서 구입한다.

4) 소풍(Field Trips)

교과과정의 필요에 따라 미술관이나 극장 등에 갈 경우가 있다. 사전에 부모에게 참가 허가서가 보내지며, 참가하기 위해서는 허가서에 서명하면 된다. 대개는 버스를 이용하며 버스값을 포함한 경비는 학부모 부담일 경우가 많다.

5) 예스(YES)

고교에 있는 Youth Employment Service는 여름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8학년생도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사무실에 신청하면 적당한 일을 소개해 준다.

6) PTA (Parent and Teacher's Association)

미국의 PTA는 교사의 협력을 얻어 학부모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조직이며 한국과의 기본적인 차이는 입회가 임의라는 점이다. 학구에 따라서는 없는 곳도 있고, 학구의 평판이 좋은 곳일수록 회원수도 많고, 학교에 대한 역할도 크다.

7) 보건실/양호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가벼운 반창고를 붙이는 정도만 가능하고 아스피린, 타이레놀 등의 해열제 이외의 약은 학교에서 투여할 수 없도록 주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소송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이지만 아이의 건강은 가정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법에 의해서 의사의 증명이 제출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약 사용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있을 때는 주치의에게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 그 경우의 약은 직접 보호자로부터 양호교사에게 건네져야 한다. 아이가 조퇴, 질병,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양호교사가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긴급 연락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에게 연락한다. 그러므로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아이에게 연락처를 분명히 알려 두어야 한다.

■ 공립 고등학교 (High School)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되어있으며, 한국의 중학 3학년부터 고교 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이다. 특수교육을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학구내의 학생은 무시험이며, 수업료도 없다. 1년은 semester라 불리는 두 학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1학기는 9월에서 1월 하순까지 2학기는 2월에서 6월까지이다. 고등학교에서는 9학년을 Freshman, 10학년을 Sophomore, 11학년을 Junior, 12학년을 Senior 라 부른다.

1) 가이던스 서비스(Guidance Service)

가이던스 기관이 있으며, 학생과장(Dean)이나 가이던스 카운셀러라 불리는 교과담당 이외의 교사가 대학진학에 필요한, 이수해야 할 과목 등을 지도한다. 학생과장은 이러한 입시를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4년동안 학생의 담당교사가 되며 상담자 역할을 한다. 학생은 고교에 들어가면 동시에 각자의 학생과장을 소개받으며 졸업 때까지 같은 학생과장의 지도를 받는다.

2) 졸업에 필요한 과목과 학점

고교를 졸업하기 위해선 18.5 학점과 4년 동안의 체육을 이수한 뒤 뉴욕의 경우 뉴욕 주 졸업자격시험(Regents Competency Test)에 합격해야만 한다. 1학점은 통상 주 4회의 수업을 1년 받은 뒤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1학점은 그 과목을 1년간 공부하는 것으로 여기면 된다.(체육은 예외). 18.5학점 중 필수과목이 15학점이다. 그 밖의 것은 3.5학점을 각자 선택한다. 매년 가을에 다음 해에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고 1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하는 학생과장과의 면담 때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예에 불과하다.

※ 성적표 발송시기

제1회: 11월 중순

제2회: 2월 하순

제3회: 4월 중순

제4회: 6월 초순

3) 코스를 도중에 포기할 경우

신중한 코스 선정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도중에 그만두어야 할 경우 학생 과장이나 교과 담당교사에게 알린다. 무단으로 그만 두면 '인정할 수 없는 결석' (교칙, 결석의 항 참조)으로 다루어지며 징계의 대상이 된다. 도중에 코스를 그만둘 경우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1년코스

제 1학기 전반기일 경우는 성적증명서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만 둘 수 있다. 제 1학기 후반기의 성적표 발송 후 1주일까지 코스를 그만둘 경우는 성적증명서에 'W' 로 기록된다.

- 6개월 과정

최초의 5주간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만 둘 수 있다. 제1학기 또는 제2학기 전반기의 성적표 발송 후 1주일 내에 그만 둘 경우는 성적증명서에 'W' 로 기록된다.

• 여름학교(Summer School)

불합격된 과목이나 학점을 늘리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는 여름에 코스를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 AP(Advanced Placement) 코스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코스로서 이를 위해서는 수강 이외에 AP 테스트를 치러야 한다.

4)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석, 지각의 이유(Legal Reason for Absence or Tardiness)
뉴욕 주법에 의거 다음 사항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석, 지각의 이유로 삼고 있다.

- 질병의 경우
- 가족의 누군가가 병환 중이거나 사망한 경우
- 도로 사정이나 날씨로 인해 통학이 불가능할 경우
- 종교적인 이유
- 질병 등으로 격리되어 있는 경우
- 입원중인 경우
- 법원에 출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결석(Illegal Absence)

부모의 승인 하에 여행, 휴가, 가정의 사정 등으로 결석 할 경우는 인정할 수 없는 결석으로 다루어 진다. 이 경우 보호자는 결석 예정일수 등을 보고하고, 하지 못한 수업부분을 채우는 방법이나 시험일의 변경 등을 각 교사와 논의한다. 사전신고가 없을 경우, 결석하여 받지 못한 부분의 수업은 '제로'가 되며 그것이 자주 계속될 경우 학생은 그에 준한 징계를 받는다.

6) 회피(Cut)

홈룸, 집회, 자습시간을 포함한 각 수업에 빠지거나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학교가 전화나 서신으로 그 내용을 가정에 알린다. 회피의 수가 일정수에 이르면 학교는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최종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제적시킬 경우도 있다. 회피하여 받지 못한 부분의 수업은 나중에 보충할 수 없으며 그 평가는 '제로'가 된다.

7) 조퇴(Early Dismissal)

의사의 증명이나 보호자의 이유서가 오전 11시까지 제출되었을 경우에만 조퇴를 허가한다. 조퇴후의 신고는 인정치 않는다.

8) 오픈 캠퍼스 (Open Campus)

오픈 캠퍼스(시간대에 학교를 이탈)의 특권은 12학년에게만 허용된다. 9, 10, 11학년은 학교 시간대에 학교를 떠날수 없으며 하루에 1시간 이상의 자유시간은

없다. 9학년이나 10학년의 교사가 결석할 경우는 감독자가 있는 자습실로 가든
가 아니면 대리 교사의 수업을 받도록 지시된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첫번
째는 3일간 방과후 학교에 남고, 두번째 이상은 정학 처분된다. 12학년이 학교
의 시간대에 9, 10학년생을 밖으로 끌어냈을 경우도 하급생과 똑같은 징계를 받
는다.

※조퇴노트 쓰는 법

Dear Mr. Simpson,
Please excuse Gildong from school at 2:00 on Thursday, Oct. 8th.
She has a doctor's appointment which can't to be changed.
Thank you.
Sincerely yours,
Gilza Hong

※결석노트 쓰는 법

Dear Mrs. White,
Gildong was absent from school yesterday because he had an upset
stomach.
Sincerely yours,
Gilza Hong

※지각노트 쓰는 법

October 10, 1994
Dear Miss Johnson,
My son Gildong went to the doctor this morning. Please excuse his
lateness.
Sincerely,
Gilza Hong

초 · 중 · 고 · 대학 정보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한인 거주 지역 중심의 우수 공립 초등학교, 공립 중학교, 공립고등학교 리스트와 미국 내 우수 사립 고등학교 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괄호 안 순위표시, US뉴스선정 우수공립학교)

■ 공립 초등학교 (Public Elementary School) 우수교

1) 뉴욕

- Anderson School (1)
100 W 77th St
New York, NY 10024
212-595-7193
- Ps 188 Kingsbury (9)
218-12 Hartland Ave
Hollis Hills, NY 11364
718-464-5768
- Ps 203 Oakland Gardens (10)
53-11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4
718-423-8652
- Village Elementary School (12)
90 Convent Rd
Syosset, NY 11791
516-364-5817

- Robert Seaman Elementary School (13)
137 Leahy St
Jericho, NY 11753
516-203-3630
- Ps 196 Grand Central Parkway (20)
71-25 113th St
Forest Hills, NY 11375
718-263-9770
- Ps 101 School in the Gardens (21)
2 Russell Pl
Flushing, NY 11375
718-268-7230
- Ps 205 Alexander Graham Bell (22)
75-25 Bell Blvd
Bayside, NY 11364
718-464-5773

2) 뉴저지

- Mackay School (7)
111 Jefferson Ave,
Tenafly, NJ 07670
201-816-7700
- J.Spencer Smith Elementary School (9)
101 Downey Dr,
Tenafly, NJ 07670
201-816-7715

- Walter Stillman Elementary School (10)
75 Tenafly Road
Tenafly, NJ 07670
201-816-7710
- Ralph S. Maugham Elementary School (14)
111 Magnolia Avenue
Tenafly, NJ 07670
- Orchard Elementary School (16)
230 Demarest Street
Ridgewood, NJ 07451
201-670-2730
- Hawes Elementary School (17)
531 Stevens Ave
Ridgewood, NJ 07450
- Somervill Elementary School (18)
45 South Pleasant Avenue
Ridgewood, NJ 07450
201-670-2750
- Merritt Memorial Elementary School (20)
Dogwood Lane
Cresskill, NJ 07626
201-569-8381
- Ridge Elementary School (21)
325 West Ridgewood Avenue
Ridgewood, NJ 07450
201-670-2740

■ 공립 중학교(Public Middle School) 우수교

1) 뉴욕

- Baccalaureate School For Global Education (1)
34-12 36th Ave,
Astoria, NY 11106
718-361-5275
- New Explorations Into Science, Technology And Math (3)
111 Columbia St.
Manhattan, NY 10002
212-677-5190
- Anderson School (4)
100 W 77th St
New York, NY 10024
212-595-7193
- Ps 122 Mamie Fay (10)
21-21 Ditmars Blvd
New York, NY 11105
718-721-6410
- Robert E Bell Middle School(17)
50 Senter St.
Chappaqua, NY 10514
914-238-2085

- Seven Bridges Middle School (19)
222 Seven Bridges Rd
Chappaqua, NY 10514
914-666-7330

- Jericho Middle School (21)
99 Old Cedar Swamp Rd
Jericho, NY 11753
516-203-3620

2) 뉴저지

- Tenafly Middle School (4)
10 Sunset Ln
Tenafly, NJ 07670
201-816-4900

- Benjamin Franklin Middle School (10)
335 North Van Dien Avenue
Ridgewood, NJ 07450
201-670-2780

- George Washington Middle School (11)
155 Washington Pl
Ridgewood, NJ 07450
201-670-2790

- Cresskill Middle School (19)
1 Lincoln Dr
Cresskill, NJ 07626
201-227-7791

- Glen Rock Middle School (20)
600 Harristown Rd
Glen Rock, NJ 07452
201-445-7700

■ 공립 고등학교(Public High School) 우수교

1) 뉴욕

- The High School of American Studies at Lehman College (1)
2925 Goulden Ave
Bronx, NY 10468
718-329-2144
- Queens High School for the Science at York College (3)
9450 159th Street
Jamaica, NY 11451
718-657-3181
- The Baccalaureate School for Global Education (5)
3412 36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6
718-361-5275
- The Bronx High School of Science (7)
75 West 205th St
Bronx, NY 10468
718-817-7700

- High School for Math, Science and Engineering at CCNY (10)
240 Covent Ave
New York, NY 10031
212-281-6490
- Brooklyn Technical High School (14)
29 FT Greene Pl
Brooklyn, NY 11217
718-804-6400
- Stuyvesant High School (15)
345 Chambers St
New York, NY 10282
212-312-4800

2) 뉴저지

- Bergen County Academies (5)
200 Hackensack Ave
Hackensack, NJ 07601
201-343-6000
- Ridgewood High School (15)
627 East Ridgewood Ave
Ridgewood, NJ 07451
201-670-2800
- Northern Highlands Reginal High School (19)
298 Hillside Ave
Allendale, NJ 07401
201-327-8700

- Ridge High School (20)
268 SO Finely Ave
Basking Ridge, NJ 07920
908-204-2585
- Tenafly High School (22)
19 Columbus Dr
Tenafly, NJ 07670
201-816-6600
- Northern Valley Regional High School At Demarest (24)
150 Knickerbocker Rd
Demarest, NJ 07627
201-768-3200
- Ramapo High School (31)
331 George St
Franklin Lakes, NJ 07417
201-891-1500
- Glen Rock High School (34)
400 Hamilton Ave
Glen Rock, NJ 07452
201-445-7700
- Mahwah High (40)
50 Ridge Rd
Mahwah, NJ 07430
201-762-2406

- Highland Park High School (44)
102 North Fifth Ave
Highland Park, NJ 08904
732-572-2400

■ 사립 고등학교(Private High School) 우수교(*NICHE선정, 순위별)

- 1) Philips Exeter Academy
20 Main St
Exeter, NH 03833
603-772-4311
- 2) Ransom Everglades School
3575 Main Hwy
Miami, FL 33133
305-460-8800
- 3) The College Preparatory School
6100 Broadway
Oakland, CA 94618
510-652-0111
- 4) Horace Mann School
231 W 246th St
Bronx, NY 10471
718-432-4000
- 5) Castilleja School
1310 Bryant St
Palo Alto, CA 94301
650-328-3160

6) Trinity School

139 W 91st St
New York, NY 10024
212873-1650

7) The Hotchkiss School

11 Interlaken Road
Lakeville, CT 06039-2141
860-435-2591

8) San Francisco University High School

3065 Jackson St
San Francisco, CA 94115
415-447-3100

9) Lakeside School

123 Cleveland
City Orange, NJ 07050
973-678-7778

10) Dalton School

108 E 89th St
New York, NY 10128
212-423-5200

11) Milton Academy

170 Centre St
Milton, MA 02186
617-898-1798

12) The Lawrenceville School

2500 Main St
Lawrenceville, NJ 08648
609-896-0400

13) Oregon Episcopal School

6300 SW Nicol Road
Portland, OR 97223
503-2146-7771

14) Sidwell Friends School

3825 Wicsonsin Avenue NW
Washington, DC 20016
202-537-8100

15) Deerfield Academy

7 Boyden Ln
Deerfield, MA 01342
413-772-0241

16) Harvard-Westlake School

3700 Coldwater Canyon Ave
Studio City, CA 91604
818-980-6692

17) The Harker School

500 Saratoga Ave
San Jose, CA 95129
408-249-2510

18) Southwestern Academy

2800 Monterey Road
San Marino, CA 91108
626-799-5010

19) Lick-Wilmerding High School

755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12
415-333-4021

20) St. Paul's School

25 Pleasant St

Concord, NH 03301

603-229-4600

21) Flintridge Preparatory School

4543 Crown Ave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

818-790-1178

22) Polytechnic School

1030 E California Blvd

Pasadena, CA 91106

626-396-6300

23) Menlo School

50 Valparaiso Ave

Atherton, CA 94027

650-330-2001

24) Chadwick School

26800 S Academy Dr

Palos Verdes Peninsula, CA 90274

310-377-1543

25) Head-Royce School

4315 Lincoln Ave

Oakland, CA 94602

510-531-1300

KOCHAM 부설 우리한국학교

‘우리한국학교’는 KOCHAM이 설립한 학교로서 미국에 일시 체류하여 본국 교육을 받을 지상사 및 회원사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본국 교육 과정 연계 교육과 현지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동포 학생들도 수학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전일제로 학습한다.

교육목적



주재원으로서 일상업무에 쫓기다 보면 현지 문화 및 언어를 습득할 기회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주위 여건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아래에 모았다.

주요신문 구독

1) The New York Times

다양한 구독 플랜이 있다. 잘 찾아보면 할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800-698-4637

www.nytimes.com

2) The Wall Street Journal

전문 경제지로서 유용한 경제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웹사이트를 같이 신청하게 되면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웹사이트에는 다른 경제정보 사이트와 연동되어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800-568-7625

www.wsj.com

3) USA Today

미국 전역에 걸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미국 전역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좀더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사들을 다루고 있어 읽기 쉬운 편이다.

800-872-0001

www.usatoday.com

지역신문 구독

■ 미국 언론사

1) Newsday

주로 Queens, Nassau, Suffolk County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역 일간지로 미국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역 신문의 장점은 주요 일간지에 비해 일상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미국 현지 생활에 대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지역 신문에 실리는 자동차 및 주택 광고는 매우 유용한 편이다.

877-545-4834

www.newsday.com

2) The Record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지역 신문으로서 Entertainment, Health, Sports, Business, World News, Nation News, State News, Bergen Community News 등 8개의 Section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세미나, 어린이 행사, 세일 광고, 교육 등에 관한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다.

201-646-4444

www.bergen.com

■ 한인 언론사

1) 미주 중앙일보

213-368-2600

www.koreadaily.com

2) 미주 한국일보

323-692-2121

www.koreatimes.com

3) 뉴욕일보

뉴욕 본사 718-939-0900
 뉴저지 지국 201-943-3351
www.newyorkilbo.com

잡지 구독

- 1) 경제 잡지: Businessweek, The Economist, Fortune
- 2) 스포츠 잡지: Basketball Digest, Baseball Digest, ESPN, Golf Digest

학교 · 학원 수강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현지 문화 체험에 큰 도움이 되며 또 경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직장인 및 성인의 재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수준 또한 높아서 잘 활용하며 체류기간동안 자격증도 얻을 수 있게 되어있다.

1)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Columbia University 에서 개설한 것으로, IT, Communication, GIS, 대학원 준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203 Lewisohn Hall
 212-854-9666
www.ce.columbia.edu

2) School of Continuing and Professional Studies

New York University 에서 개설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다양한 강좌 개설로 인기를 끌고 있다.

Professional Pathways Programs
 7 East 12th Street
 212-998-7200
www.scps.nyu.edu

3) Continuing & Professional Studies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에서 개설하며, 뉴욕 시내 5개 Boro에 걸쳐 캠퍼스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이 있으며 각 college마다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www.cuny.edu/academics/conted.html

4) Bergen Community College(ESI 과정)

학기는 연간 3학기(봄, 여름, 가을 학기)로 구성되고, 각 학기 시작 전 College를 방문하여 Level을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일자를 지정한다.

The International Student Center

201-689-7601

www.bergen.edu/esl

5)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ace University 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이다.

866-722-3338

www.pace.edu/admissions-aid/ipace-and-continuing-education/adult-continuing-education

6) The New School

New School University 에서 개설하여,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았지만, 비교적 등록이 쉬운 편이며 실용적인 코스를 제공하고 있음.

www.nsu.newschool.edu

TV 채널

지역에 따라, 또 케이블 여부에 따라 채널은 달라질 수 있지만, 다음은 뉴욕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전국방송망들이다.

- Channel 2 WCBS
- Channel 4 WNBC

- Channel 5 WNYW (FOX)
- Channel 7 WABC
- Channel 9 WOR
- Channel 11 WPIX(the CW)
- Channel 13 WNET(PBS)
- Channel 21 WI IW
- Channel 25 WNYE
- Channel 31 WPXN

케이블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는 Time Warner 와 Cablevision이 대표적인 케이블 TV 서비스 회사이다.

- Time Warner (www.timewarnercable.com/NYC)
800-892-4357
- Cablevision (www.cablevision.com)
973-230-2037

라디오 채널

- AM News 820(WNYC), 880 (WCBS), 1010(WINS), 1130 (WBBR)
- AM Talk 710(WOR), 770 (WABC), 820(WNYC), 970 (WNYM),
1160(WVNJ), 1230(WFAS), 1460(WVOX)
- AM Sports 660 (WFAN)
- AM Korean 1660(WWRU)
- FM Korean 87.7(WNYZ)
- FM Classical 105.9(WQXR)
- FM Jazz 88.1(WCQP), 88.3 (WBGO)

한인정보 웹사이트

1) 헤이코리안

미국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로, 커뮤니티, 구인구직, 업소록, 사고팔기(중고장터), 부동산 생활정보 등을 안내한다.

www.heykorean.com

2) 중앙일보 업소록(휴대폰 앱 가능)

중앙일보 제공의 뉴욕 한인업소 정보 사이트로 업종별 검색 및 중고장터, 렌트 등 다양한 정보가 있다.

yp.koreadaily.com

3) 한국일보 업소록 (휴대폰 앱 가능)

한국일보가 제공하며 미주 전 지역의 한인업소 및 관공서 등 유용한 정보 안내한다.

yp.koreatimes.com

4) Korea Portal 한인업소록

뉴욕 뉴저지 한인 업소록 사이트이다.

ny.koreaportal.com/yp

5) Missy USA.com

미씨들을 위한 포털사이트로, 미국 생활 정보, 벵룩시장, 요리, 카페 등 생활정보 등을 안내한다.

www.missyusa.com

현지 도착 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가구에서부터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막상 슈퍼마켓 등의 스토어에 가보아도 무엇을 어떻게 사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식품 정보를 알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백화점

- 1) Bloomingdale's (www.bloomingdales.com)

1000 3rd Ave, New York, NY 10022	212-705-2000
504 Broadway, New York, NY 10012	212-729-5900

- 2) Macy's (www.macys.com)

151 W 34th St., New York, NY 10001	212-695-4400
90-01 Queens Boulevard, Queens, NY 11373	718-271-7200
100 Paramus Park, Paramus, NJ 07652	201-967-1400
500 Garden State Plaza, Paramus, NJ 07652	201-843-9100
20 Mall Drive East, Jersey City, NJ 07310	201-255-5200

- 3) Saks Fifth Avenue (www.saksfifthavenue.com)

611 Fifth Avenue, New York, NY 10022	212-753-4000
--------------------------------------	--------------

- 4) Sears (www.sears.com)

50 Mall Drive West, Jersey City, NJ 07310	201-420-5300
9605 Queens Blvd, Queens, NY 11374	718-830-5900

- 5) Target (www.target.com)

13505 20th Avenue, Queens, NY 11356	718-661-4346
543 River Road, Edgewater, NJ 07020	201-402-0252

침구 전문점

- 1) Bed, Bath & Beyond (www.bedbathandbeyond.com)
- 2) Sleepy's (www.sleepys.com)

전자제품 전문점

- 1) P.C. Richard & Son (www.pcrichard.com)
- 2) Best Buy (www.besybuy.com)

가구 전문점

- 1) IKEA (www.ikea.com)
 - 1 Beard St. Brooklyn, NY 11231 888-888-4532
 - 1000 Ikea Dr Eliabeth, NJ 07201 888-888-4532
 - 100 Ikea Dr Paramus, NJ 07652 888-888-4532
- 2) Crate & Barrel (www.crateandbarrel.com)
 - 611 Broadway New York, NY 10012 212-780-0004
- 3) Ethan Allen (www.ethanallen.com)
 - 1010 3rd Ave NewYork, NY 10065 212-888-2384
- 4) Jennifer Convertibles (www.jenniferfurniture.com)
 - 902 Broadway New York, NY 10010 212-677-6862
 - 1 W 125th St. New York, NY 10027
 - 30-52 Steinway St. Astoria, NY 11103
 - 255 Paramus, NJ 07652

쇼핑몰

뉴저지 포트리, 팰리세이드 파크 인근에 BJ's Club, COTSCO 등이 있어 일상 생활용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형 할인점은 연회비 약 55불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는 결코 아까운 비용이 아니다. BJ 같은 곳에서는 식품류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같은 할인점은 다량으로 물건을 구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점보다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싼 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연회비 문제를 떠나 회원 카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1) COSTCO (www.costco.com)

149 State Route 23

Wayne, NJ 07470

2 Teterboro Landing Dr

Teterboro, NJ 07608

20 Bridgewell Place

Clifton, NJ 07014

517 E 117th St

New York, NY 10035

6135 Junction Blvd

Rego Park, NY 11374

3250 Vernon Boulevard,

Long Island City, NY 11106

2) BJ's Wholesale Club (www.bjs.com)

610 Exterior Street

Bronx, NY 10451

396 Luis Munoz Marin Blvd.

Jersey City, NJ 07302

2100 88th St

North Bergen, NJ 07047

3) 한아름

25 W 32nd St. New York, NY 10001
212-695-3283

46-40 Francis Lewis Blvd Bayside, NY 11361
718-229-7400

156-4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888-0005

141-4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358-0700

29-02 Union St. Flushing, NY 11354
718-445-5656

1379 16th St. Fort Lee, NJ 07024
201-944-9009

321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3-9600

260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814-0400

4) 한양 마트

150-51 Northern Boulevard, Flushing, NY 11354
718-461-1911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3-7400

하드웨어점

1) Home Depot (www.homedepot.com)

집에 관한 모든 물품을 다 갖추고 있는 대형 하드웨어점이다.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외에는 연중 24시간 문을 열고 있다. 미국은 주말에 직접 자기 집을 수리하고 가꾸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또 건축 자재들이 모두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필요한 부품을 구할 수 있다.

980 3rd Ave, New York, NY 10022
212-888-1512

40 W 23rd St, New York, NY 10010
212-929-9571

50-10 Northern Boulevard, Long Island City, NY 11101
718-278-9031

73-01 25th Avenue, East Elmhurst, NY 11369
718-507-9007

75-09 Woodhaven Blvd, Glendale, NY 11385
718-830-3323

180 Twelfth Street, Jersey City, NJ 07310
201-963-6513

7605 Tonnelle Ave, North Bergen, NJ 07047
201-868-8125

1055 Paterson Plank Rd, Secaucus, NJ 07094
201-271-1200

상품 정보

1) 빵

Wonder, Arnold, Breadmaker, Storehmann, America's Choice, Kroger 등이 선호되는 브랜드이다. 특히 Wonder사는 미국에서 빵을 만들어 온 오래된 회사로서 정평이 나있다. 이밖에도 English Muffin이라는 종류의 빵이 있는데 토스트한 후 버터를 발라 먹으면 맛있다. 이 빵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Thomas English Muffin 이 가장 유명하고 맛이 있다.

2) 스파게티 소스: Prego, Ragu

3) 요거트 (Yogurt): Dannon, Breyers, Colombo, Yoplait, Kroger, America's Choice

4) 통조림: Campbell's 사의 제품이 가장 대표적이다.

5) 잼: Kraft, Smuckers

6) 스테이크 소스: A1, Old Country House, Peter Luger

7) 부엌용 세제: Ivory, Dove, Palmolive, Joy, Dawn, Sunlight

8) 세탁용 세제: Tide, Cheer, Gain, Wisk, All

식품관련 단어

1) 고기

Ground beef 간 쇠고기

Bacon 베이컨

Lard 돼지기름

Lamb 양고기

Tenderloin 등심살

Rib 갈비살

Sirloin 허리살

Veal 송아지 고기

2) 생선

Carp 잉어
Salmon 연어
Eel 장어
Shrimp 새우
Prawn 참새우
Lobster 바닷가재
Squid 오징어
Tuna 참치
Cod 대구
Red snapper 붉은 도미
Octopus 낙지
Clam 대합
Oyster 굴
Scallop 조개 관자

3) 야채

Broccoli 브로콜리
Celery 셀러리
Cabbage 양배추
Tomato 토마토
Chinese cabbage 배추
Carrot 당근
Cucumber 오이
Eggplant 가지
Radish 무우
Sweet potato 고구마
Scallion 파
Onion 양파
Spinach 시금치
Leek 부추

미국 단위 체계

1) 약어표

tsp. = teaspoon

tbsp. = tablespoon

c. = cup

pt. = pint

qt. = quart

oz. = ounce

lb. = pound

pk. = peck, 8 quart (8.8 liters)

bu. = bushel (36 liters, 8 gallons)

in. = inch

ft. = feet

2) 무게

1 ounce = 28 g

1 pound = 453 g = 16 oz.

1 pint = 2 cups = 0.47 liter

1 quart = 4 cups = 0.95 liter = 2 pints

3) 부피

1 gallon = 8 cups = 3.78 liters = 4 quart

4) 길이

1 inch = 2.54 cm

1 foot = 12 inches = 30.48 cm

1 yard = 3 feet = 91.44 cm

1 mile = 1.6 km

5) 넓이

1 square feet = 929 sq cm = 1/36 평

1 square yard = 9 sq ft = 1/4 평

1 acre = 4047 sq m = 1227 평

6) 온도

섭씨 (Centigrade) = $(F-32) * 5/9$

화씨 (Fahrenheit) = $C*9/5 + 32$

7) 신발 사이즈 (남자)

size 6 = 240 mm

size 7 = 250 mm

size 8 = 260 mm

size 9 = 270 mm

예를 들어 265 mm 구두를 신는 남자라면 size 8,5를 신으면 된다. 또 미국에서는 Wide, Medium, Narrow 로 발의 폭을 쥘다.

8) 신발 사이즈 (여자)

size 5 = 220 mm

size 6 = 230 mm

size 7 = 240 mm

size 8 = 250 mm

9) 옷 사이즈 (남자)

남자 바지의 경우 28-30, 34-32 등과 같이 2개의 숫자로 표시되는데, 앞의 숫자는 허리 사이즈를, 뒤의 숫자는 바지의 길이를 의미한다.

10) 옷 사이즈 (여자)

size 2 = B32.5, W24.5, H35 inches

size 4 = B33.5, W25.5, H36 inches

size 6 = B34.5, W26.5, H37 inches

식품 및 쇼핑 정보

size 8 = B35.5, W27.5, H38 inches

size 10 = B36.5, W28.5, H39 inches

size 12 = B38, W30, H40.5 inches

size 14 = B39.5, W31.5, H42 inches

size 16 = B41, W33, H43.5 inches

샘플세일

샘플세일에서는 견본품, 샘플들뿐 아니라 디자이너들의 양질의 이월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세일 진행 날짜와 열리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Lazar shopping

lazarshopping.com

260 sample sale

www.260samplesale.com

clothingline

www.clothingline.com

Green Market / Farmers' Market

뉴욕의 구경거리가 쇼핑의 대명소로서 이 Green Market 을 빼놓을 수 없다. Manhattan, Brooklyn, The Bronx, Staten Island 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에는 생산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물을 가져와 판매하고 있다. 이 중에서 Union Square 에서 펼쳐지는 마켓이 유명하다. 개장 시간은 대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뉴저지 및 뉴욕에서 접근이 용이한 맨하탄을 위주로 설명한다.

- Bowling Green
- Staten Island Ferry Whitehall Terminal

연중 목요일

연중 목요일, 금요일

- City Hall 3월-12월, 금요일
- Tribeca 연중 토요일
- Gouvernuer Health Youth market 7월-11월, 목요일
- Lower East Sid Youth market 7월-11월, 목요일
- Tompkins Square Greenmarket 연중 일요일
- Stuyvesant Town Greenmarket 5월-12월, 일요일
- Abingdon Square Greenmarket 연중 토요일
- Dag Hammarskjold Plaza Greenmarket 연중 수요일
- Rockerfeller Center Greenmarket 7월-8월, 수요일
- 57th Street Greenmarket 5월-12월, 수요일
- Tucker Square Thursday Greenmarket 연중 목요일
- 79th Street Greenmarket 연중 일요일
- 82nd Street, St.Stephen's Greenmarket 연중 토요일
- 94th Street Greenmarket 6월-11월, 일요일
- Mount Sinai Greenmarket 6월-11월, 수요일
- 97th Street Greenmarket 연중 금요일
- Columbia Sunday Greenmarket 연중 일요일
- El Barrio Youth Marqueta 7월-11월, 토요일, 일요일
- Fort Washington Greenmarket 6월-11월, 화요일
- 175th Street Greenmarket 6월-11월, 목요일
- Inwood Greenmarket 연중 토요일
- St. Mark's Church 6월-11월 화요일

영양성분표 (Nutrition Facts Panel)

미국은 한국과 달리 식품에 대한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위에 보이는 영양 성분 표가 모든 식품에 붙어있어야만 하는게 FDA 의 규정이다. 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도표에 불과한 영양 성분표에 대해 알아두면 식품 구입에 있어 매우 편리하다.

1) 단위 중량 (Serving Size)

이는 영양 성분표에 대한 단위 중량으로서 cup 또는 piece 로 표시된다. Serving Size 바로 아래 있는 “Serving Per Container”는 전체 패키지 안에 든 서빙 사이즈의 숫자다. 위의 표에서는 Serving Per Container 숫자가 2 이므로, 이 성분표가 붙어있는 음식을 다 먹을 경우, 모든 성분의 퍼센트는 2 배가 되는 셈이다.

2) Calories, Calories from Fat
1 서빙 사이즈 안에 들어있는 열량이 Calories 로 표시되어 있다. 또 지방에서 나오는 열량이 Calories from Fat 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는 Calories 는 250 이 며 이중 지방에서 나오는 열량은 110 이다. 거의 절반이 지방에서 나오 고 있다.

3) 섭취 자제 성분

섭취를 자제해야 하는 영양소들로 지방, 콜레스테롤, 염분의 함량이 표시되어 있다. 단백질(Protein)과 당분(Sugar)에는 %DV가 없는데 당분은 1일 섭취권장 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 단백질은 과일 섭취하거나 적게 섭취해도 건 강에 문제가 생기 지 않기 때문이다.

4) 유익한 영양소

우리 몸에 유익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표시한 부분이다.

Nutrition Facts	
Serving Size 2/3 cup (55g)	
Servings Per Container About 8	
Amount Per Serving	
Calories 230	Calories from Fat 40
% Daily Value*	
Total Fat 8g	12%
Saturated Fat 1g	5%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0%
Sodium 160mg	7%
Total Carbohydrate 37g	12%
Dietary Fiber 4g	16%
Sugars 1g	
Protein 3g	
Vitamin A	10%
Vitamin C	8%
Calcium	20%
Iron	45%
*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calorie needs.	
	Calories: 2,000 2,500
Total Fat	Less than 65g 80g
Sat Fat	Less than 20g 25g
Cholesterol	Less than 300mg 300mg
Sodium	Less than 2,400mg 2,400mg
Total Carbohydrate	300g 375g
Dietary Fiber	25g 30g

5) 하루에 요구되는 퍼센트 (Percent Daily Value)

식품의약품이 1인당 1일 열량섭취 권장량 2,000 칼로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모든 영양소에 대해 5% 이하면 적게 함유된 것이며, 20% 이상이면 많은 편이다.

의료보험의 경우 미국엔 국민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민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단체로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을 구입하게 된다. 수혜혜택에 따라 보통 4,5 가지로 나누어지며, 본인이 부담하는 Deductible 과 본인 부담 한도액이 적을수록, 수혜범위가 클수록, 병원선택이 자유로울수록 보험료가 높다.

미국 의료시스템

미국 의료시스템은 의사들의 개인 오피스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에선 의사들이 자신의 오피스에서 환자를 진료한다. 필요할 경우엔 환자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으로 보내고 그곳에 나가서 치료하거나 수술한다. 환자가 직접 종합병원에 찾아가는 일은 드문 일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의사도 병원의 고객인 셈이다.

따라서 가족과 자신을 위해 편한 의사를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 분야별로 담당의를 만들어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이 일일이 자신의 병에 대해 알고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는 주치의 또는 가정의 (Family Doctor) 제도가 있다. 대부분의 미국 가정들은 주치의를 정하여 가족의 건강 관리나 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주치 의와 상담한다.

대부분의 보험이 주치의의 '의뢰서(Referral)' 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들은 보험 규정상으로도 주치의를 먼저 만나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험에 따라서 주치의의 '의뢰서(Referral)' 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바로 전문의를 찾아갈 수 있다.

주치의는 말 그대로 한 가족의 모든 건강 상담, 건강 진단, 예방 주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의 가벼운 질병의 치료 및 검진 등을 하고 있다. 주치의가 스스

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의뢰해 준다.

주치의는 본인 및 가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특별히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 분야의 의사를 선택하거나 진료의 전문성을 가진 동시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진료영역이 넓은 가정의(Family Practice)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시 신체검사 결과 및 주치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므로 학교 등록 전에 적당한 병원 또는 의사를 정해서 주치의로 위촉해야 한다.

본인과 가족에게 맞는 의사를 찾기 위해서는 동일 과목에 대해 다른 의사들을 만나보고 결정할 수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주치의 권유를 받는 것을 권한다.

예방 접종

미국에서는 학교 입학 및 전학을 위해 예방 접종 기록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용어 설명

1) DTaP/DTP/DT: 3가지 종합예방주사

Diphtheria 디프테리아
Tetanus toxoids 파상풍
Pertussis 백일해

2) Polio (OPV/IPV)

Inactivated Polio (IPV) 소아마비

3) MMR

Measles 홍역
Mumps 유행성 이하선염
Rubella 풍진

4) Hepatitis B B형 간염

5) Varicella 수두

■ 접종 스케줄

1) Hepatitis B

18개월 전까지 총 3회에 걸쳐 접종한다. 출생과 더불어 1차 접종이 병원에서 실시되며, 이 경우에는 총 4회 접종한 것이 된다. 2~4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해야 하고, 6~18개월 사이에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1차 접종 이후 최소 4주 이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16주 후에, 2차 접종 후 최소 8주 이후에 실시한다. 마지막 접종 (3차 또는 4차)은 6개월 이전에는 해선 안된다.

2) DTaP

18개월 전까지 최소 4회에 걸쳐 접종한다.

최초의 3회는 4~8주마다 하는데, 일반적인 연령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1세 반, 4세 반이다. 4차 접종은 반드시 네번째 생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3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고 아이의 연령이 15~18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4차 접종을 12개월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3) Hib

2개월, 4개월, 6개월째에 접종한다.

4) MMR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접종하는데, 일반적인 접종 연령은 15개월이다.

2차 접종은 4~6년 사이에 아무 때나 접종이 가능하나,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는 4주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1차 및 2차 접종 모두 12개월째나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5) Polio

18세 이하까지 최저 3회 접종을 해야 하며 최초의 2회는 10주마다 한다. 3회째는 2회 접종 후 6~12개월 뒤에 한다. 3회 접종이 2세 미만일 때는 다시 한번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D.P.T.를 할 때 함께 한다.

6) Varicella

12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1회 접종을 한다.

전문 치료과목 명칭

Allergology	알러지과	Obstetrics and Gynecology	산부인과
Anesthesiology	마취과	Oncology	암 전문과
Cardiology	심장과	Ophthalmology	안과
Dentistry	치과	Orthopaedics	정형외과
Dermatology	피부과	Otolaryngology	이비인후과
Endocrinology	내분비과	Pathology	병리학
Family Medicine	가정의학과	Pediatrics	소아과
Gastroenterology	위장과	Pharmacology	약학
Hematology	혈액과	Plastic Surgery	성형외과
Immunology	면역과	Podiatry	족병학과
Infectious Disease	전염병과	Psychiatry	정신과
Infertility	불임과	Pulmonary	호흡기과
Internal Medicine	내과	Radiology	방사선과
Neonatology	신생아과	Rehabilitation	재활의학과
Nephrology	신장과	Rheumatology	류머티스과
Neurology	신경과	Horacic	폐전문과
Neurosurgery	신경외과	Urology	비뇨기과

약구입 방법

미국엔 한국과 같은 약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큰 슈퍼마켓에 Pharmacy store가 같이 있는 경우와 Pharmacy chain store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Rite Aid, CVS Pharmacy, Drugstore, Walgreen 등이 독립적인 Pharmacy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잡화와 함께 Pharmacy store 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첫눈에는 Pharmacy store로 인식하기 어렵다.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서 보험증과 함께 제출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2,30분이면 약을 가져올 수 있다. 집 부근의 Pharmacy store를 정해서 고정적으로 이용하면, 기록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편리한 경우가 많다.

뉴욕 · 뉴저지 주요 병원

■ BRONX

1) BRONX CHILDREN'S PSYCHIATRIC CENTER

1000 Waters Pl.
Bronx, NY 10461
T: 718-239-3600

2) BRONX-LEBANON HOSPITAL CENTER

Concourse Division:
1650 Grand Concourse
Bronx, NY 10457

3) CALVARY HOSPITAL (Catholic Health Care System)

1740 Eastchester Rd.
Bronx, NY 10461
T: 718-518-2000

4) JACOBI MEDICAL CENTER (NY City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

1400 Pelham Pkwy So.

Bronx, NY 10461
T: 718-918-5000

- 5) LINCOLN MEDICAL & MENTAL HEALTH CENTER
(NY City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
234E, 149th St.
Bronx, NY 10451
T: 718-579-5016

- 6) MONTEFIORE MEDICAL CENTER
111E, 210th St.
Bronx, NY 10467
T: 718-920-4321

- 7) NEW YORK WESTCHESTER SQUARE MEDICAL CENTER
(NewYork Presbyterian Healthcare System)
2475 St. Raymond Ave.
Bronx, NY 10461
T: 718-430-7300

■ BROOKLYN

- 1) MOUNT SINAI BROOKLYN
3201 Kings Hwy.
Brooklyn, NY 11234
T: 718-252-3000
- 2) BROOKDALE UNIVERSITY HOSPITAL AND MEDICAL CENTER
555 Rockaway Pkway
Brooklyn, NY 11212
T: 718-240-5000

3) THE BROOKLYN HOSPITAL CENTER

Downtown Campus
121 Dekalb Ave.
Brooklyn, NY 11201
T: 718-250-8000

4) KING'S COUNTY HOSPITAL CENTER

(New York City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
451 Clarkson Ave.
Brooklyn, NY 11203
T: 718-245-3131

5) LONG ISLAND COLLEGE HOSPITAL

339 Hicks St.
Brooklyn, NY 11201
T: 718-780-1000

6) NEW YORK METHODIST HOSPITAL

(New York Presbyterian Healthcare System)
5066th St.
Brooklyn, NY 11215
T: 718-780-3000

7)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450 Clarkson Ave.
Brooklyn, NY 11203
T: 718-270-1000

8)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BROOKLYN CAMPUS

800 Poly Pl.
Brooklyn, NY 11209
T: 718-836-6600

■ MANHATTAN

- 1) BETH ISRAEL MEDICAL CENTER
(Continuum Health Partners, Inc.)
Minton and Carroll Petrie Division
First Ave. at 16th St.
New York, NY 10003
T: 212-420-2416

- 2) HOSPITAL FOR JOINT DISEASES CENTER FOR CHILDREN
301 E. 17th St.
New York, NY 10003
T: 212-598-6205

- 3) LENOX HILL HOSPITAL
100 E. 77th St.
New York, NY 10065
T: 212-434-2000

- 4)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1275 York Ave. between 67th and 68th Streets
New York, NY 10021
T: 212-639-2000

- 5) METROPOLITAN HOSPITAL CENTER
(New York City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
1901 First Ave. at E. 97th St.
New York, NY 10029
T: 212-423-6262

6) THE MOUNT SINAI HEALTH SYSTEM

555 W 57th Street
New York, NY 10019
T: 212-523-5555

7)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New York Presbyterian Healthcare System)
New York Weil Cornell Medical Center
525E, 68th St.
New York, NY 10021
T: 212-746-5454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622 W.168th St.
New York, NY 10032
T: 212-305-7771

8) NYU DOWNTOWN HOSPITAL

(Mount Sinai NYU Health System)
170 William St.
New York, NY 10038
T: 212-312-5000

9) ST. LUKE'S-ROOSEVELT HOSPITAL CENTER

(Continuum Health Partners, Inc.)
Roosevelt Division
100010th Ave.
New York, NY 10019

St. Luke's Division
1111 Amsterdam Ave.
New York, NY 10025
T: 212-523-4000

■ QUEENS

- 1) ELMHURST HOSPITAL CENTER
(New York Cith Healthand Hospitals Corporation)
79-01 Broadway Ave.
Elmhurst, NY 11373
T: 718-334-4000

- 2) FLUSHING HOSPITAL MEDICAL CENTER
4500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 718-670-5000

- 3) JAMAICA HOSPITAL MEDICAL CENTER
8900 Van Wyck Expy
Jamaica, NY 11418
T: 718-206-6000

- 4) LONG ISLAND JEWISH MEDICAL CENTER
(NorthShore-LongIsland Jewish Health System)
270-05 76th Ave.
New Hyde Park, NY 11040
T: 718-470-7000

- 5) THE MOUNT SINAI HOSPITAL QUEENS
(Mount Sinai/NYU Health System)
25-1030th Ave.
LongIsland City, NY 11102
T: 718-932-1000

6) THE NEW YORK HOSPITAL QUEENS

(New York Presbyterian Healthcare System)

56-45 Main St.

Flushing, NY 11355

T: 718-670-2000

7) NORTH SHORE UNIVERSITY HOSPITAL AT FOREST HILLS

(North Shore-Long Island Jewish Health System)

102-01 66th St.

Forest Hills, NY 11375

T: 718-830-4000

■ STATEN ISLAND**1) BAYLEY SETON CAMPUS**

75 Vanderbilt Ave.

Staten Island, NY 10304

T: 718-818-6000

2) SOUTH BEACH PSYCHIATRIC CENTER

777 Seaview Ave.

Staten Island, NY 10305

T: 718-667-2300

3) STATEN ISLAND UNIVERSITY HOSPITAL

475 Seaview Ave.

Staten Island, NY 10305

T: 718-226-9000

■ NEW JERSEY

1) ENGLEWOOD HOSPITAL AND MEDICAL CENTER

350 Engle Street
Englewood NJ 07631
T: 201-894-3000

2) HACKENSACK UNIVERSITY MEDICAL CENTER

30 Prospect Avenue
Hackensack, NJ 07601
T: 551-996-2000

3) HOLY NAME HOSPITAL

718 Teaneck Road
Teaneck, NJ 07666
T: 201-833-3000

4) THE VALLEY HOSPITAL

223 North Van Dien Avenue
Ridgewood, NJ 07450
T: 201-447-8000

5) ROBERT WOOD JOHNSON UNIVERSITY HOSPITAL

One Robert Wood Johnson Place
New Brunswick, NJ 08901
T: 732-828-3000

전기 · 가스 신청

미국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를 통틀어 ‘유틸리티’라 부른다. 민영화가 철저히 이루어져 있어 회사들이 매우 다양하다.

뉴욕에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Consolidated Edison (Con Ed)이며, 신청은 전화 (800-642-2308)로 가능하다.

Bergen County 지역에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PSE&G(Public Service Electric & Gas Company)이다. 뉴저지 북부 일부 지역의 전기는 Rockland Electric Company에서 공급하고 있다. 전화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PSE&G

150 how Ln

New Brunswick, NJ 08901

(800) 436-7734

Rockland Electric Company

390 West Route 59

Spring Valley, NY 10977

(877) 434-4100

수도 신청

Bergen County 의 수도 공급은 United Water 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화로 직접 신청 가능하다.

United Water

200 Old Hook Road

Harrington Park, NJ 07640

201-767-9300

www.unitedwater.com

전화 신청

미국은 여러 전화 회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영업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그러나 동시에 선택의 어려움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부임지나 거주지 이웃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웃간 이용하는 전화 회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선택해야 한다.

Verizon(www.verizon.com), AT&T(www.att.com), T-mobile(www.tmobile.com)등이 전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Verizon과 AT&T가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다. 각 통신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플랜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 직접 플랜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기에게 맞는 플랜을 신청하기 전에 통화의 종류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시내 통화, 시외 통화의 개념이 조금 더 세분화 돼 있다. 각 회사별로 용어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의 통화(call)로 구분할 수 있다. Local Call, Local Toll (Regional Toll) Call, In-State Long Distance Call, State-to-State Long Distance Call 등이 있다.

1) Local Call

대개 거주지역과 인접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화로 한국에서의 시내 통화 개념과 비슷하다.

2) Local Toll Call

In-State Long Distance Call, Regional Toll, Local Long Distance, Shorter Distance Call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음의 지도에서 보듯이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LATA(Local Access Transport Area)로 구획되어 있는데, 같은 LATA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화이긴 하지만 Local Calling Area를 벗어나게 되면 이는 Local Toll Call에 해당한다.

3) Long Distance Calls

한국의 장거리 통화 개념으로서 주간 (State-to-State) 통화나 같은주 내에서도 다른 LATA로 걸게 되면 Long Distance Calls 이 된다.

각각의 통화 종류에 따라 전화회사도 달리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ocal Call, Local Toll 에는 Verizon 을 선택하고, Long Distance 에는 AT&T 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각 회사별로 Package Plan을 다양하게 내놓아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전화회사가 수시로 플랜을 변경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웹사이트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인들은 수시로 전화회사를 바꾸고 있는데, 바꾸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싸게 나온 플랜으로 변경 요청하면 된다. 이 중에 알아두어야 할 것은 Slamming, Cramming 이다. Slamming 은 소비자가 몰래 다른 장거리전화 회사로 서비스가 바뀌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매월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일 slamming 이 나타났으면 기존의 전화회사에 연락을 취해 원래의 서비스로 되돌리도록 하고 요금을 다시 계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ramming 의 경우는 통화하지 않았는데 통화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다. 통화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보내면 된다. 이의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엔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888-225-5322), the New York State Consumer Protection Board (<http://www.dos.ny.gov/about/contact.asp?DCCode=CP>) 등으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이 된다.

참고로 거주 지역의 전화 플랜을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 (www.saveonphone.com)를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화번호부는 생각보다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White Pages 에는 정부 및 커뮤니티 서비스 전화번호들과 함께 비상시의 전화번호들이 수록되어 있다. Yellow Pages 는 그 자체로 뉴욕시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참조하면 역사유적지, 교통지도, 콘서트홀 배치도 등의 흥미로운 정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전화회사에 연락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는 매우 많고 다양하다. 신문광고를 참조하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목요일판 뉴욕타임스 “Circuits” 섹션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향을 담고 있다. 다음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1) Time Warner Cable

800-892-4357, www.timewarnercable.com

2) Verizon Fios

855-3454-7542, www.fios.verizon.com

3) Comcast

800-934-6489, www.xfinity.com

우편 서비스 종류

미국의 우편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알아두면 편리하다. 미국 우체국 웹사이트(www.usps.com)에는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다.

■ 국내 우편

- Priority Mail Express
- Priority Mail
- First-Class Mail
- Standard Mail
- Periodicals
- Package Services/Standard Post

■ 국제 우편

- Global Express Guaranteed
- Priority Mail Express International
- Priority Mail International
- First-Class Mail International
- First-Class Package International Service
- Airmail M-Bags

국내 우편의 종류

■ Priority Mail Express

가장 빨리 배달되는 우편으로서 1-2일 소요되며 오후 3시까지 수신자에게 배달된다. 추가 요금 없이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배달되며, 연중 365일 배달이 가능하다. Express Mail Next Day Service 의 경우에는 우체국이 지정하는 시간대까지 가져가야 하며, Express Mail Second Day Service 의 경우에는 오후 5시까지 우체국에 가져가야 한다. 중량 제한은 70파운드까지이며, 작은 우체국에서는 취급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전화 등으로 우체국에 알아보면 좋다. 추가 서비스로는 Insured Mail, Return Receipt, Collect on Delivery 등이 있다.

※Express Mail Rates for Post Office to Addressee Service

From \$16.95 at the Post office

From \$13.09 for Commercial Base

From \$11.16 for Commercial Plus

■ Priority Mail

Express Mail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시일에 보낼 수 있는 우편 서비스이며 1-3일의 Business day가 소요된다. 집/회사 등에서 무료 Package picku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소포에 최대 \$50 의 보험이 적용된다. 균일 요금(Flat rate), 지역별 요금, 선불 결제가 적용된다.

※ Priority Mail Rates

Free supplies	Shipping Price	Dimensions	Great fo
Flat Rate Envelope	\$5.05 online (commercial base) \$5.75 Post Office (retail)	12 1/2" x 9 1/2"	Letters Documents Manuscripts
Legal Flat Rate Envelope	\$5.25 online (commercial base) \$5.90 at Post Office (retail)	15" x 9 1/2"	Legal Documents
Small Flat Rate Box	\$5.25 online (commercial base) \$5.95 at Post Office (retail)	Outside: 8 11/16" x 5 7/16" x 1 3/4" Inside: 8 5/8" x 5 3/8" x 1 5/8"	Brochures Small Electronics
Medium Flat Rate Box	\$11.30 online (commercial base) \$12.65 at Post Office (retail)	Outside: 11 1/4" x 8 3/4" x 6" Inside: 11" x 8 1/2" x 5 1/2"	Office Supplies Shoes
Large Flat Rate Box	\$15.80 online (commercial base) \$17.90 at Post Office (retail)	Outside: 12 1/4" x 12 1/4" x 6" Inside: 12" x 12" x 5 1/2"	Laptop Computers Gifts etc.

■ First Class Mail

일상생활에서 13온스 이하의 엽서, 편지, 개인수표,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로 요금은 건당 35센트이다. 만약 13온스가 넘으면 이 우편물은 자동적으로 Priority Mail 로 취급된다. 배달에는 1-3일 정도가 소요된다. 추가되는 서비스에는 Certificate of Mailing, Certified Mail, Collect on Delivery, Insured Mail, Registered Mail, Delivery Confirmation, Signature Confirmation 등이 있다.

국내 우편 추가 서비스

■ Proof of Mailing

1) Certificate of Mailing

우편을 보냈다는 증거자료의 역할을 한다. 배달이 되었다는 기록을 알 순 없다. 우체국에 copy본이 없으므로 발신인이 증서를 보관해야 한다. Form 3817/3877만 사용 가능하며, 요금은 \$1.35 이다.

2) Certified Mail

발송 영수증과 함께 배달 기록이 우체국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나 우편보험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First-Class Mail 과 Priority Mail 에 적용되며 Restricted Delivery, Return Receipt 과 우체국에 직접 가야만 발송할 수 있다. 요금은 \$3.45 이다.

■ Protection in Transit

3) Insured Mail

귀중품을 보낼 때, 분실, 도난 또는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5,000 까지 보상하고 있다.

4) Registered Mail

고가의 귀중품을 우송할 때 사용되는 서비스로서 \$50,000 까지의 물품에 적용된다. 그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취급비용이 적용된다. First-Class Mail, Priority Mail 에 적용된다. 온라인/우체국/Rural Carrier를 통해 발송 가능하다.

■ Confirmation at Delivery

5) Collect on Delivery (COD)

수신자에게 우편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로서 \$1,000 을 넘지 않는다. Express Mail, First-Class Mail, Priority Mail, Package Services 등에 적용되는데, First-Class Mail, Priority Mail 의 경우에는 Registered COD 로 보내야 한다. 가격은 \$7.25 이다.

6) Restricted Delivery

지정된 수신인에게만 배달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우편을 받을 때 신분증(ID) 제시가 요구될 수 있다. First-Class Mail, Priority Mail, Package Services 에 적용되는데, Certified Mail, COD, Registered Mail 중의 하나와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7) Return Receipt

우편이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녹색의 영수증에 수신자가 사인을 하고 우체국이 이를 발신인에게 발송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정부나 기관들에 중요한 물건을 보낼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우편을 정상적으로 발송했으며 이를 수신자가 받았다는 일종의 기록이다. 이민국이 서류를 잘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재원들이 이민국에 서류를 보낼 때 Certified Mail 서비스와 Return Receipt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길 권한다. 우편 영수증은 \$2.80, 이메일 영수증은 \$1.40 이다.

국제우편의 종류

■ 속달 우편 (Expedited Services)

1) Global Express Guaranteed®

FedEx Express를 통해 미 우정국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1-3일만에 우편이 배달되는 가장 빠른 서비스다. \$55.85부터 요금이 시작되고, 최대 \$100까

지 보험이 적용된다. 약 180개국에 서비스가 제공되며 목적지까지 tracking이 가능하다.

2) Priority Mail Express International

배달에 약 3-5일이 소요되며 요금은 \$38에서부터 시작된다. Flat Rate을 적용 시 박스일 경우 최대 20파운드, 봉투일 경우 최대 4파운드까지 고정 금액으로 보낼 수 있다. Flat Rate 박스와 봉투는 우체국에서 무료 제공된다. USPS Tracking® 이 적용된다. 우편물 분실/손상 시 서류일 경우 최대 \$100, 물건일 경우 최대 \$200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3) Priority Mail International

배달에는 약 4-6일 소요되며 가격은 \$37.50부터 시작한다. 우체국에 가면 Flat Rate 박스와 봉투가 무료 제공된다. 약 180개국으로 발송 가능하며 USPS Tracking®이 적용된다. 상황에 따라 보험/보상금이 적용될 수 있다.

■ 일반 우편 (Standard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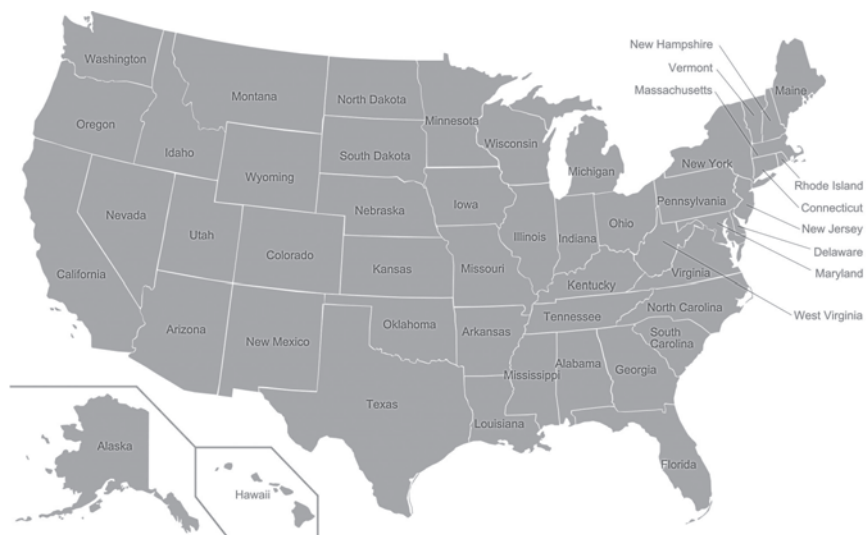
1) First-Class Package International Service

일반적으로 국제우편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비스로서, 금지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을 이 서비스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 무게 제한은 4파운드 이하로, \$400 이상의 물품을 보낼 수 없으며, 국가별로 특정 제한/금지 제도가 있을 수 있다. 가격은 \$7.10부터 시작한다.

2) First-Class Mail International

가장 저렴한 국제우편 서비스로서, 우편 배달에는 약 4-6주가 걸린다. (지역에 따라 상이)엽서, 편지, 서류봉투 등을 발송 가능하고, 무게 제한은 4파운드 이하이며, \$400 이상의 물품을 보낼 수 없다.

미국 주 약자



Alabama(AL)	Indiana(IN)	Nebraska(NE)	South Carolina(SC)
Alaska(AK)	Iowa(IA)	Nevada(NV)	South Dakota(SD)
Arizona(AZ)	Kansas(KS)	New Hampshire(NH)	Tennessee(TN)
Arkansas(AR)	Kentucky(KY)	New Jersey(NJ)	Texas(TX)
California(CA)	Louisiana(LA)	New Mexico(NM)	Utah(UT)
Colorado(CO)	Maine(ME)	New York(NY)	Vermont(VT)
Connecticut(CT)	Maryland(MD)	North Carolina(NC)	Virginia(VA)
Delaware(DE)	Massachusetts(MA)	North Dakota(ND)	Washington(WA)
Florida(FI)	Michigan(MI)	Ohio(OH)	West Virginia(WV)
Georgia(GA)	Minnesota(MN)	Oklahoma(OK)	Wisconsin(WI)
Hawaii(HI)	Mississippi(MS)	Oregon(OR)	Wyoming(WY)
Idaho(ID)	Missouri(MO)	Pennsylvania(PA)	District of Columbia*(DC)
Illinois(IL)	Montana(MT)	Rhode Island(RI)	

기타 정보

뉴욕의 경우 맨해튼의 34rd St. & 8thAve.에 있는 General Post Office에서는 24시간 오픈하며, 연중무휴로 영업을 한다. 그날의 소인이 필요한 경우나 급한 우편은 여기에 가져가면 된다. 추수감사절 등의 축제일에도 연다.

Zip Code는 1963년에 제정된 것으로 Zone Improvement Program의 약자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네모속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소의 맨뒤, 즉 주 이름 다음에 쓴다. 우편번호가 없으면 우편물은 뒷전에 놓이고, 배달도 늦어질 경우가 있다. 즉 우편번호가 있으면 더 빨리 정확히 배달된다. 이는 다섯자리 숫자로 이루어지는데, 최초의 숫자 0-9는 전미국을 분할한 지역번호, 2,3번째는 각주를 약 10개로 구분한 중앙우체국 번호, 4,5번째는 배달구역번호를 가리킨다. 중앙우체국은 대도시에만 있다. 따라서 우편물은 중앙우체국에 보내진 뒤 구분되어 배달된다.

미국에서는 주소를 번지부터 쓴다. 다시 말해서 번지(12324), 거리명(Brock Ave.), 도시명(Downey), 주명(CA), Zip Code(90242)순으로 쓴다. 아파트인 경우는 Apt.38 또는 #38이라 표기하고 거리명 다음에 쓴다. 우편에 관한 최신정보는 웹사이트(<http://www.usps.com>)를 참고하면 된다.

맨하탄 주소 해석 방법

맨하탄에서는 단순히 주소만을 통해서 위치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찾아가고자 하는 곳에 전화를 걸어 몇 가와 몇 가 사이에 있냐고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방법을 익혀두면 간편하게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 Avenues

맨하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북방향으로 1st Avenue에서부터 10th Avenue까지 달리고 있다. Avenue 선상의 주소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물 주소 번호의 마지막 숫자를 빼고 나머지 숫자를 2로 나눈다. 그리고 다음의 숫자들을 더하거나 빼다.

Avenues A,B,C,D -----	+3
1st Avenue -----	+3
2nd Avenue-----	+3
3rd Avenue-----	+10
4th Avenue -----	+8
5th Avenue - up to 200-----	+13
5th Avenue - up to 400-----	+16
5th Avenue - up to 600 -----	+18
5th Avenue - up to 775 -----	+20
5th Avenue - up to 1286-----	18
6th Avenue / Avenue of the Americas -----	12
7th Avenue - below 110th Street -----	+12
7th Avenue - above 110th Street -----	+20
8th Avenue -----	+10
9th Avenue -----	+13
10th Avenue-----	+14
Amsterdam Avenue -----	+60
Broadway - above 23rd Street -----	30
Columbus Avenue -----	+60
Convent Avenue -----	+127
Lenox Avenue -----	+110
Lexington Avenue -----	+22
Madison Avenue -----	+26
Manhattan Avenue -----	+100
Park Avenue -----	+35
West End Avenue -----	+60

예를 들어 460 Park Avenue 의 경우, 마지막 숫자 0 을 빼면 46 이 된다. 이 46을 2로 나누면 23이 되는데, Park Avenue 이므로 35 를 더해야 한다. 그러면 5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즉 Park Avenue 선상의 58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Central Park West 와 Riverside Drive 는 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Streets

맨하탄의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들을 Street 으로 명명하고 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숫자가 커지고 있다. Street 의 주소를 파악할 때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5th Avenue가 동서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5th Avenue를 기준으로 1부터 시작해서 각각 동서 방향으로 숫자가 커진다. 예를 들어 25 West 42nd Street은 5th Avenue와 6th Avenue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25 East 42nd Street은 5th Avenue와 Madison Avenue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 방향

Fifth - Madison, Park	1 - 99
Park - Lexington	100 - 140
Lexington - Third	140 - 199
Third - Second	200 - 299
Second - First	300 - 399
First - York	400 - 499

서쪽 방향 (58th Street이하 지역)

Fifth - Sixth	1 - 99
Sixth - Seventh	100 - 199
Seventh - Eighth	200 - 299
Eighth - Ninth	300 - 399
Ninth - Tenth	400 - 499
Tenth - Eleventh	500 - 599

서쪽 방향 (58th Street이상 지역)

Central Park West - Columbus	100 - 199
Columbus - Amsterdam	200 - 299
Amsterdam - WestEnd	300 - 399
WestEnd - Riverside	400 - 499

뉴욕 관광

뉴욕 시는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의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볼거리가 더욱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경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래서 먼저 맨해튼 투어를 신청해 뉴욕의 전체적인 모습을 구경하길 권한다. 숲을 봐야 나무를 안다는 이치다.

투어 안내

1) 버스 투어: Gray Line New York

777 8th Ave, New York, NY 10036

(212) 445-0848

www.newyorksightseeing.com

2) 크루즈 투어: Circle Line Sightseeing Cruises

허드슨 강의 Pier 83 (W. 42nd Ave. 서쪽끝)에서 출발해 맨해튼 섬을 일주한다. 가격과 프로그램이 다양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하철 A,C,E를 타고 42가역에서 내린 후 M16, M42, M50를 타면 된다.

(212) 563-3200

www.circleline42.com

3) 헬리콥터 투어: New York Helicopter

가격이 좀 비싼 편이지만 상공에서 바라보는 맨해튼의 모습은 매우 장관이다.

212-361-6060

www.newyorkhelicopter.com

여행정보 센터

1) The Official New York City Guide

뉴욕 시내 관광을 위한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으며 브로드웨이 연극 할인권을 구할 수 있다.

810 Seventh Ave., 3 fl New York, NY 10019

212-484-1200

www.nycgo.com

2) 타임스 스퀘어 여행자 센터(Times Sq. Visitor Center)

1560 Broadway

212-768-1560

3) 뉴욕주 관광안내 사이트

여행에 관한 사이트는 많이 있지만, 이 사이트는 주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로서 관광 정보를 충실히 담고 있다.

www.iloveny.com

관광명소

맨해튼은 전체를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34 St. 남쪽을 Downtown, 59 St 북쪽을 Uptown, 34-59 St.을 Midtown 이라 부른다.

■ Midtown

1) 타임스 스퀘어 (Times Square)

브로드웨이와 7번 street이 교차하는, 42~47 St.의 삼각지대를 일컫는다. 1906년 뉴욕 타임스 사가 본사 빌딩을 이곳에 이전하면서 유래되었다. 타임스 스퀘어 부근으로 각종 극장, 상점 등이 즐비해 볼거리가 풍부하다. 이곳에 있는 티켓 부스에서 당일의 브로드웨이 연극 티켓을 구할 수 있다.

2) IBM 빌딩(IBM Building)

Madison Ave. 와 57thSt.이 만나는 곳에 있는데, 유리로 덮인 공간 속에는 인조 죽림이 무성하다. 1층에 있는 Public Space는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각종 이벤트가 열린다.

3) 록펠러 센터(Rockefeller Center)

GE 빌딩, 타임라이프 빌딩 등을 비롯해 각종 시설이 가득차 있는 복합 건물 지대로서 48thSt에서 51stSt사이, 5thAve.에서 7thAve.사이의 정방형을 일컫는다. 전체 빌딩 수를 합하면 총 21개 건물에 층수로는 560층이나 된다. 뉴스캐스터 가상 체험도 할 수 있는 NBC스튜디오 견학 투어가 있다.

4) 크라이슬러 빌딩(Chrysler Building)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나란히 뉴욕의 마천루를 상징하는 고층 빌딩으로서 Lexington Avenue를 따라서 42ndSt.과 43rdSt.사이에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비늘 모양의 사탑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이미지를 딴 것이며,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녹슬지 않는다. 일반 관광객은 1층 로비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5)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

5thAve.와 34thSt.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지상 102층, 높이 443미터의 뉴욕의 상징으로 1931년 대공황 극복의 일환으로 지어져 미국인들의 애정이 깊은 빌딩이다. 우선 지하의 매표소에서 에스컬레이터로 1층으로 올라가 거기서 엘리베이터로 80층까지 오른다. 80층에서 일단 갈아타고 86층의 전망대에 도착한다. 102층에는 또다른 엘리베이터로 올라간다.

6) 트럼프 타워(Trump Tower)

56thSt.와 5thAve.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왕 도널드 트럼프의 빌딩으로서 지하 1층에서 5층까지는 고급 쇼핑몰, 6~20층까지는 오피스, 그리고 21층 이상은 고급 맨션으로 스티븐 스피버그, 클랩튼 등이 살고 있다.

7) 5번가(The Fifth Avenue)

워싱턴 스퀘어에서 시작되어 센트럴 파크 동쪽을 스치면서 할렘까지 뻗는 중심 도로이나, 흔히 42~59 St. 사이의 고급 쇼핑가를 의미한다. 이 사이에는

Bergdorf Goodman 백화점, 티파니, 구치, 록펠러 센터 등이 늘어서 있다. Fifth Avenue라는 이름으로 비디오 테이프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8) 세인트 패트릭 성당(Saint Patrick Cathedral)

미국 최대 규모의 카톨릭 교회. 아일랜드의 수호신 세인트 패트릭의 이름을 딴 것으로 세인트 패트릭의 날인 3월 17일에는 아일랜드계 시민이 모여들고 퍼레이드도 열린다.

9) 라디오시티 뮤직홀(Radio City Music Hall)

1260 Avenue of Americas에 위치해 있으며 1932년에 개장. 약 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극장이다. 특히 1886년부터 시작된 라인 댄스 '로켓츠'는 압권이라 할 수 있다.

10) MOMA(Museum of Modern Art)

5번가와 53rd St.에 있는 미술관으로 전세계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프랑스 인상파로부터 현대까지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11) 뉴욕 공립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국회 도서관에 이어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도서관이다. 5th Avenue선상에서 40th St.과 42nd St.사이에 있다.

12) 카네기 홀(Carnegie Hall)

1891년 창설되어 음악의 전당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한다. 뉴욕 필하모니 교향악단의 본거지였으나 1962년부터 뉴욕 필하모니는 링컨 센터의 필하모니 홀을 쓰고 있다. 57th St 과 7th Avenue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 Downtown

1) 월스트리트 (Wall Street)

뉴욕증권거래소, 체이스 맨해튼 은행 등이 들어서 있는 세계 경제, 금융의 중심지이다. 월(Wall)이라는 이름은 인디언의 침입에 대비하여 1653년 이곳에 성벽을 쌓은 데서 유래한다. 월 스트리트는 1840년대에 금융경제의 중심지가 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부호들이 이곳을 무대로 활약을 해왔다.

2) 자유의 여신상 (Statue of Liberty)

프랑스 정부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우호의 표시로 선물한 것이다. 여신상을 설계한 사람은 프랑스의 조각가 프레데릭 바로톨루티로 그리스 신화의 빛의 여신을 모티브로 했다. 1871년 뉴욕에 처음 온 프레데릭은 배가 뉴욕에 다다르면서 눈에 들어오는 맨해튼의 경치에 감동받아 이 섬을 선택했다고 한다. 여신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는 미국인 건축가 R.M. Hunt가 설계했다. 조각상은 1865년에 설계되어 21년 후인 1886년에 완성되었다. 지하철 1또는 N, R 노선으로는 South Ferry 역에서 내리고, 4 또는 5번으로는 Bowling Green 역에서 내리며, 버스로는 M1, M6를 타고 Battery Park에서 내리면 된다. Battery Park 라는 이름은 예전에 이곳에 포대가 있었기 때문에 유래되었다.

3) 빌리지 (Village)

브로드웨이, 허드슨 강, 하우스턴 가로 에워싸인 맨해튼 남쪽 지역으로 그리니치 빌리지라 불리는 예술의 거리이다. 이곳에 뉴욕대학교 (NYU)가 위치해 있다. 넉넉한 마음으로 여기 저기 둘러보면서 젊음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Strand Bookstore(828 Broadway)는 최대의 헌책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헌책이라고는 하지만 재고 처리를 위해 들어온 신간들이 대부분이다. 주말을 책과 함께 보내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4) 소호 (SOHO)

South of Houston 의 약자로 빌리지 남단인 하우스턴 가의 남쪽이란 뜻이다. 전위적인 예술가들과 함께 화랑, 바,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인근에 '레옹'과 '대부'의 촬영지였던 리틀 이탈리아 지역과 차이나타운이 연결되어 있어서 더욱 볼거리가 풍부하다.

■ Uptown

1) 센트럴 파크 (Central Park)

맨해튼의 한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대한 공원으로 남북 4킬로미터, 동서 약 800미터에 이른다. 1858년 조경가 프레드릭 오름스테드와 건축가 칼버트 박스가 시작한 이 대공원은 1873년에 완성되었다. 일찍이 양들의 방목지였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 울창한 녹음과 용기된 암반 등을 그대로 남겨놓으면서도 드넓은 잔디밭과 연못 그리고 스포츠 시설 등을 적절하게 배치해놓아 말그대로 '도심 속의 오아시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나 공원 관리국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어 계획을 잘 세워야 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2) 링컨 센터 (Lincoln Center)

뉴욕의 음악, 연극, 무용의 전당으로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줄리아드 음대, 뉴욕 필하모니의 연주장인 애버리 피셔홀, 뉴욕 주립극장 등이 들어서 있다. Broadway Avenue와 65th Street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3) 자연사 박물관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센트럴 파크 서쪽에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으로서 자연사 및 인류 역사를 다채롭게 꾸며 자녀들의 학습에도 매우 도움이 될만하다. Central Park West Avenue를 따라서 77th St 과 81st St 사이에 있다.

4) 구겐하임 미술관 (Guggenheim Museum)

센트럴 파크 동쪽에 있는 미술관으로 현대의 그림, 조각, 그래픽 아트 등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품으로 뿐만 아니라 건물 외형으로도 유명한 박물관이다.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건물 위로 올라간 뒤 나선형 통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전시품을 감상하게 되어 있다. 5th Avenue와 88th St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5)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

센트럴 파크의 동쪽 부분, 82nd St에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이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의 고대 미술에서 시작해서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300만 점의 소장품이 진열되어 있다.

워싱턴 관광

■ 시내 관광

워싱턴 DC 시내관광의 중심은 몰(Mall)이라고 할 수 있다. Constitution Avenue와 Independent Avenue 사이, 동쪽으로 국회의사당과 서쪽으로 링컨 기념관 사이의 정방형 지역으로 숲으로 둘러싸인 큰 공원처럼 되어 있다. 이 주변에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백악관, 정부청사 등이 들어서 있다.

1) 백악관 (White House)

1800년 제2대 존 애덤스 대통령 때부터 써온 대통령 관저이다. 1층 동쪽 부분이 일반에게 공개된다.

2) 국회의사당 (The Capitol)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높이 79미터의 돔을 가진 길이 약 250 미터의 큰 건물이다. 상원과 하원이 함께 쓰고, 중앙에 큰 홀이 있다.

3) 국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7300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다. 1455년에 인쇄된 구텐베르크 성서도 소장되어 있다.

4)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 (Smithsonian Institute)

1846년 영국의 화학자 제임스 스미스 소니가 세운 종합박물관으로 국회의사당 앞 양쪽에 흩어져 있다. 이들 건물은 자연사 박물관, 역사 기술 박물관, 허시혼 미술관, 항공우주박물관 등이다.

5) 워싱턴 기념탑 (Washington Monument)

높이 169 미터의 오벨리스크 모양의 흰 기념탑이다.

6)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Thomas Jefferson Memorial)

1943년 제퍼슨 탄생 200주년 때 완성된 전당이다. 중앙이 원형으로 된 아름다운 건물이다.

7) 펜타곤 (Pentagon)

알링턴 모지 동남쪽에 있는 국방성 건물로 육해공군, 합동참모본부 등이 들어있다.

8) 케네디 센터 (Kennedy Center)

포토맥 강을 내려다보고 서있는 연주장이다.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 홀, 영화관, 극장이 들어있다.

9) 링컨 기념관 (Lincoln Memorial)

포토맥 강을 등지고 서있는 그리스 양식의 전당이다. 중앙 로비에 링컨의 좌상이 있고 벽면에는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조각되어 있다.

■ 주요 워싱턴 근교 관광지

1) 알렉산드리아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는 1749년에 스코틀랜드 상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항구도시로 워싱턴 DC에서 남쪽으로 약 5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버지니아 주의 역사적 도시의 하나다. 미국 독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워싱턴이나 그밖의 애국자들이 이 도시에 모여 정치를 논했던 유서 깊은 곳이다. 도시 자체는 작은 편이며, 걸어서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 조지 워싱턴이나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명장 리장군과 관련있는 건물과 사적들이 많다. 볼만한 유적으로는 미국 초기 건물로 Gasby's Tavern (134 N. RoyalSt.;703-838-4242)과 Carlyle House(121N.FairfaxSt.;703-549-2997)을 들 수 있다. Gasby's Tavern은 1770년에 세워진 조지아풍의 선술집과 1792년에 세워진 페더럴 스타일의 호텔로 이루어졌다. 당시 이 Tavern은 알렉산드리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Carlyle House는 스코틀랜드 상인 John Carlyle 이 1752년에 포토맥 강변에 세운 조지아풍의 대저택으로 당시의 화려함을 맛볼 수 있다. DC에서 지하철 블루, 옐로 라인으로 약 20분 이동한 후 Kings St.에서 하차해서 Kings St. 동쪽으로 약 15-20분 걸으면 알렉산드리아의 중심부가 나온다.

2) 마운트 버논 (Mount Vernon)

미국의 건국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그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다. 워싱턴 DC 남쪽 25km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전형적인 18세기 농원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견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운트 버논으로 가는 길목인 조지 워싱턴 파크웨이는 시원스런 포토맥 강변을 따라 봄과 여름엔 꽃바람 산들바람이, 가을엔 노랑과 주홍색으로 치장한 단풍길과 바람결에 우수수 지는 낙엽, 겨울엔 하얀 눈꽃이 그 운치를 더해준다. 지하철 블루, 옐로 라인의 Hungtington 역에서 Fairfax Connector 버스 #101 southbound 행이 마운트 버논으로 운행한다. 뉴욕에서 가는길: 뉴욕에서 95번 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달린다. 워싱턴DC에서 포토맥강에 세워진 우드로 윌슨 브리지를 건너 뒤 첫번째 출구로 나가 첫 신호등에서 우회전하면 조지 워싱턴 파크웨이이다. 여기서 남쪽으로 8마일 정도 가면 마운트 버논 주차장과 만난다.

※개장: 11~2월 오전 9~오후 4시

4~8월 오전 8~오후 5시

3, 9, 10월 오전 9~오후 5시

입장료: 어른 17달러, 6~11세 9달러, 62세 이상 16달러, 5세 이하 무료

문의: (800)429-1520, www.mountvernon.org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철도-뉴욕(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매일 두세번 앰트랙 편이 있으며 약 8시간 30분 걸린다. 나이아가라의 철도역은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있다. 캐나다 철도역은 다운타운에 있으며, 미국 철도역은 Hyde Park Blvd.와 Lookport Rd. 에 있다. 역 주변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다운타운까지 3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 불편하고 나이아가라 폭포까지는 52번 버스로 약 20분 걸린다. 대개 택시를 이용한다.

* Niagara Falls Visitor Center

10 Rainbow Blvd, Niagara Falls, NY 14303

877-325-5787

www.niagara-usa.com

올랜드 관광

■ 월트 디즈니 월드 (Walt Disney World)

Walt Disney World Resort, Orlando, FL 32830

로스앤젤레스의 디즈니 랜드에 이어 디즈니의 구상으로 올랜드 남쪽 33km 지점에 건설된 새로운 유원지이다. 디즈니 월드는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으로 늘 붐빈다. 특히 크리스마스 전후,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는 몹시 혼잡하다. 반면에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은 1년 중 가장 한산하다. 일주일 중에는 금요일과 일요일이 비교적 사람이 적은 편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현명하다.

호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디즈니월드 테마파크 내에 머물 것인지 바깥에 머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물론 테마파크 내의 호텔이 더 비싼 것은 당연하다.

또 입장권을 미리 구입할 필요도 있다. 하루 단위로 매일 입장권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날보다 더 많은 입장권을 살 것인지 정해야 한다. 디즈니월드 웹사이트(www.disney.com)에서 요금을 살펴보고 필요한 입장권을 구입한다. 성인용 하루 입장권은 105달러다.

Fast Pas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문객에게 인기가 있는 시설에는 사람들이 늘 장사진을 이루기 마련인데, 해당 시설 앞에 설치된 Fast Pass 기계를 이용해서 약속시간이 적힌 Pass를 받아두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Fast Pass 전용입구가 있어 곧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유모차는 현지 조달하는게 바람직하다. 우선 넓은 테마파크를 두루 걸어서 돌아다니려면 양말과 편안한 신발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나 유모차는 가져가지 않는게 좋다. 테마파크 내 대여소에서 약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빌리는게 나으며,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곳곳에 설치되어있는 반환대에 돌려주는 게 훨씬 편하다. 만일 도중에 잃어버렸다고 해도 걱정없다. 영수증만 보여주면 다시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뉴욕 · 뉴저지 한인이 선호하는 골프 코스

1) Bethpage State Park Golf Courses

퍼블릭 90홀, 최정상급 코스 5개가 펼쳐지는 ‘골퍼들의 천국’
99 Quaker Meeting House Rd, Farmingdale, NY 11735)
(516) 249-0700, parks.ny.gov

* 7일 이전부터 사전 등록된 사람에게 한해 예약 가능

2) Blue Heron Pines Golf Club

퍼블릭 36홀, 카지노 관광과 함께 즐기는 아틀랜틱시티의 명문
550 Country Club Dr, Egg Harbor City, NJ 08215)
(609) 965-1800 blueheronpines.com/home

* 10일 이전부터 예약 가능

3) Crystal Springs Golf & Spa Resort

퍼블릭 108홀, 프라이빗 분위기에서 즐기는 유쾌한 라운딩. 6개의 골프 코스(밸리 오웬(Ballyowen), 크리스탈 스프링스(Crystal Springs), 그레이트 고지(Great Gorge), 와일드 터키(Wild Turkey), 블랙베어(Black Bear), 미네랄 골프 클럽(Minerals Golf Club)와 라커룸 시설, 사우나, 연회장, 야외 풀장 등이 있는 클럽 하우스로 구성

105-137 Wheatsworth Rd., Hamburg, NY 07419
(973) 827-5996 www.crystalgolfresort.com/

4) Eisenhower Park Golf Courses

퍼블릭 54홀, 전국에서 가장 봄비는 인기 최고의 골프장
1899 Hempstead Turnpike, East Meadow, NY 11554
(516) 572-0348 www.nassaucountyny.gov/1779/Golf

5) Harbor Links Golf Course

퍼블릭 27홀, 가슴이 활짝 펴지는 링크스, 자연 보호 구역이 OB
1 Fairway Dr, Port Washington, NY 11050
(516) 767-4816 www.harborlinks.com

6) Highpoint Golf Club

퍼블릭 18홀, 반짝이는 2개의 호수, 짙은 숲 속의 '원시 시대'
342 Shore Dr, Montague Township, NJ 07827
(973) 293-0180 www.highpointgolfclub.com

7) Long Island National Golf Club

퍼블릭 18홀, 현대 문명의 힘으로 일궈낸 환상적인 코스
1793 Northville Turnpike, Riverhead, NY 11901
(631) 591-3733 www.linationalgc.com

8) Montauk Downs State Park Golf Course

퍼블릭 18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롱아일랜드의 보석'
50 S Fairview Ave, Montauk, NY 11954
(631) 668-5000 nysparks.com/golf-courses/8/details.aspx
*7일 이전부터 예약 가능

9) New York Country Club

세미프라이빗 18홀, 고국의 향취 물씬 풍기는 락클랜드의 명가
103 Brick Church Rd, Spring Valley, NY 10977
(845) 362-5800 www.nycountryclub.com

10. Patriot Hill Golf Club

퍼블릭 18홀, 동해안 미시령을 연상시키는 특별한 코스
19 Club House Ln, Stony Point, NY 10980
(845) 947-7085 www.patriothillsgolfclub.com/index.php

11) Richter Park Golf Course

퍼블릭 18홀, 짙은 숲 속 호수변에 자리잡은 '고요의 나라'
100 Aunt Hack Rd, Danbury, CT 06811
(203) 792-2550 www.richterpark.com

에티켓과 기본 룰

■ 골프 매너와 에티켓

1) 시간을 준수한다.

골프장에 적어도 티 오프 30분 전에는 미리 나가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레인지 연습, 퍼팅 연습을 하고 티 오프 장소에 나가야 여유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시간에 꼭 맞춰 나가 연습 스윙 한 번 못하고 바로 티샷을 하게 되면 그날의 경기 템포(Tempo)는 하루종일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동반 경기자의 리듬(Rhythm)까지도 망쳐 놓는 누를 범할 수도 있다. 플레이어가 스타트 시간에 늦는 것은 룰 상에서도 2벌타 또는 경기 실격이지만 기본 매너에도 가장 위배되는 것이다. 조금 일찍 티 오프 장소에 나가는 습관을 들이면 그만큼 여유있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2)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 Tee Box)에는 한 사람씩 올라간다.

티잉 그라운드에 한 사람씩만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티잉 그라운드 입구는 골퍼들의 출입이 가장 빈번하고, 따라서 잔디 관리가 가장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이다. 티샷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 사람씩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가야 한다.

둘째, 티잉 그라운드 위에서 서 있는 것은 경기자가 샷을 하는데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며, 특히 플레이어의 뒤편에 서서 볼을 주시하는 행동은 플레이어의 집중을 방해하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3) 플레이어가 어드레스할 때는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골프의 동작 중에서도 플레이어가 가장 신중을 기하는 순간은 어드레스에서부터 테이크백 하는 순간이다. 이때 경기자는 호흡까지 멈추면서 모든 정신을 집중하므로 주변의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플레이어가 어드레스를 준비할 때 말하거나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인 매너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4) 경기 진행은 최대한 빠르게 한다.

골프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경기다. 정식 시합에 나가게 되면 플레이어들이 경기를 마쳐야 할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 또한 플레이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홀 이상 비워두면 경기 실격 되는 규정도 있다. 신속한 행동과 빠른 경기 진행으로 시간을 절약해야만 정작 시간이 필요한 퍼팅 때 그린에서 여유있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5)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걸음을 빨리 하고 샷은 신중하게 한다.
- 자신이 플레이할 클럽을 미리 준비한다.
- 홀 아웃이 끝나면 신속히 다음 홀로 이동한다.
- 다른 사람이 플레이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다음 동작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6) 앞팀이 안전거리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샷을 하지 않는다.

플레이어는 항상 자신의 최대 비거리를 의식해야 하며 앞팀이 안전거리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샷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볼에 직접 맞지 않더라도 뒷 팀에서 친 볼이 날아오면 누구나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공연히 플레이를 서두르다 샷의 리듬을 잃게 되면 오히려 경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7)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연습 스윙을 하지 않는다.

연습 스윙은 절대 사람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면 안 된다. 특히 티잉 구역 주변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인 만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의 스윙 이미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지정된 장소나 사람이 없는 아주 안전한 장소를 택해 주변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돌이나 이물질이 상대의 얼굴로 날아가거나 헤드 가 부러져 날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8) 볼을 찾느라 시간이 걸릴 때는 다음 조를 패스시킨다.

경기를 하다 보면 타구한 볼이 틀림없이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떨어진 것 같은데 볼을 못 찾을 때가 있다. 물론 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 이상 시간이 지체될 때는 뒷 팀을 패스시켜 골프장 전체의 경기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9) 타구한 볼이 위험할 때는 “포어(Fore)”라고 큰 소리로 알려준다.

만일 티샷한 볼이 잘못 맞거나 또는 너무 잘 맞아 앞팀이나 코스 관계자에게 맞을 염려가 있을 때는 “포어 (Fore, 전방에)” 또는 “볼(Ball)”이라는 큰 소리와 함께 볼이 날아가는 방향을 향해 손을 높이 들어 앞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친 볼에 사람이 맞아서 다쳤을 경우 플레이어가 포어(Fore)란 소리를 크게 외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골프장 측에서 지지만, 포어 소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버렸다면 그 치료와 배상의 책임이 플레이어에게 있는 것이 관례다.

10) 손상된 코스는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대로 복원시켜 놓아야 한다

뒷팀이 나와 똑같은 코스 조건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벙커 샷을 하면서 만들어진 발자국이나 페어웨이에서 샷을 할 때 생긴 디봇 자국, 또는 그린 위에 볼이 떨어질 때 생긴 상처는 반드시 원래 상태대로 리페어해 놓아야 한다.

특히 페어웨이에서 떠난 잔디는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발로 두세번 밟아주거나 카트에 딸린 씨가 섞인 모래 등을 가져다 놓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자신이 친 볼이 앞팀에서 만들어 놓은 발자국이나 디봇 자국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한다면 코스를 리페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11) 상대방이 티샷이나 퍼팅할 때는 시야에서 벗어나 주어야 한다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시각이다. 따라서 티샷을 할 때나 퍼팅할 때 전후방에 사람이 서 있으면 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플레이어의 시야에서 벗어나주는 것이 기본 예의다. 아울러 플레이어가 퍼팅할 때는 동반 경기자들의 볼은 그린 위에 놓아두지 않는 것도 기본이다. 하얀 볼이 퍼팅

시야에 들어오면 퍼팅에 집중할 수 없음은 물론, 퍼팅한 볼이 그 볼에 맞으면 벌타가 부과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플레이어가 어드레스할 때 동반 경기자들은 좌우로 빠져 시야에서 벗어나주는 것이 에티켓이다. 또한 그린을 라인업할 때도 항상 동반 경기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 터치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골프 규칙에 의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면 절대 볼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골프 룰에 볼을 움직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이 어느 조항보다도 상세하고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유다. 골퍼들이 한 타를 줄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옆에서 동반 경기자가 터치 플레이하는 것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그 사람은 경쟁 상대에서 제외해 버리게 된다.

볼을 건드리는 것은 습관이다. 습관이 들게 되면 좋은 라이의 볼도 습관적으로 건드리게 된다. 게임이 끝나면 반드시 터치 플레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뒷말이 돌게 된다. 안 좋은 라이의 볼도 막상 쳐보면 좋은 샷으로 연결될 때가 많다. 또 그 샷이 굿샷이 되었을 때는 어느 때보다 큰 성취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13) 그린 위에 깃대나 클럽 등을 올려 놓지 않는다.

홀에서 뽑은 깃대는 반드시 그린 밖에 놓아야 한다. 페어웨이에서 사용한 아이언 클럽도 그린 위에 올려 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골프장에서 이러한 점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골퍼들은 그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아울러 클럽으로 그린을 지탱하면서 서 있는 행동도 그린 보호 차원에서 삼가야 한다. 또한 그린 위에서 신발 자국이 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걸어야 하며 홀에서 깃대를 뽑을 때도 홀의 주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히 뽑아야 한다.

14) 홀 아웃이 끝나면 신속히 그린을 떠나야 한다

뒤틀림이 세컨드 샷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홀 아웃 이후에 연습 퍼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솔직히 이러한 상황에서 연습 퍼팅 한 번 더 했다고 퍼팅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려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홀 아웃이 끝나고 다음 홀로 이동할 때도 이왕이면 잔디가 나쁜 지역을 피해서 이동한다면 당신의 매너는 싱글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 골프의 기본룰

골프는 스스로가 심판이 되는 신사적인 게임이다. 남이 보든 안보든 정확하게 룰을 지켜야 한다. 룰에서 허용하지 않는데 자기에겐 이롭게 하면 안 된다. 반대로 룰에서 허용하는데도 그것을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룰을 잘 알아서 그대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에겐 이롭게 할 줄도 알아야 한다. 골프룰의 기본정신은 첫째로 코스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볼이 놓여진 그 상태로 플레이하라는 것이며, 셋째는 페어플레이를 하라는 것이다.

뉴욕 · 뉴저지 골프용품점

GolfTown
43-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718) 357-2346

Grand Golf Pro Shops Inc
425 Grand Ave #4
Palisades Park, NJ 07650
(201) 944-4938

Best Northern Golf Inc
43-70 162nd St
Queens, NY 11358
(718) 321-1200

New York Golf Center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212) 564-2255

Mizuno & Kimmarc Golf

185 Bridge Plaza N

Fort Lee, NJ 07024

(201) 849-5024

Randalls Island Golf & Entertainment Center

1 Randall's Island

New York, NY 10035

(212) 427-5689

GolfTown

43-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718) 357-2346

Bogota Golf Center

30 Cross St

Bogota, NJ 07603

(201) 489-2400

Alleypond Golf Center

232-01 Northern Blvd

Douglaston, NY 11362

(718) 225-9187

뉴욕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산재해 있다. 이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New York Times 금요일판의 “Weekend” 섹션은 주말의 공연 관련 소식 및 영화 비평 안내 등을 담고 있어서 뉴욕의 주말을 계획하기에 충분하다. New York Times 의 일요일판 “Arts and Leisure” 섹션 역시 문화 가이드로서 훌륭하다. 이밖에도 The New Yorker, New York magazine, Time Out NewYork등을 참조하면 뉴욕의 문화생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레스토랑 이용법

■ 식당 종류

1) 레스토랑

요금과 서비스에 따라 고급, 중급, 일반으로 나눌 수 있다. 디너보다 런치가 더 저렴하며 2~3코스 세트 메뉴인 Prix-fixe Menu를 제공하는 곳들도 종종 있다. 예약은 전화나 대표적인 예약 사이트인 오픈 테이블(www.opentable.com)을 이용하면 된다.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남성은 정장, 여성은 원피스나 이브닝 드레스 차림이 적당하다.

2) 다이너

레스토랑보다 더 서민적인 분위기로 햄버거나 프렌치 프라이, 오믈렛, 프렌치 토스트, 와플, 팬케이크 등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모두 다 있다. 가격도 레스토랑에 비해서는 저렴하며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많다.

3) 델리

조리된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푸드점으로 샌드위치, 수프, 샐러드, 파스타, 초밥 각종 음료 등을 먹을 수 있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4) 패스트푸드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웬디스 등이 있다.

■ 식당 선택 시 참고사항

1) 자가트(ZAGAT)

미식가로 유명했던 자가트 부부가 1979년부터 시작한 요리 평론지로 유럽에서는 미술랭, 미국에서는 자가트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성과 신뢰도가 높다. 레스토랑을 방문했던 고객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요리와 서비스, 인테리어를 30점 만점으로 채점을 매겨 소개하며 웹사이트(www.zagat.com) 운영은 물론 매년 책자도 출판하고 있다.

2) 레스토랑 위크(Restaurant Week)

고급 레스토랑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기간으로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런치 \$20~\$30, 저녁 \$30~\$40로 우아하게 코스요리를 즐길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식당 리스트 확인과 예약은 www.opentable.com에서 가능하다.

■ 식당 이용법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입구에서 코트를 먼저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뉴욕의 모든 레스토랑은 무조건 금연이다. 중간에 필요한 것이 있어 종업원을 부를 때에는 'Excuse me' (익스큐즈 미)라고 한다.

- 1) 예약을 했다면 입구에서 예약자 이름을 확인한 후 자리를 안내 받는다.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안내자가 일행이 몇 명인지, 어떤 자리를 원하는지 물어본다.
- 2) 메뉴판을 받으면 먼저 식전에 마시는 술이나 음료를 주문한다. 보통 칵테일이나 샴페인을 주문하지만 취향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 3)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온다. 전식(애피타이저) 본식(양트레) 후식(디저트)을 각각 하나씩 고르면 되고, 무슨 요리인지 모를 경우 종업원에게 물어보거나 추천받으면 된다. 원하면 전식은 생략하고 본식만 몇 가지 시켜도 되지만, 고급 식당이라면 되도록 세가지 다 고르는 것이 좋다.

- 4) 주문을 모두 받으면 와인이나 음료를 원하는지 물어볼 것이고, 리스트를 보고 고르거나 종업원 혹은 소믈리에의 추천을 받는것도 좋다.
- 5) 요리가 나오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냅킨을 무릎 위에 펼친 다음 맛있게 먹으면 된다.

- 6) 식사를 모두 마치고 종업원에게 계산서(Check)를 달라고 한다. 계산서에는 뉴욕시의 경우 전체 금액의 8.625%의 세금이 더 부가되며, 뉴욕에서 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통 15%~25% 정도 준다.

현금으로 계산 시에는 음식값과 팁을 합해 같이 놓으면 되며, 카드로 계산 시에는 음식값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승인받아 오면 영수증의 Tip또는 Gratuity 칸에 주고 싶은 팁 금액을 적은 뒤 맨 아래칸에 사인을 하면 된다. 그러면 카드사에 음식값과 세금, 팁까지 합쳐서 청구가 된다.

영수증은 가장 뒷면에 있는 Customer Copy 부분을 챙기고, 팁을 현금으로 주고 싶다면 Tip 칸에 반드시 X 표시를 한 후 사인을 하고 따로 팁을 놔두면 된다.

* 레스토랑에 따라 이미 팁이 포함돼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만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트를 맡겼다면 코트를 찾을 때 \$1~2 정도의 팁을 주면 좋다.

• 식재료 단어

갈비 rib	대구 cod	쇠고기 meat
감자 potato	돼지고기 pork	송어 mullet
감자튀김 french fries	등심 sirloin	시금치 spinach
강낭콩 french bean	마늘 garlic	오리 duck
개구리 frog	메추라기 quail	양고기 lamb
거위간 foie gras	무 radish	양배추 cabbage
게 crab	배 pear	연어 salmon
고구마 sweet potato	버섯 mushroom	참치 tuna
국수 noodle	병아리콩 chickpea	토끼고기 hare meat
굴 oyster	살구 apricot	호두 pecan
농어 bass	새우 shrimp / prawn	홍합 mussel
달팽이 escargot	송어 trout	

• 기타

(굽는 정도)	맵다 hot / spicy	식초 vinegar
바삭 well done	시다 sour	빨대 straw
중간보다 더 익힌 medium well	쓰다 bitter	사이다 sprite
중간 medium	짜다 salty	음료 drink
살짝 구운 rare	간장 soy source	종이백 paper bag
느끼하다 oily / greasy	매콤한 소스 chili sauce	콜라 coke
달다 sweet	설탕 sugar	후춧가루 pepper
맛있다 yummy	소금 salt	

유명 맛집 소개

‘음식의 천국’ 뉴욕에서는 고급 레스토랑부터 세계 각국 전통 요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길거리 벤더 음식까지 맛볼 수 있다

KOCHAM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천 맛집 리스트를 소개한다. 선정기준은, 미식가로 유명했던 자가트 부부가 1979년부터 시작한 요리 평론지 ZAGAT, 레스토랑을 다녀온 고객들의 경험으로 평가하는 어플 Yelp 이외에 구글 등 관련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했다.

식당 리스트는 뉴욕과 뉴저지로 나뉘서, 특별한 이벤트나 중요한 모임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맛을 느낄 수 있는 식당들은 Formal 리스트를,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박하고 편안한 식사를 할 경우에는 Casual 리스트를 참고 하기 바란다.

뉴욕

■ Formal

1) 레스토랑

| 한식 |

GAONNURI

1250 Broadway Penthouse
New York, NY 10001
212-971-9045

JUNGSIK

2 Harrison St.
New York, NY 10013
212-219-0900

BANN

350 W 50th St.
New York, NY 10019
212-582-4446

Kang Suh Restaurant

1250 32nd St.
New York, NY 10001
212-564-6845

| 미국식 |

Gramercy Tavern

42 E 20th St.
New York, NY 10003
212-477-0777

Per Se

10 Columbus Circle
New York, NY 10019
212-823-9335

Blue Hill

75 Washington Pl
New York, NY 10011
212-539-1776

| 일식 |

15 East

15 E 15th St.
New York, NY 10003
212-647-0015

MASA

10 Columbus Circle
New York, NY 10019
212-823-9800

EN Japanese Brasserie

435 Hudson St.
New York, NY 10014
212-647-9196

Morimoto

88 10th Ave.
New York, NY 10011
212-989-8883

| 프랑스식 |

Daniel

60 E 65th St.
New York, NY 10065
212-288-0033

Jean-Georges

1 Central Park West
New York, NY 10023
212-299-3900

Bouley

163 Duane St.
New York, NY 10013
212-964-2525

The Modern

9 W 53rd St.
New York, NY 10019
212-333-1220

| 이탈리아식 |

Ai Fiori

400 5th Ave. #2
New York, NY 10018
212-613-8660

Babbo

110 Waverly Pl
New York, NY 10011
212-777-0303

Marea

240 Central Park S

New York, NY 10019
212-582-5100

| 아시아 |

Spice Market

406 W 13th St.
New York, NY 10014
212-675-2322

Buddakan

75 Ninth Ave.
New York, NY 10011

Momofuku Ssam Bar

207 2nd Ave.
New York, NY 10003
212-254-3500

2) 카페 / 바

Chika Licious Dessert Bar

203 E 10th St.
New York, NY 10009
212-475-0929

HANJAN

36 W 26th St.
New York, NY 10010
212-206-7226

BARN JOO

893 Broadway
New York, NY 10003
646-398-9663

■ Casual

1) 레스토랑

| 한식 |

HANGAWI

12 E 32nd St.
New York, NY 10016
212-213-0077

Don's Bogam BBQ

17 E 32nd St.
New York, NY 10016
212-683-2200

Muk Eun Ji

34 W 32nd St.
New York, NY 10001
212-736-0099

New Wonjo

23 W 32nd St.
New York, NY 10001
212-695-5815

Cho Dang Gol

55 W 35th St.
New York, NY 10001
212-695-8222

The Kunjip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212-216-9487

Han Bat

53 W 35th St.
New York, NY 10001
212-629-5588

Hyo Dong Gak

5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212-695-6674

Jongro BBQ

2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212-473-2233

Baekjeong

1 E 32nd St.
New York, NY 10016
212-966-9839

Gobawoo Kalbi

4 Route 303
Tappan, NY 10983
845-359-1100

DANJI

346 W 52nd St.
New York, NY 10019
212-586-2880

OJI

10003, 119 1st Avenue
New York, NY 10013
646-767-9050

KORI

253 Church St.
New York, NY 10013
212-334-0908

| 미국식 |

Union Square Cafe

21 E 16th St.
New York, NY 10003
212-243-4020

Le Bernardin

155 W 51st.
New York, NY 10019
212-554-1515

Delmonico's

56 Beaver St.
New York, NY 10004
212-509-1144

| 일식 |

NOBU

105 Hudson St.
New York, NY 10013
212-219-0500

Takashi

456 Hudson St.
New York, NY 10014
212-414-2929

Sakagura

211 E 43rd St.
New York, NY 10017
212-953-7253

| 프랑스식 |

Balthazar

80 Spring St.
New York, NY 10012
212-965-1414

DBGB Kitchen and Bar

299 Bowery
New York, NY 10003
212-933-5300

Artisanal Fromagerie & Bistro

2 Park Ave.
New York, NY 10016
212-725-8585

| 이탈리아식 |

Locanda Verde

377 Greenwich St.
New York, NY 10013
212-925-3797

Carmine's

200 W 44th St.
New York, NY 10036
212-221-3800

Frankies Spuntino

570 Hudson St.

New York, NY 10014
212-924-0818
| 아시아식 |

Macao Trading Co
311 Church St.
New York, NY 10013
212-431-8750

Up Thai
1411 2nd Ave.
New York, NY 10021
212-256-1188

Love Mamak
174 2nd Ave.
New York, NY 10003
212-254-5370

2) 카페 / 바

Spot Dessert Bar
13 St Marks Pl
New York, NY 10003
212-677-5670

Take 31
15 E 31st. ST.
New York, NY 10016
646-398-9990

뉴저지

■ Formal

1) 레스토랑
| 한식 |

So Kong Dong
130 Main St.
Fort Lee, NJ 07024
201-585-1122

Gam Mee Ok
485 Main St.
Fort Lee, NJ 07024
201-242-1333

Bada Story
199 Abbott Blvd.
Fort Lee, NJ 07024
201-886-3888

Tang Maru
500 10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201-482-8744

Prime & Beyond
501 Main St.
Fort Lee, NJ 07024
201-461-0033

Dong Bang Grill
1616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201-242-4485

Poong Lim
2053 Lemoine Ave.
Fort Lee, NJ 07024
201-944-8699

| 미국식 |

Giulia's Kitchen
696 Anderson Ave.
Cliffside Park, NJ 07010
201-945-1680

Chakra Restaurant
144 NJ-4,
Paramus, NJ 07652
201-556-1530

Chart House
1700 Harbor Blvd,
Weehawken, NJ 07086
201-348-6628

HAVEN Riverfront Restaurant
2 Main St,
Edgewater, NJ 07020
201-943-1900

| 일식 |

Asahi Japanese Restaurant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201-944-5113

Hiura Restaurant
400B Main St.

Fort Lee, NJ 07024
201-346-0110

Yamagata
1636 Palisades Ave.
Fort Lee, NJ 07024
201-585-0469

Umeya Restaurant
156 Peirmont Rd.
Cresskil, NJ 07626
201-816-0511

| 프랑스식 |

Latour
6 E Ridgewood Ave,
Ridgewood, NJ 07450
201-445-5056

| 이탈리아식 |

Fontana Di Trevi Restaurant
248 Fort Lee Rd
• eonia, NJ 07605
201-242-9040

In Napoli
116 Main St.
Fort Lee, NJ 07024
201-947-2500

Dante's Place Restaurant & Pizza
373 Broad Ave.
Leonia, NJ 07605
201-592-9071

Paisanos Risrorante
132 Park Ave.,
Rutherford, NJ 07070
201-935-5755

| 그리스식 |

Axia Taverna
18 Piermont Rd,
Tenafly, NJ 07670
201-569-5999

2) 카페 / 바

Raku Izakaya
209 Main St.
Fort Lee, NJ 07024
201-585-0707

Sean+June Bar & Kitchen
565 Gorge Rd.
Cliffside Park, NJ 07010
201-840-4009

Jubilee Chocolate Cafe
32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201-944-5150

■ Casual

1) 레스토랑

| 한식 |

BCD Tofu House
1640 Schlosser St. Unit C1
Fort Lee, NJ 07024
201-944-2340

Kaya Garden
450 Broad Ave.
Leonia, NJ 07605
201-461-7525

Moobongri
10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201-945-9114

Bang Ga Nae
320 Bergen Blvd.
Fairview, NJ 07022
201-313-5100

Spring
221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201-767-8830

So Moon Nan Jip
23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201-944-3998

Picnic Garden

150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816-9300

The Tea Bar
1636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201-44-3102

Myung Dong Noodle House
2013 Lemoine Ave.
Fort Lee, NJ 07024
201-592-6900

Chung Dam Dong Restaurant
11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201-313-8900

You Chun
135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201-363-1950

Son Ja Jang
23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201-944-7777

| 미국식 |

Eggy 8 Cafe
138 Main St.
Fort Lee, NJ 07024
201-947-6699

Hiram's Roadstand
1345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201-592-9602

| 일식 |

Menya Sandaime
1638 Parker Ave.
Fort Lee, NJ 07024
201-482-4141

PJ Sushi
2372 Lemoine Ave.
Fort Lee, NJ 07024
201-315-1734

Minado Restaurant
1 Valley Rd,
• ittle Ferry, NJ 07643
201-931-1522

| 이탈리아식 |

The Big Red Tomato
1205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201-224-6500

Franco's Metro Restaurant, Bar & Pizza
Plaza West Shopping Ctr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201-461-6651

Trattoria La Sorrentina
7831 Bergenline Ave,
North Bergen, NJ 07047
201-869-8100

| 아시아식 |

House of Malaysia
242 Main St.
Fort Lee, NJ 07024
201-363-8833

Boiling Pot
124 Main St.
Fort Lee, NJ 07024
201-461-0444

Bistro Du Saigon
168 Main St.
Fort Lee, NJ 07024
201-592-0100

Saigon Kitchen
2024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201-592-8890

Simply Vietnamese
1 Highwood Ave.
Tenafly, NJ 07670

2) 카페 / 바

Cafe Mocha
125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201-947-8992

Cafe Angelique
1 Piermont Rd,
Tenafly, NJ 07670
201-541-1010

Patisserie Florentine
10 S Dean St.
Englewood, NJ 07631
201-408-4890

C U Latte
8 Union Ave.
Cresskill, NJ 07626
201-266-8404

브로드웨이 뮤지컬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포함해서 각종 공연 관련 티켓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으며, 극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타임스 스퀘어에 있는 TKTS 부스(1564 Broadway)에서는 당일 공연 티켓을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

또한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lottery 티켓이나 rush 티켓을 구매하여 보는 것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두 티켓은 구매 가능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시간을 참조하여 극장에 직접 가 구매해야한다. www.broadway.com, www.nytix.com 등을 통해 가능한 공연 리스트와 일정을 검색할 수 있다.

최근에 유명한 쇼는 예로 라이온킹(The Lion King), 맘마미아(Mamma Mia), 위키드(Wicked),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시카고(Chicago), 빌리 엘리어트(Billy Elliot) 등을 들 수 있다.

뉴욕 주요 공연 단체

■ GRAND OPERA

1) Metropolitan Opera

30 Lincoln Center Plaza, New York, NY 10023
212-362-6000
www.metopera.org

2) New York City Opera

20 Lincoln Center Plaza, New York, NY 10023
212-870-5570
www.nycopera.com

■ CLASSICAL MUSIC

1) New York Philharmonic

Avery Fisher Hall, 10 Lincoln Center Plaza, New York, NY 10023

212-875-5656

www.nyphilharmonic.org

2) Carnegie Hall

881 7th Ave, New York, NY 10019

212-247-7800

www.carnegiehall.org

■ DANCE

1) American Ballet Theater

890 Broadway, 3rd Fl. New York, NY 10003

212-477-3030

www.abt.org

2) New York City Ballet

David H. Koch Theater, 20 Lincoln Center, New York, NY 10023

212-496-0600

www.nycballet.com

프로 스포츠팀

■ 축구

1) New York Red Bulls

Red Bull Arena

600 Cape may St, Harrison, NJ 07029

877-727-6223

www.newyorkredbulls.com

2) New York City FC

600 Third Avenue, 30th Floor, New York NY 10016

212-738-5900

www.nycfc.com

■ 야구

1) New York Yankees (American League)

Yankee Stadium

1 E 161 st St., Bronx, NY 10451

718-293-6000

www.yankees.com

2) New York Mets (National League)

12301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68

718-507-8499

www.mets.com

■ 농구

1) Brooklyn Nets

Barclays Center
620 Atlantic Ave, Brooklyn, NY 11217
917-618-6100
www.nba.com/nets/

2) New York Knicks

Madison Square Garden
4 Pennsylvania Plaza, New York, NY 10001
212-465-6741
www.nba.com/knicks

3) New York Liberty(WNBA)

Madison Square Garden
4 Pennsylvania Plaza, New York, NY 10001
212-465-6741
liberty.wnba.com

■ 미식 축구

1) New York Giants

1 MetLife Stadium Dr, East Rutherford, NJ 07073
201-559-1515
www.giants.com

2) New York Jets

1 MetLife Stadium Dr, East Rutherford, NJ 07073
201-559-1515
www.newyorkjets.com

■ 아이스 하키

1) New Jersey Devils

Prudential Center

25 Lafayette St., Newark, NJ 07102

973-757-6100

devils.nhl.com

2) New York Islanders

Barclays Center

620 Atlantic Ave, Brooklyn, NY 11217

917-618-6100

islanders.nhl.com

3) New York Rangers

Madison Square Garden

33rd Street bet. 7th&8thAvenues

212-465-6000

rangers.nhl.com

뉴저지 문화센터

1) Korean Community Center (KCC)

100 Grove St, Tenafly, NJ 07670

201-541-1200

www.kcc-usa.org

2) Tenafly Community Center

Tenafly Borough Hall, 100 Riveredge Road, Tenafly, NJ 07670

201-568-6100

www.tenaflynj.org

3) Ridgewood Community Center

Village Hall, 131 North Maple Avenue, Ridgewood

201-670-5560

www.ridgewoodnj.net

4) Cresskill Community Center

100 Third St., Cresskill, NJ 07626

201-816-8066

www.cresskillboro.com

5) Glen Allen Cultural Arts Center

2880 Mountain Road, Glen Allen, VA 23060

804-261-2787

www.artsglenallen.com

6) Hackensack Cultural Arts Center

39 Broadway, Hackensack, NJ

201-487-5518

7) Allendale Community Center

85 Harreton Road, Allendale, NJ 07401

201-825-0660

미국 생활에 유용한 앱(APP)



■ Today TIX

브로드웨이 뮤지컬, 연극을 예매할 수 있다.



■ Open table

레스토랑, 카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예약이 가능하다.



■ Yelp

레스토랑, 카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비자법과 영주권 취득

■ 이민/비자법 가이드

Q 어떤 비자로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지?

A 미국에 정착 하는 데 필요한 합법 장기 체류 신분과 영주권 취득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시기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01년 이전에 입국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았던 이전과는 달리 2001년 이후부터 2008년 이전에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의 정보로는 단순 방문 (B-1/B-2) 비자로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장기 체류하는 신분으로 변경하고 영주권 취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작된 ESTA 전자여권 무비자 (“VWP”)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미국입국 절차는 아주 간단히 90일간 입국이 가능 하지만, VWP무비자로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비자 연장을 하거나 다른 장기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장기체류 또는 영주권 취득을 도모하려면 무비자 입국이 아닌 정식 장기 체류 비자를 주한 미대사관에서 취득 하여야만 90일 이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려면, 이전 방식의 방문비자를 신청 해서 B-1/B-2 신분으로 입국을 하거나, 또는 유학 비자 등 다른 장기 체류 비자를 취득한 이후 미국 입국을 하여야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한 미대사관에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사유가 왜 단순방문 목적인 90일 무비자 기간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꼭 방문비자가 필요한지를 주한 미대사관에 인터뷰하는 영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비자 신청 취지가 미국에 들어와 신분 변경목적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사관의 비자 심사가 당연히 더 까다로워서, 이제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방문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를 주한 미대사관에 신청하였다가 비자발급이 거절되면, 그 이후에는 무비자 입국 또한 금지되게 됨으로써, 미국입국뿐만 아니라 입국 이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계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 방문 이외,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비자 종류로는 취업 (E-1, E-2, E-3, H-1B, H-2B, H-3, L-1A, L-1B, O-1, P-1, P-2, P-3, Q-1, etc.) 또는 학업 (F-1, M-1, J-1, etc.) 또는 사업 목적 (E-1, E-2) 등의 장기 체류 비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비이민 (Nonimmigrant Visa)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관 및 가족

- A-1 Head of state and immediate family, prime minister and immediate family, government minister, ambassador, career diplomat or consular officer, or immediate family
- A-2 Minister of state, other foreign government official or employee, or immediate family
- A-3 Attendant, servant, or personal employee of A-1 or A-2, and immediate family

단순 방문자 비자

- B-1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 domestic employees, academics, researchers and students
- B-2 Temporary visitor for holiday, tourism, medical treatment
- B1/B2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 & pleasure

미국 경유 비자

- C-1 Person in transit
- C-2 Person in transit to United Nations Headquarters district under Section 11 (3), (4), or (5) of the Headquarters Agreement
- C-3 Foreign government official, immediate family, attendant, servant or personal employee, in transit

승무원 또는 선원 비자

- D Crewmember (sea or air)

무역인 또는 소액 투자자 및 가족

E-1 Treaty trader, spouse and children

E-2 Treaty investor, spouse and children

E-3 Treaty traders and investors: Australian Free Trade Agreement

E-3D Spouse or child of E3

E-3R Returning E3

유학생 및 가족

F-1 Student (academic or language training program)

F-2 Spouse or child of F-1

F-3 Canadian or Mexican national commuter student in an academic or language training program

국제기구 대표 또는 직원 및 가족

G-1 Principal resident representative of recognized foreign member governmen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ff, and immediate family

G-2 Other representative of recognized foreign member governmen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mmediate family

G-3 Representative of nonrecognized or nonmember foreign government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mmediate family

G-4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ficer or employee, and immediate family

G-5 Attendant, servant, or personal employee of G-1 through G-4, and immediate family

괌 (GUAM) 단순 방문 비자

GB Temporary visitors: for business, visa waiver, Guam

GT Temporary visitors: for pleasure, visa waiver, Guam

전문직 (H-1B) 또는 임시 취업자(H-2B) 또는 취업 연수 (H-3) 비자 소지자 및 가족 (H-4)

H-1B Alien in a specialty occupation (profession)

H1B1 Chilean or Singaporean national to work in a specialty occupation

H-2A Temporary worker performing agricultural services un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H-2B Temporary worker performing other services un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H-3 Temporary workers and trainees: industrial trainees

H-4 Temporary workers and trainees: spouses and children of H-1, H-2, and H-3 workers

기자 및 특파원

I Representative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spouse and children

교환 교수 및 교환 방문자 및 가족

J-1 Exchange visitor

J-2 Spouse or child of exchange visitor

시민권자의 약혼자 및 기혼자 가족

K-1 Fiance(e) of U.S. citizen

K-2 Child of fiance(e) of U.S. citizen

K-3 Spouse of U.S. citizen awaiting availability of immigrant visa

K-4 Child of K-3

다국적 기업 주재원 및 가족

- -1A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managerial)

- -1B Intracompany transferee (specialized personnel)

- -2 Spouse or child of intracompany transferee

직업수련 학생 및 가족

M-1 Vocational student or other nonacademic student

M-2 Spouse or child of M-1

M-3 Border commuter student (vocational or nonacademic)[152]

특별 이민자의 가족

N-8 Parent of SK-3 special immigrant

N-9 Child of N-8 or of SK-1, SK-2 or SK-4 special immigrant

NATO국제기구 주재원 및 가족

NATO-1 Principal permanent representative of member state to NATO (including any of its subsidiary bodies) resident in the U.S. and resident members of official staff; Secretary General, Assistant Secretaries General, and Executive Secretary of NATO; other permanent NATO officials of similar rank, and members of immediate family

NATO-2 Other representatives of member states to NATO (including any of its subsidiary bod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advisers, and technical experts of delegations, and members of immediate family; dependents of members of a force enter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NATO Status-of-Forces Agreement o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the “Protocol on the Status of International Military Headquarters”; members of such a force if issued visas

NATO-3 Official clerical staff accompanying a representative of member state to NATO (including any of its subsidiary bodies), and members of immediate family

NATO-4 Officials of NATO (other than those classifiable as NATO-1), and members of immediate family

NATO-5 Experts, other than officials classifiable as NATO-4, employed in missions on behalf of NATO, and their dependents

NATO-6 Members of a civilian component accompanying a force

enter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NATO Status-of-Forces Agreement; members of a civilian component attached to or employed by an Allied Headquarters under the “Protocol on the Status of International Military Headquarters” set up pursuant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and their dependents

NATO-7 Attendant, servant, or personal employee of NATO-1 through NATO-6 classes, and immediate family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에 특수 재능을 소유한 특출자 및 동반 근로자 및 동반 가족

O-1 Person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O-2 Person accompanying and assisting in the artistic or athletic performance by O-1

O-3 Spouse or child of O-1 or O-2

국제적인 운동 또는 예능 단체(P-1)/상화 교환 프로그램 의 예술가 (P-2) 문화적으로 독특한 예능인 (P-3) 및 가족

P-1 Internationally recognized athlete or member of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entertainment group

P-2 Artist or entertainer in a reciprocal exchange program

P-3 Artist or entertainer in a culturally unique program

P-4 Spouse or child of P-1, P-2, or P-3

전통 문화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참여자

Q-1 Participant in a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gram

종교 종사자 및 가족

R-1 Person in a religious occupation

R-2 Spouse or child of R-1

국제 테러단 또는 형사법 처벌 협조자 및 가족

S-5 Informant possessing information on criminal activity

S-6 Informant possessing information on terrorism

S-7 Spouse, married or unmarried son or daughter, or parent of S-5
or S-6

보호자 없는 위탁아동, 부모없는 미성년 서류미비자 특별이민 비자

SIJS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Qualifying children present in the U.S. who are declared dependents of a juvenile court and who would be harmed if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y

북미 자유무역 조약국(캐나다, 멕시코) 전문취업자 및 가족

TN NAFTA professional

TD Spouse or child of TN

인신매매 피해자 및 가족

T-1 Victim of a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T-2 Spouse of T-1

T-3 Child of T-1

T-4 Parent of T-1 under 21 years of age

T-5 Under-18 unmarried sibling of T-1

범죄 피해자 및 가족

U-1 Victim of criminal activity

U-2 Spouse of U-1

U-3 Child of U-1

U-4 Parent of U-1 under 21 years of age

U-5 Under-18 unmarried sibling of U-1 under 21 at time of filing

2000년 12월 21일 이전 가족 초청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V-1* Spouse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awaiting availability of

immigrant visa

V-2* Child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awaiting availability of immigrant visa

V-3* Derivative child of V-1 and V-2

전자 여권 무비자 (ESTA) 로 입국하는 단순 방문자

WB Temporary visitors: visa waiver, business

WT Temporary visitors: visa waiver, pleasure

위와 같은 다양한 비 이민 비자 종류 중 본인이 신청하여 주한미대사관에서 취득비자 종류가, 본인의 입국 심사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입국 하는 비자 종류의 목적과 본인의 실질적인 입국 목적과 일치함을 미국 이민관 (CBP)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심사 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입국 심사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영주권은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A 설사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5년 에서 10년 이상) 자유롭게 생활하며 특히 미국에서 자녀교육을 계획하려면 영주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 이민 (Family Based), 둘째는 취업 이민(Employment Based), 셋째는 투자 이민 (Immigrant Investor) 입니다.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내역에서도 각 순위가 세분화되며, 각 순위에 따라서 신청자격요건이나 이민수속 절차 또는 영주권 취득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 또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간략히, 이민비자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 이민, etc.) 의 세부적인 순위와 이민법상 각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혼자녀와 시민권자의 부모 (무순위)

IMMIGRANTS Immediate Relatives (Symbol Class Section of Law)

- IR1 Spouse of U.S. Citizen
- IR2 Child of U.S. Citizen
- IR3 Orphan Adopted Abroad by U.S. Citizen
- IR4 Orphan to be Adopted In the U.S. by U.S. Citizen
- IR5 Parent of U.S. Citizen at Least 21 Years of Age
- CR1 Spouse of U.S. Citizen (Conditional Status)
- CR2 Child of U.S. Citizen (Conditional Status)
- IW2 Child of IW1 201(b)
- IB1 Self-petition Spouse of U.S. Citizen 204(a)(1)(A)(iii)
- IB2 Self-petition child of U.S. Citizen 204(a)(1)(A)(iv)
- IB3 Child of IB1 204(a)(1)(A)(iii)
- VI5 Parent of U.S. Citizen Who Acquired Permanent Resident Status Under the Virgin Islands Nonmigrant Alien Adjustment Act (Pub. L. 97-271). 201(b) & §2 of the Virgin Islands Nonimmigrant Alien Adjustment Act

Vietnam Immigrants

- AM1 Vietnam Amerasian Principal 584(b)(1)(A),
- AM2 Spouse or Child of AM1 584(b)(1)(B), and
- AM3 Natural Mother of Unmarried AM1 (Spouse or Child of Such Mother) or Person Who has Special Immigrants
- SB1 Returning Resident 101(a)(27)(A)
- SC1 Person Who Lost U.S. Citizenship by Marriage 101(a)(27)(B) & 324(a)
- SC2 Person Who Lost U.S. Citizenship by Serving in Foreign Armed Forces 101(a)(27)(B) & 327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및 그 자녀의 가족 (가족이민 FB1순위)
 FAMII Y-SPONSORED PREFERENCES: Family 1st Preference (Symbol Class Section of Law)

- F11 Unmarried Son or Daughter of U.S. Citizen 203(a)(1)

- F12 Child of F11 203(d)
- B11 Self-petition Unmarried Son or Daughter of U.S. Citizen
204(a)(1)(A)(iv) & 203(a)(1)
- B12 Child of B11 203(d)

가족이민: 영주권 자의 배우자, 미혼 21세 미만 자녀 및 그 배우자/자녀의 가족
(가족 이민 FB 2A순위)(Symbol Class Section of Law)

Family 2nd Preference (Subject To Country Limitations)

- F21 Spouse of Alien Resident 203(a)(2)(A)
- F22 Child of Alien Resident 203(a)(2)(A)
- F23 Child of F21 or F22 203(d)
- C21 Spouse of Alien Resident (Conditional) 203(a)(2)(A) & 216
- C22 Child of Alien Resident (Conditional) 203(a)(2)(A) & 216
- C23 Child of C21 or C22 (Conditional) 203(d) & 216
- B21 Self-petition Spouse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204(a)(1)(B)(ii)
- B22 Self-petition Child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204(a)(1)(B)(iii)
- B23 Child of B21 or B22 204(a)(1)(B)(ii)
- FX1 Spouse of Alien Resident 202(a)(4)(A) & 203(a)(2)(A)
- FX2 Child of Alien Resident 202(a)(4)(A) & 203(a)(2)(A)
- FX3 Child of FX1 and FX2 202(a)(4)(A) & 203(d)
- CX1 Spouse of Alien Resident (Conditional) 202(a)(4)(A) , 203(a)(2)(A)
& 216
- CX2 Child of Alien Resident (Conditional) 202(a)(4)(A) , 203(a)(2)(A)
& 216
- CX3 Child of CX1 & CX2 (Conditional) 202(a)(4)(A) & 203(d)& 216
- BX1 Self-petition Spouse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204(a)(1)(B)(ii)
- BX2 Self-petition Child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204(a)(1)(B)(iii)
- BX3 Child of BX1 or BX2 203(d)

가족이민: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및 그 자녀의 가족 (가족 이민 FB 2A순위)(Symbol Class Section of Law)

- F24 Unmarried Son or Daughter of Alien Resident 203(a)(2)(B)
- F25 Child of F24 203(d)
- B24 Self-petition Unmarried Son or Daughter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204(a)(1)(B)(iii)
- B25 Child of B24 203(d)
- C24 Unmarried Son or Daughter of Alien Resident (Conditional) 203(a)(2)(B) & 216
- C25 Child of F24 (Conditional) 203(d) & 216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가족 (가족 이민 FB 3순위)

Family 3rd Preference (Symbol Class Section of Law)

- F31 Married Son or Daughter of U.S. Citizen 203(a)(3)
- F32 Spouse of F31 203(d)
- F33 Child of F31 203(d)
- C31 Married Son or Daughter of U.S. Citizen (Conditional) 203(a)(3) & 216
- C32 Spouse of C31 (Conditional) 203(d) & 216
- C33 Child of C31 (Conditional) 203(d) & 216
- B31 Self-petition Married Son or Daughter of U.S. Citizen 204(a)(1)(A)(iv) & 203(a)(3)
- B32 Spouse of B31 203(d)
- B33 Child of B31 203(d)

가족이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및 가족 (가족 이민 FB 4순위)

Family 4th Preference (Symbol Class Section of Law)

- F41 Brother or Sister of U.S. Citizen 203(a)(4)
- F42 Spouse of F41 203(d)
- F43 Child of F41 203(d)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의 첫째 기준은 초청인 (Sponsor ? 가족이민 이거나 취업이민 이거?) 이 필요합니다. 취업이민인 경우, 어떻게 보면 이 초청인은 지인을 통하여 찾거나 또는 취업비자 취득 이후 많은 기간을 취업비자 소지자로 근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이 되는 취업 이민 초청인을 실질적으로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실질적인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신청인이 영주권 신청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 취득 이후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인이 미국에서 어떤 비이민 비자로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거나, 또는 미국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거나 오는 취업 이민 영주권 취득 시간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나 고용주의 자격 요건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는 사실입니다. 신청인의 자격 요건으로는 영주권 취득을 희망 하는 신청인 이 그 초청회사에서 근무를 영주권 취득 이전에 하고 있거나 또는 없거나 수속기간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주재원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이 취업이민 1순위로써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분이 현재 신분은 주재원 비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취업 이민 1순위, the Priority Worker category, 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면,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비자, 또는 미국에 있지 않고 해외 거주를 하더라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자 종류와는 무관하게, 취업이민1순위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 특출인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ies: EB1-1); 특출한 기술을 지닌 정규 교수나 정규 연구인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EB1-2); 다국적 중역 주재원 비자 소유자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EB1-3)

EMPI OYMENT-BASED PREFERENCES (Employment 1st Preference (Priority Workers))

Symbol Class Section of Law

E11 Alien with Extraordinary Ability 203(b)(1)(A)

- E12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203(b)(1)(B)
- E13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203(b)(1)(C)
- E14 Spouse of E11, E12, or E13 203(d)
- E15 Child of E11, E12, or E13 203(d)

취업 이민 2순위: 대학원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인 또는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전문경력 소유자 또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미국취업이 인가되는 특출인 (Members of Professions Holding Advance Degrees or Workers of Exceptional Ability)

Employment 2nd Preference (Professional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Symbol Class Section of Law

- E21 Professional Holding Advanced Degree or of Exceptional Ability 203(b)(2)
- E22 Spouse of E21 203(d)
- E23 Child of E21 203(d)

취업 이민 3순위: 4년제 학사학위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인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기술직(Skilled Worker Category) 또는 비숙련직종(EW: Unskilled Worker)

Employment 3rd Preference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Symbol Class Section of Law

- E31 Skilled Worker 203(b)(3)(A)(i)
- E32 Professional Holding Baccalaureate Degree 203(b)(3)(A)(ii)
- E34 Spouse of E31 or E32 203(d)
- E35 Child of E31 or E32 203(d)
- EW3 Other Worker (Subgroup Numerical Limit) 203(b)(3)(A)(iii)
- EW4 Spouse of EW3 203(d)
- EW5 Child of EW3 203(d)

종교 이민: 취업 이민 4 순위: (Religious Worker Category)

Employment 4th Preference (Certain Special Immigrants) Symbol Class
Section of Law

- BC1 Broadcaster in the U.S. employed by the International Broadcasting Bureau of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or a grantee of such organization 101(a)(27)(M)
- BC2 Accompanying spouse of a BC1 101(a)(27)(M)
- BC3 Accompanying child of a BC1 101(a)(27)(M)
- SD1 Minister of Religion 101(a)(27)(C) & 203(b)(4)
- SD2 Spouse of SD1 101(a)(27)(C) & 203(b)(4)
- SD3 Child of SD1 101(a)(27)(C) & 203(b)(4)
- SE1 Certain Employees or Former Employees of the U.S. Government Abroad 101(a)(27)(D)
- SE2 Spouse of SE1 101(a)(27)(D)
- SE3 Child of SE1 101(a)(27)(D)
- SEH Employee of the U.S. Mission in Hong Kong or Immediate Family 101(a)(27)(D) Section 152 of the Immigration Act of 1990
- SF1 Certain Former Employees of the Panama Canal Company or Canal Zone Government 101(a)(27) (E)
- SF2 Spouse or Child of SF1 101(a)(27) (E)
- SG1 Certain Former Employees of the U.S. Government in the Panama Canal Zone 101(a)(27)(F)
- SG2 Spouse or Child of SG1 101(a)(27)(F)
- SH1 Certain Former Employees of the Panama Canal Company or Canal Zone Government on April 1, 1979 101(a)(27)(G)
- SH2 Spouse or Child of SH1 101(a)(27)(G)
- SJ1 Certain Foreign Medical Graduates (Adjustments Only) 101(a)(27)(H)
- SJ2 Accompanying Spouse or Child of SJ1 101(a)(27)(H)
- SK1 Certain Retir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Employees 101(a)(27)(I)(iii)
- SK2 Spouse of SK1 101(a)(27)(I)(iv)

- SK3 Certain Unmarried Son or Daught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Employee 101(a)(27)(I)(i)
- SK4 Certain Surviving Spouses of Deceas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Employee 101(a)(27)(I)(ii)
- SI 1 Juvenile Court Dependent 101(a)(27)(J)
- SM1 Alien Recrui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Who Has Served or is Enlisted to Serve in the U.S. Armed Forces for 12 Years (Became Eligible After the Date of Enactment) 101(a)(27)(K)
- SM2 Spouse of SM1 101(a)(27)(K)
- SM3 Child of SM1 101(a)(27)(K)
- SM4 Alien Recrui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Who Has Served or is Enlisted to Serve in the U.S. Armed Forces for 12 Years (Became Eligible As of the Date of Enactment) 101(a)(27)(K)
- SM5 Spouse or Child of SM4 101(a)(27)(K)
- SN1 Certain retired NATO 6 civilians 101(a)(27)(I)
- SN2 Spouse of an immigrant classified SN1 101(a)(27)(I)
- SN3 Certain unmarried sons or daughters of NATO 6 civilian employees. 101(a)(27)(I)
- SN4 Certain surviving spouses of deceased NATO-6 civilian employees. 101(a)(27)(I)
- SR1 Certain Religious Workers 101(a)(27)(C)(ii) (II)&(III)
- SR2 Spouse of SR1 101(a)(27)(C)(ii) (II)&(III)
- SR3 Child of SR1 101(a)(27)(C)(ii) (II)&(III)

투자이민: 취업 이민 5 순위: (EB-5 Immigrant Investor Category)

Employment 5th Preference (Employment Creation) (Symbol Class Section of Law)

- C51 Employment Creation OUTSIDE Targeted Area 203(b)(5)(A)
- C52 Spouse of C51 203(d)
- C53 Child of C51 203(d)
- T51 Employment Creation IN Targeted Rural/High Unemployment Area 203(b)(5)(B)

- T52 Spouse of T51 203(d)
- T53 Child of T51 203(d)
- R51 Investor Pilot Program, OUTSIDE Targeted Area 203(b)(5) & §610 of the
- R52 Spouse of R51 Departments of Commerce, Justice, R53 Child of R51 & State, the Judiciary &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1993 (P.L . 102-395)
- I51 Investor Pilot Program IN Targeted Area
- I52 Spouse of I51
- I53 Child of I51

현행 이민법규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려면, 영주권 신청(I-485 adjustment application) 당시, 어떤 비자 종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보다는, 어떤 목적의 비자 종류와는 상관 없이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하고 있는 모든 영주신청자 의 마지막 단계는 I-485 (Adjustment of Status) 절차입니다. 이 adjustment of Status I-485 절차는 이미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영주권신청자 들이 본국으로 다시 입국 후 이민신청을 해야 할 때 단계를 만약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 입니다.

영주권 취득단계에서는 가족단위로 주신청인의 자격요건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영주권 취득 이후 영주권 포기 기준은 가족들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포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가족들은 미국에서 교육이나 거주 기준으로 영주권을 보유하고더라도, 본인은 미국 이외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취업 기회 (professional opportunities) 또는 다른 사유로서 당시 영주권 취득 상황과는 달리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영구적인 거주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을 포기하려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A 만약 영주권 포기 당시 “출국세” 의 이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일반적으로, (각개개인의 상황은 충분히 틀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이후 8년 이내에 영주권을 포기하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할 것이 현재 미국과 국제적인 세법 규정의 현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정부가 2008 년 “HEART” Act를 입법하기 이전에도 유사한 이슈가 있었으나, 한미 조세조약의 “Tie Breaker” Rule 에 의하여 영주권 취득이전의 기간이 미국의 resident (거주자) 신분이었음을 입증 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Expatriation Rule (출국세) 법규의 Covered Expatriate 의 법규에 해당 되지 않으려면 영주권 취득 이후 8년 이내에 영주권 포기를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의 법규정 해석으로는 예상합니다.

■ Helpful Links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문 및 법적 신분과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의 정보는 아래와 같은 링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 (USCIS) www.uscis.gov

사회보장국 (SSA) www.socialsecurity.gov 또는 www.ssa.gov

미국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EEOC): www.eeoc.gov

주택도시개발부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www.hud.gov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선발징병제 (Selective Service System) www.sss.gov

보건복지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www.hhs.gov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자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비자법과 영주권 취득관련 감수: 김수지 변호사(Susie Kim, Partner)
SMITH, GAMBRELL & RUSSELL, LLP
212-907-9700

미국 생활법률 상식

주재원 생활을 하다 보면 미국이라는 이질적인 환경에서 주재원과 가족이 누구나 흔히 겪는 몇 가지 공통 관심사가 있다. 주거지와 임대계약, 자동차 사고 및 보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관련 법률 상식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훨씬 수월하다. 아래는 뉴욕과 뉴저지 중심의 법률 상식들이다.

■ 주거지 임대

1) 임대 계약의 종류

미국은 모든 부동산 임대가 사글세 제도이다. 전세의 개념은 없다. 임대 계약은 서면계약과 구두계약이 있다.

- 서면 계약

임대계약은 임대하는 주거지의 주소, 임대기간, 월세, 임대보증금 및 그 외 쌍방의 책임 분담을 명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누가 전기세 수도세를 부담하며 눈은 누가 치우고 잔디는 누가 깎는지 등의 사항들이 임대 계약에 명시할 내용이며 법률이 이를 규정하지 않는다.

- 구두계약

처음 임대 계약부터 구두로 하는 일은 드물지만 원래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서면으로 재계약이나 기간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구두계약이 된다. 구두 계약은 법률상으로는 매월 연장되는 임대계약(Month-to-month lease)이다.

- 임대료 규제 대상 주거

뉴욕 시에서는 6가구 이상 주택이면 임대료 인상률이 법률로 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뉴저지에도 임대료 규제 법이 있으나 최소 지방자치단체인 타운 별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 다만 2가구 주택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규제 대상 주택이면 역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다.

2) 임대 계약 시 주의점

임대계약은 계약인 만큼 그 내용을 알고 난 후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책임 분담에서 전기료와 가스, 전화는 Tenant가 내지만 기타 수도료, 제설작업과 정원 관리는 건물주기에 맡기도록 협상하고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복덕방에서 “Standard 양식”이라는 표현에 쉽게 설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전 등, 수도와 하수구, 레인지와 오븐 등이 고장 났을 때 수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도록 해야 한다.

뉴저지에서는 1가구 주택의 경우 눈을 치우지 않거나 잔디가 4~6인치 이상 자라면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ex. 주차 위반)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3) 계약위반의 결과

주재원들은 누구나 전임 또는 귀임 발령을 받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발령은 임대기간이 언제 만료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임대 계약 만료 전에 부득이 집을 비우는 일이 생기고 이것이 곧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다.

임대 계약의 위반이 있으면 법적 결과가 임대 기간 만료시까지의 임대료를 다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건물주는 법적으로 Tenant의 손해 배상을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 (Duty to mitigate damage)가 있다. 가령 계약 만료기간 6개월 전에 집을 비웠는데 건물주가 2개월 만에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서 세를 놓았다면 계약을 위반한 Tenant의 손해 배상 책임 액수는 2개월치 임대료, 건물주의 광고비나 복비 그리고 새로운 입주자가 내는 임대료가 계약위반 Tenant의 임대료보다 적을시 4개월 분의 차액이라 볼 수 있다.

임대계약 위반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령이 예상되는 해에 30일 사전통보를 하면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거나 최고 손해배상 액수를 명기해 두는 것이 좋다. 후임자가 임대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면 리스에 양도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좋다.

4) 임대 보증금 (Security Deposit)

미국에서는 모든 임차계약이 보증금을 요구한다.

주택의 경우 1~2개월 분 월세로 흔히 책정되나 뉴저지의 Bergen County는 한 달 반으로 거의 통일된 추세이다. 임대보증금은 월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월세로 충당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에는 보통 이상으로 주거의 손상 (Normal wear and tear)이 생겼을 때 이를 수리하기 위해 잡아두는 것이다.

한국인 주재원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의 Bergen County에서는 보증금을 새 입주자를 넣기 위해 새로 페인트하고 가전제품을 바꾸는 데 사용하고 귀국한 주재원의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히 있다. 임대 보증금은 임대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반환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건물주가 이를 불이행할 시 소액 재판을 걸면 원고측의 경비와 보증금의 곱까지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

뉴저지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Tenant에게 은행명과 주소, 구좌번호까지 적어서 임대보증금의 소재를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만일 건물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임대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포기(waive)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만일 이런 통보를 시한 내 받지 않은 Tenant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임대보증금액에 준하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 차량

자가용 차량은 미국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이다. 차를 운전하려면 차량국(Division or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운전 면허(Driver's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필기 시험만으로도 주정부의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의 등록증(Registration)과 주법이 제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보험증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정차하게 되면 경찰에게 이 세 가지를 제시해야 한다. 법으로 이 세가지는 항상 휴대하게 규정되어 있고 휴대하지 않을 시 벌금형이 가해진다. 물론 무면허 운전, 미등록 차량 및 법정보험이 없는 경우는 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형과 구금형까지 가해질 수 있다.

1) 차량 소유권과 법적 책임의 소재

차량소유권은 반드시 명의 문서(흔히 Title paper, Certificate of ownership 이라고도 함)에 의해서만 이전될 수 있다. 새 차를 살 때는 딜러에게서, 중고차를 살 때는 전 소유주로부터 명의 문서를 받아 차량국에 제시해야만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차량을 월부로 사는 경우는 용자은행이 용자 액수를 다 갚을 때까지 명의 문서를 저당으로 보관하는 것이 상례이다.

차량 사고시의 법적 책임 소재는 항상 궁극적으로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문서의 교환과 등록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차를 사고파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량을 인계한 사람의 명의 이전 없이 인수받은 사람이 후일에 대형 사고를 책임져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2) 차량 보험

- 보상책임보험 (Liability)

모든 차량은 보험이나 이에 준하는 법이 규정하는 재정증명서(Proof of financial responsibility)를 동반해야 운용할 수 있다. 차량보험에는 의무적으로 상해보상보험(liability)을 법이 정하는 최소액수로 들어야 한다. 뉴욕과 뉴저

지 보험한도액은 사실상 대형사고 발생 시 많이 부족한 금액이며, 보험료를 더 내면 보험한도액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 포괄, 충돌 보험

상기 Liability는 차주나 가족이 아닌 타인과 타인의 차량을 포함한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줄 뿐이다. 본인과 가족의 신체적 피해, 재산피해 그리고 의료비는 포괄보험(Comprehensive) 및 충돌보험(Collision)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보험한도액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이 보험을 들면 사고 발생시 모두 자기 보험 회사가 보상금을 지불하고, 과실이 상대방에 있을 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 보험 회사가 변제를 받는다.

3) 차량 사고

차량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상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 경찰 입회

사고가 나면 가능한 경찰을 사고 현장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을 조사하고 사고 당사자들과 사고를 목격한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여 그 내용을 경찰보고서(Police report)에 기록한다. 이때 한인들은 흔히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한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찰은 누구는 어떻게 말했고 반대편은 어떻게 말했다고 쓰기 때문에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 또한, 경찰보고서가 잘못 되었다면 후에 반론을 제출할 수도 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목격자가 있으면 가능한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응급차량 (Ambulance)

사고 발생시 증상을 입었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통증이 심하거나 상처가 있을 때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가서 이상유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사고 발생시 입은 상처도 일단 현장을 떠나게 되면 사고에서 발생했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이다.

- 사고 보고

차량보험은 과실에 관계 없이 혜택을 준다. 그러나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가능한 속히 사고 보고를 해야 한다. 대개는 보험을 들어준 Agent나 Broker에게 연락을 하여 사고 보고를 하게 된다. 비록 사고가 보험 가입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더라도 보험 혜택이 있고 나중에 보험 갱신시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심하면 보험을 거부하게 되겠지만, 보험이 유효한 동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 약관대로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나의 과실로 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 기타 보험 혜택

차량 보험은 주거지 주를 벗어나 타주에서 난 사고도 혜택이 있고, 상대방 보험 유무에 관계 없이 피해자 측 보험 한도 액수보다 적을 때 혜택을 주는 소위 무보험 또는 저보험 가해자 보상(Uninsured/under insured motorist) 혜택이 있다.

또한, 과실의 유무에 관계 없이 중상의 경우는 차주와 사고 당시 차량에 승차했던 모든 사람에게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소위 신체적 피해보상(Personal Injury Protection)이 있다. 이 PIP 혜택은 중상/사망일 경우 해당되며 그 이상의 치료비와 임금, 그리고 손해배상은 소송으로 받게 된다. 이 때 소송은 변호사들이 흔히 성과급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경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방면 광고가 많고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광고가 요란하거나 병원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은 경계하는 것이 좋다.

■ 음주 운전 (Driving While Intoxicated)

1) 미국의 지방자치제

미국식 민주주의는 철저한 지방자치제에서 근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제의 최소 세포조직이 한국으로 말하자면 “동” 수준의 타운(Town)이다. 각 타운마다 재정자립을 이루고 행정부(Mayor), 입법부(Council) 및 사법부(Municipal court)가 있다. 행정부 산하에는 경찰, 소방서, 오물 처리부, 위생국, 학교 등 모든 부서와 시설을 가지고 있다. 흔히 교통 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의 단속은 타운 경찰과 재판소 소관이므로 교통위반 티켓을 받거나 구금되면 대부분 타운 선에서 처리된다.

2) 음주운전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종종 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계제가 있을 것이다. 미국 역시 술을 적지 않게 소비하는 나라이다. 월남전에서 전사한 미군이 약 5만인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취중 운전자에게 치어 사망한 인구가 약 38만이라는 통계를 보아도 취중운전이 크게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음주 운전 단속이 극심해졌다. 과거에는 우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금은 뉴욕이나 뉴저지 공히 처음 위반에도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으며 뉴욕은 심지어 차량 압수까지 하고 있다. 뉴욕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에 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뉴저지는 대부분 최소 6개월의 면허 정지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검문을 받을 때는 흔히 Breathalyzer test를 요구하거나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직선 위를 걷는 등 테스트를 하게 된다. 이때 테스트를 거부하면 일단 취중운전으로 규정지어져 버리기 때문에 테스트를 받고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상법 · 이민법 · 상해 · 형법 변호사연락 정보

■ 상법

Choi & Park, LLC

23 S. Warren Street, 2nd Floor Trenton, NJ 08608

609-396-2800

Nixon Peabody LLP

437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2

212-940-3000

Simon Gluck & Kane LLP

250 W. 34th Street, Suite 4615, New York, NY 10119

212-775-0055

The Choi Law Group, LLC

100 challenger Rd., Suite 302, Ridgefield PK, NJ 07661

201-438-0200

Traub, Lieberman, Straus and Strewsberry, LLP

7 Skyline Drive Hawthorne, New York, NY 10532

914-586-7055

Step toe&Johnson LLP

1114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36

212-506-3900

Yoon & Kim LLP

11 East 44th St, Suite 500, New York, NY 10017

212-584-0058

Jacob, Medinger & Finnegan LLP

1270 Avenue of the Americas, ROCKEFELLER CENTER, New York, NY
10020
212-524-5000

길벗법무법인(TRUST & ESTATE LAW)

120 West 31st St. #500 New York, NY 10001
212-967-3966

김&배 법률사무소(KIM & BAE, ATTORNEYS AT LAW)

110 East 59th St. 22Fl. New York, NY 10022
212-319-6888

민대기 변호사(DAE-KI MIN, ATTORNEY AT LAW)

1440 Broadway 23 Fl. New York, NY 10018
212-736-0650

블루스톤 법률회사(BLUESTONE LAW, LTD)

4405 East-West Highway suite 402, Bethesda, MD 20814
301-656-0230

연봉원 변호사 사무실(BONG W. YEON & ASSOCIATES, PC)

16 West 32 St. #502 New York, NY 10001
212-779-1828

이재성 변호사(JAY SUNG LEE ATTORNEY AT LAW)

307 5th Ave. 4Fl New York, NY 10016
212-889-7170

조석진 변호사

NY: 1140 Ave of the Americas 9th Fl., New York, NY 10036
 212-901-1197
 NJ: 440 Sylvan Ave. Suite 250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886-0200

주찬연 변호사

305 5th Ave. Suite 1207, New York, NY 10016
 212-447-1600

최영수 변호사 법률그룹(YOUNGSOO CHOI LAW FIRM)

154-08 Northern Blvd. #ML-5A Flushing, NY 11358
 718-939-0209

최형무 변호사(MICHAEL H. CHOI, ATTORNEY AT LAW)

36-09 Main St. #208 Flushing, NY 11354
 718-463-3500

■ 이민법**정대현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 of Dae Hyun Chung)**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201-482-8267

김수지 변호사(SMITH, GAMBERLL & RUSSELL, LLP)

1301 Avenue of the Americas 21st Floor, New York, New York 10019
 212-907-9700

김광수 변호사(LAW OFFICE OF DAVID K.S. KIM, P.C.)

193-0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718-352-0801

남수은 이민 전문 법률사무소(LAW FIRM OF SOO ELIZABETH NAM, ESQ.)
1250 Broadway 36 Fl. New York, NY 10001
212-661-2510

박동규 변호사 법률 사무소(LAW OFFICE OF ANDREW D. PARK)
16 West 32nd St. #1101 New York, NY 10001
212-279-3883

최진수 변호사(LAW OFFICES OF JIN-SOO CHOI)
163-10 Northern Blvd. #202 Flushing, NY 11358
71-353-9272

최흥경 변호사(HONG KYUNG CHOI, ATTORNEY AT LAW)
141-25 Northern Blvd. #A30 Flushing, NY 11354
917-698-4485

■ 상해

데이비드 피터슨 변호사(DAVID M. PETERSON, P.C.)
65 Broadway, 8th Fl. New York, NY 10006
212-558-6884

앤드류 박 변호사(Law Offices of Andrew Park P.C.)
450 7th Ave #1805, New York, NY 10123
(212) 239-3680

■ 형법

The Choi Law Group, LLC

100 challenger Rd., Suite 302, Ridgefield PK, NJ 07661

201-438-0200

한진영 변호사(HAN & ASSOCIATES, P.C.)

100 ParK Ave, Suite 1600 New York, NY 10017

212-836-4704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미한국상공회의소

책임편집 KOCHAM

인쇄 서울 하나로기획(82-2-2269-8136)

※이 책자의 판권 및 지적소유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KOCHAM이
소유한다



SOUTHPOLE®

나라마다 자동차는 달라도 선택은 같습니다



JAPAN



GERMANY



U.S.A



KOREA



FRANCE



World's Cars with POSCO

글로벌 일류 자동차들이 포스코와 함께 합니다

BMW, 포드, 폭스바겐, 닛산, 피아트 등 세계적 명차를 생산하는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안전, 연비, 환경 등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해
차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소재에 더욱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합니다

고강도, 경량화, 내부식성 등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키는 품질과 기술력!
글로벌 일류 자동차사들이 포스코 자동차강판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CHASE DOWN YOUR PASSION.
NEVER HALFWAY.*



CHRIS BURKARD
ADVENTURE PHOTOGRAPHER

To capture moments few have witnessed,
you must venture where few have gone.

The road to get there may be more
challenging, but the rewards are worth it
for those willing to brave the journey.

 **hankook**
driving emotion

ASIANA 380

Special Edition



뉴욕 하늘이 더 특별해집니다

문이 있는 완벽한 스위트 스타일의 퍼스트 클래스에서
어디서나 자유로운 출입으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비즈니스 클래스,
슬림 좌석으로 1인치 더 넓은 레그룸의 이코노미 클래스까지
서울에서 뉴욕으로, 뉴욕에서 서울로 더 특별하게 모십니다.

The New ASIANA380, Special Edition.



도어가 있는 고품격 스위트일의 퍼스트 클래스



어디서나 출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클래스



슬림 시트백으로 1" 더 넓은 레그룸의 이코노미 클래스



여유로운 공간의 드레스룸으로 사용가능한 럭셔리 리바토리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OZ:Enter